#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이 세 정

#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business Related Laws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br>Yi, Se-Jeong

2013.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현행법상 인•허가•등록•신고 등 영업과 관련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중복신 고•보고, 불필요한 교육•훈련, 중복•수시 행정조사 등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워 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음.
$\square$ 또한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제재 수단을 두고 있는 경우, 제재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 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음.
$\square$ 이러한 경우들은 이중적 자료작성 및 보고, 인력 활용의 비효율, 교육비용 과중, 자유로운 생산활동 규제 및 기업의 욕 위축•창의력 저하,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 유 발,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궁극 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 킬 수 있음.
$\square$ 따라서 영업 관련 중복•불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규정, 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중복•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부과 규정, 행정조사적 성격의 중복•과다한 보 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규정, 영업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과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 등을 정비하 여 신규 영업 진입의 장벽을 완화하고, 영업자의 영업 수 행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 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법제도 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square$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1) 국토•교통 관 련 법제 분야, (2)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3) 보건•복 지 관련 법제 분야, (4)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5) 환경 관련 법제 분야의 영업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한 뒤,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 을 지우는 경우,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 우는 경우, (4)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母法)의 위임 취 지•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를 부과하는 경우,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 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는 경우, (6) 그 밖에 영업 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등을 발굴하여 정비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square$ 제 2 장에서는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에 관하여 기 술함.
$\square$ 제 3 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을 법령 전수조사방법 을 통하여 분석함.
$\square$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을 기초로 각 분 야별로 나누어 정비대상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 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square$ 제 5 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영업규제 관련 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함.

## III. 기대효과

$\square$ 국민 및 관련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 실현을 도모 하며, 법적 안정성 -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square$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영업 관련 법령의 효 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2 주제어 : 영업규제, 영업 관련 법령, 행정조사, 행정벌, 제재적 행정처분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There are many cases that unnecessary or excessive burden is imposed on undertakers restricting their free production activities, such as levying new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without legal basis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uplicated returns and reports, unnecessary education • training and duplicated and frequent administrative inspections etc.
$\square$ In the cases that unreasonable or excessive means of sanction is provided on non-observance of business related obligation or unbalanced means of sanction is provided on similar nonobservance of obligations, it will probably impede undertakers' foreseeability due to uncertainly stipulated conditions of sanctions and cause the administration's arbitrary execution of the laws.
$\square$ Such cases may cause the problems of duplicated preparation of the material and report, inefficiency in utilization of manpower, excessive educational cost, control over free production activities, restriction of the spirit of enterprise and declination of originality, creation of unnecessary social • administrative cost and unnecessary increase of the cost of
lawsuit, eventually impeding social unification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squar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ort out the regulations for duplicated or unnecessary submiss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with regard to business, the regulations for imposition of duplicated or excessive educational - disciplinary obligations on undertakers and their employees, the regulations for duplicated • excessive submission of report • material and access • inspection in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he unreasonable or excessive means of sanction, to mitigate the barriers against entry of new businesses, mitigate burdens of undertakers with reference to execution of business, stimulat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undertakers and reduce unnecessary cost of lawsuit.

Based on the above consciousness of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business in the fields of legislation for (1) national territory $\cdot$ transportation (2) industry • resources (3) health • welfare (4) culture • sports • tourism (5) environment and find out the cases of (1) unnecessary or excessive imposition of burden on undertakers including duplicated returns (2) imposition of unnecessary or excessive responsibility of education • training with regard to business (3) imposition of unnecessary or excessive responsibility on undertakers with reference to
administrative inspection (4) imposition of new obligations on undertakers without legal basis or by sub laws and regulations departed from the purport - boundary of the mother law (5) providing unnecessary or excessive means of sanction against non-observance of obligations with regard to business and (6) other unreasonable provisions related to business, to search for the ways of sorting them out.

## П. Main Content

$\square$ In the Chapter 2, the concept, content and the character of the regulations on business are described.In the Chapter 3,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ions on business under the current law a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total inspec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square$ In the Chapter 4,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on business under the current law, found out the cases in each field that need to be sorted out, indicated the problems therewith and suggested the methods of improvement.
$\square$ In the Chapter 5, arranged the status of the exhibited case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sorting ou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business.

## III. Expectations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mitigate the burdens of the people and the related undertakers, seek for realization of their right and interest and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foreseeability.It is also expected that it would prevent the administration's arbitrar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tribute to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usines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realization of the advanced rule of law.D Key Words : Bussiness Regulation, Business Related Law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Administrative Sanction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17
제 2 장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 ..... 21
제 1 절 영업규제의 개념 ..... 21

1. 영업의 정의 ..... 21
2. 영업규제의 개념 ..... 23
제 2 절 영업규제의 내용 및 특성 ..... 26
3. 허 가 ..... 27
4. 특허(면허) ..... 29
5. 등 록 ..... 30
6. 신 고 ..... 33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49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 49
7. 개 관 ..... 49
8. 개별법상 영업규제 ..... 56
제 2 절 산업 • 자원 관련 법제 분야 ..... 115
9. 개 관 ..... 115
10. 개별법상 영업규제 ..... 122
제 3 절 보건 • 복지 관련 법제 분야 ..... 166
11. 개 관 ..... 166
12. 개별법상 영업규제 ..... 168
제 4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 180
13. 개 관 ..... 180
14. 개별법상 영업규제 ..... 186
제 5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 210
15. 개 관 ..... 210
16. 개별법상 영업규제 ..... 213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245
제 1 절 개 관 ..... 245
제 2 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 249
17.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249
18.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261
19.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272
20.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287
21.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297
22. 기 타 ..... 352
제 3 절 산업 • 자원 관련 법제 분야 ..... 363
23.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363
24.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376
25.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381
26.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388
27.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420
28. 기 타 ..... 438
제 4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 468
29.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468
30.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480
31.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488
32.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498
33. 기 타 ..... 524
제 5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 542
34.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542
3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572
36. 기 타 ..... 582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 585
37.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585
38.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608
39.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613
40. 기 타 ..... 617
제 5 장 결 론 ..... 629
참 고 문 헌 ..... 637
【부 록】 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I.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643
ㅍ.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685
III.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727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739
V .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75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법상 인•허가•등록•신고 등 영업과 관련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중복신고 등 불필요하 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워 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경 우가 많고, 관할 부처별 또는 교육기관별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교육•훈련을 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이수하도록 하거 나 다수의 행정기관에서 중복 또는 수시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하는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 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예정하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제재 수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인 법집행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영업 관련 법제도를 정비 해 왔으나, 최근 제•개정된 법령에서 새롭게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다 수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 관련 중복•불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영업자 또는 그 종사 자에 대한 중복•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부과, 중복•과다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실시, 영업 관련 의 무 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 등은 이중적 자료작성 및 보 고, 인력 활용의 비효율, 교육비용 과중, 자유로운 생산활동 규제 및 기업의욕 위축•창의력 저하,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 유발, 불필

요한 행정쟁송 제기를 통한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궁 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업 관련 중복•불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규정, 영업자 또 는 그 종사자에 대한 중복•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부과 규정, 행정조사적 성격의 중복•과다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제도, 영업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과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 등을 정비하여 신규 영업 진입의 장벽을 완화하고, 영업자의 영업 수 행 등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하며,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다수의 영업 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1)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3) 보건복지부 소 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 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5)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로 나 누어 해당 분야별 영업 관련 규제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1) 중 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 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4)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각종 보고•신고 의 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는 경우, (6) 그 밖에 영업과 관련 하여 불합리한 규정 등을 발굴하여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과 관련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 권익을 도모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영업 관련 법령의 효 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구성

## 1．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든 현행법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다음의 표와 같이（1）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 관 련 법제 분야，（2）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3）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5）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로 나누어 총 365 개의 법률（해당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 대상 분야 및 법률】

| 분 야 | 소관 부처 | 법 률 명 | 비 고 |
| :---: | :---: | :---: | :---: |
|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102개 |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법률 제외 |
| 산업•자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88 개 | －특허청 소관 법률 제외 |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78 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소관 법률 제외 |
| 문화－체육－ 관광 |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50 개 |  |
| 환 경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등 47개 | －기상청 소관 법률 제외 |
|  |  | 총 365개 |  |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전수조사를 실 시하였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2013년 3월 23 일부터 5 월 12 일까지 50 일간에 걸쳐 연구대상 영업 제도의 현황을 영업명(해당 법률명 및 조문), 인 • 허가 - 등록 - 신고 유형, 인 • 허가 등록 - 신고의무자, 인 • 허가 - 등록 - 신고권자, 인 • 허가 - 등록 -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영업 관련 자료•서류제출•보고/기 록•관리 등, 영업 관련 교육 이수,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 출 및 출입•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조사분석 대상 법령의 선정기준일은 법령의 시행일을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시작단계인 2013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후 해당 영업 관련 조항이 개정된 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법령을 고 려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해당 법제 분야별로 영업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1) 개별 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결과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크게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 우,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를 부담지우는 경우,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 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4)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서 영업자에게 각종 보고•신고 의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 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6) 기타(영 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2) 이

1) 해당 법제 분야별 영업규제 현황은 법률의 가나다순으로 분석하였다.
2) 개선 대상 사례 발굴시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영업 승계 제도에 관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영업 승계 관련 사례는 이세정,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 31. 참조.

때 법이론 및 실무 관련 전문가의 개별 자문 및 2013년 6월 28일, 10 월 17 일 2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하여 사례 발굴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2 장에서는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1)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3) 보건복 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 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5)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 야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을 기초로 각 분야별로 나누어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 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4) 없거나 모법 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각종 보고• 신고 의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6)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현행법상 영업규제 관련 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 

## 제 1 절 영업규제의 개념

## 1. 영업의 정의 3 )

‘영업’의 정의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의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데,4) 행정법학 에서는 영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법학에 서 사용되는 영업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학 에서 사용하는 영업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학에서 사용되 는 영업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미의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 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정 행위의 전체"를 말하는데 상법상 "영업을 한다"(제5조, 제6조, 제46조)든지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 (제 53 조, 제 61 조 등)이라고 하는 경우의 영업이 이에 속하고, 객관적 의미의 영업 또는 영업재산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각종의 재산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재산"을 말하는데, 상법상 "회사영업을 양수한 자의 상호의 부당사용 의 금지"(제20조)나 "영업을 양도"(제41조)라고 하는 경우 있어서 영업 이 이에 속한다.
3) 이하의 내용은 이세정,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한국 법제연구원, 2012. 10. 31, 30쪽 이하의 내용을 수정•보완 정리한 것이다.
4) 독일에서도 영업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영업법」(Gewerbeordnung) 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계속적인 모든 허용된 활동으로서, 1 차산업이나 자기 재산의 관리활동 또는 예술-저작활동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개인적 역무제공을 제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H. Sieg/W.
Leifermann/P. Tettinger, Gewerbeordung, 5. Aufl., 1998, S. 17 ff.; R. Sto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6. Aufl., 1989, S. 175; BVerwG, GewA 76, 293 (294).

행정사건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영업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주로 영업양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영업을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5）으로 보고 있고，이를＂영업을 구성 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 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 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6）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

한편，독일에서도 영업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해의 승인된 요소를 근거로 현재의 필요에 따라 현대화되 는（갱신되는）것으로 이해되고 있다．8）즉 독일 「영업법」（Gewerbeordnung） 은 영업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판례나 학 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확정법개념으로 남겨두고 있다．9）그 결과 헌법적 자유의 보장을 정향하고 현재의 필 요에 부합하는 개념내용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영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은 모 든 사회적으로 무가치하지 아니한，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계속성을 갖는 자발적인 활동（Tätigkeit）으로서，일차생산，자유로운 학문적 활동， 고도의 예술성을 가진 예술적 및 작가적 활동 및 고도의 교육을 필요 로 하는 인적 서비스와 같은 자유직업 및 자기 재산의 단순한 관리 및 이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0）

5）대법원 2010．9．30．선고 2010 다 35138 판결．
6）대법원 2009．9．14．선고 2009마1136 결정；1997．11．25．선고 97 다 35085 판결．
7）다만，우리 판례는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영업을＂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총체，즉 인적•물적 조직＂을 보고 있다．대법원 1991．8．9．선고 91다15225 판결．
8）P．J．Tettinger／R．Wank／J．Ennuschat，GewO，8．Aufl．，München 2011，Einleitung，Rn． 1，S． 76.

9）P．J．Tettinger／R．Wank／J．Ennuschat，a．a．O．，§1，Rn．1，S． 128.
10）BVerwG NJW 2008，1974，DÖV 1995，644；OVG Nds．GewArch 2008， 34 （35）；Kahl， in：R．Landmann／G．Rohmer，Gewerbeordnung，Loseblatt－Komm．，Bd．I，2010，§ 1 Rn． 3.

따라서 영업의 개념은 적극적인 개념징표 ${ }^{11) ㄷ ㅗ ~ ㅅ ㅗ ㄱ ㅡ ㄱ ㅈ ㅓ ㄱ ㅇ ㅣ ㄴ ~ ㄱ ㅐ ㄴ ㅕ ㅁ ㅈ ㅣ ㅇ ㅍ ㅛ 12) ㄷ ㅗ ~}$ 갖는데，문헌에서는 빈번하게 전자를＇상업성（Gewerbsmäßigkeit）＇으로， 후자를＇영업능력（Gewerbsfähigkeit）＇으로 표현하고 있다．13）

2．영업규제의 개념

일반적으로 규제（regulation）는＂기업과 개인 등 개별경제주체의 시장 활동，가격，물자의 생산량 등에 관한 제한을 통하여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중요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의 개입＂${ }^{14)}$ 또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국민의 활동에 대해 서 특정의 정책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관여•개입하는 것＂${ }^{15)}$ 으로 정 의된다．규제는 일반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해치고，산업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위험＇의 존 재에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16）규제는 인허가 등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전형적인데，그 외에도 인허가 등에 부수하거나 인 허가 등과는 별개로 행하여지는 규제적인 행정지도나 가격지지（支持） 등의 제도적인 관여 등으로도 행하여진다．${ }^{17)}$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으로 나뉜다．경제적 규제는 전기，가스 등의 공익사업과 같

11）영업개념의 적극적 징표로는 지속성，이윤추구의도，독립성 및 활동의 허용가능성 （Erlaubtsein）을 들고 있다．P．J．Tettinger／R．Wank／J．Ennuschat，a．a．O．，§1，Rn．1，S． 130.
12）영업개념의 소극적 징표로는 일차생산，자유직업적 활동 및 자기 재산의 단순 관리 및 이용을 들고 있다．P．J．Tettinger／R．Wank／J．Ennuschat，a．a．O．，§1，Rn．1，S． 130.
13）W．Frotscher／U．Kramer，Wirtschaftsverfassungs－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5. Aufl．，München 2008，Rn． 251.
14）S．G．Breyer／R．B．Stewart，Adm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Boston，Little Brown \＆Co．1985，p． 13.
15）福家 俊朗，現代行政の公共性と法—行政の法的存在理由，日本評論社，2010，85頁參照。
16）福家 俊朗，前揭書， 92 頁。
17）福家 俊朗，前揭書， 85 頁 參照。

이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기는 것으로는 재화나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이나 바람직한 가격수준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 부가 개개의 산업에의 진입•진출，설비투자，생산수량이나 가격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는 것18）으로서 기업의 설립 또는 개인사업의 개시，제품（또는 서 비스）의 가격（또는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윤）， 생산량，품질，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경제적 규제는 다시（1）진입규제（entry regulation），（2）가격（및 이윤）에 대한 규제，（3）기타 품질，생산량，공급 대상 • 조건 • 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19）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사회적인 활동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고，환경을 보전하 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나 그 제공에 따른 각종의 활동에 기준을 설정하거나 특정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20）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즉 환경오염，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소비자 권익의 침해，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기업내부적으로 국 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211}$ 국가의 사회적 규제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면 경제적 규제활동은 경제의 성장，물가안정，국제수지의 균형，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거시적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과 시장경 제질서의 확립 및 영업의 자유와 관련된 질서행정법상의 규제수단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22）

18）福家 俊朗，前揭書， 88 頁．
19）최병선，정부규제론，법문사，2006， 28 쪽 이하 참조．
20）福家 俊朗，前揭書， 88 頁．
21）최병선，앞의 책，39쪽 참조．
22）김해룡，경제행정법상 국가에 의한 경제규제조치의 범위와 한계，공법연구 제 30 집 제4호，한국공법학회，2002，347쪽．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 내지 규제의 정의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 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여 규제 가 법적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23)

한편, 영업규제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으로나 학문상으로 정의된 개념 은 아니다. 다만, 영업의 개시, 영업활동 및 영업의 이전•폐지 등에 관한 규제를 총칭하는 의미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24)

영업규제는 주로 경제적 기본권에 관한 것인데,25) 우리나라 헌법은 영업의 자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제 15 조 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나, 이 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문자 그대로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 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로서 직업의 자유(Berufsfreiheit)를 의미하며, 이러한 직업의 자유 에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26)이다. 대법원 판례 도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 내에 포함되 는 것이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영업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י27) 라고 판시하여 영업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보고 있다.
23) 조정찬, 기업규제 완화의 법적 쟁점,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1 호, 서강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2. 2, 3쪽 참조.
2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75쪽;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 규제행정론적 관점에서 - ,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 17쪽 참조.
25) 조정찬, 앞의 논문, 7 쪽.
26) 한편, 독일에서도 독일 기본법 제 12 조 제 1 항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고(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8. Aufl., 1991, S. 171), 일본의 경우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을 영업의 자유의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이다. 최영규, 앞의 학위 논문, 37 쪽 참조.
27)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 누 433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의 기본권 보장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 도 영업규제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는 규제는 헌법적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28）실제로는 많은 영업이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적 규 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행정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등 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영업 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그리하여 영업에 관하여는 자유가 아니 라 오히려 제한이 원칙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영업에 대한 규제는 영업 개시，영업 수행 중，영업의 이전•휴지• 폐지 등에 걸쳐 끓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영업의 개시，영업 수행 중，영업의 이전이나 폐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영업규제를 광의의 영업규제라고 한다면，그 중에서도 특히 영업개시와 관련한 규제，즉 진입규제를 협의의 영업규제라고 할 수 있다．29）

## 제 2 절 영업규제의 내응 및 특성

영업규제의 수단 또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특정의 행위（를 행할 자유）등을 법률로 일반적으 로 금지하고，국민의 신청 또는 출원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 하면 그 금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공적 규제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금지의 강도（금지의 필요성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 법효 과를 달리하는 허가나 인가，그 외에 원래는 국가나 행정이 행하여도 좋을 정도로 공공성이 높은 활동에 대한 가장 강한 규제로서의 특허 라는 수단도 있다．${ }^{30)}$

28）조정찬，앞의 논문， 8 쪽．
29）이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영업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30）福家 俊朗，前揭書，91頁．

실제 현행법상 일정한 영업(또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행 정기관으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 글로벌화 등으 로 영업규제의 형태와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을 규제하는 현행 법률에서는 특허•면허•허가•인가•등록•신 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 }^{31)}$ 그런데 현행법 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업규제 수단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여 그 용어 만을 기준으로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32) 이하에 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를 강학상의 기준에 따라 허가, 특허(면허), 등 록, 신고로 나누어 그 내용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허 가

(1) 의 의

강학상의 허가(Erlaubnis)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 한다. 허가는 영업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31) 현행법상 이러한 용어는 강학상의 용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 현행법상 영업규제의 종류를 면허(특허)영업•허가영업•등록영 업-신고영업의 4가지로 유형화하거나 면허(특허)영업 - 허가영업 • 등록영업 • 신고 영업•지정영업•통보영업의 6가지로 유형화하는 입장 등 영업규제의 종류를 유형 화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방기호, 인허가제도설정 의 기준,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3, 23쪽 이하; 이 원, 영업 인•허가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개선연구 제2집, 법제처, 1996, 294쪽 이하; 정태용, 사업규제의 유형, 법제연구 제 18 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 , 207 쪽 이하 참조.
32) 실정법상 인허가제는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는 일이 다반사이며 등록이나 신고는 완화된 인허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 - 허가제를 등록제로 고치면 규제완화 가 되고 이를 다시 신고제로 고치면 또 다른 규제완화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실정 이라고 한다. 이처럼 용어의 혼란을 빚은 결과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고,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단순히 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용어를 달리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 그 시정을 통한 용어의 통일 의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조정찬, 앞의 논문, 26 쪽 참조.

이외에 면허•인허•인가•승인•등록•지정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허가는 예방적 금지(präventives Verbot)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점 에서, 억제적 금지(repressives Verbot)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예외적 승인'(Ausnahmebewilligung)과 구별된다. 허가는 위험방지라고 하는 통 제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인 데 대하여,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구별된다. ${ }^{33)}$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 }^{34)}$
(2) 법적 성질

종래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에 속하며, 이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 허•인가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허가 는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제하 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해 주는 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허가와 특허의 구분이 상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35)}$

또한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규 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였 으나, 최근에는 엄격히 말하면 허가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특히 선
33)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3, 235쪽.
34)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2012. 12, 117쪽.
35)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37-238쪽;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3, 350쪽.

택재량행위)가 모두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36)}$
(3) 허가의 효과

허가의 효과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함에 그치고, 배타적•독점적 권 리 또는 능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 }^{37)}$ 일반적으로 허가로 인하여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허가제도를 설정하는 법규정은 공익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제적인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38) 대법원 판례도 허가로 인하여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39) 다만, 허가의 요 건규정이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 우 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법적 이익이 된다.40)

또한 영업허가를 받으면 해당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금 지가 해제될 뿐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41)

## 2. 특허(면허)

## (1) 의 의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이를 넓은 의미의 특허라고 부른다. 특 히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좁은 의미의 특허라고 부른다. 이는 실정법상으로 면허•허가 등으로 불린다. 판례
36) 김남진 - 김연태, 앞의 책, 238쪽.
37) 김남진 - 김연태, 앞의 책, 240 쪽.
38)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41쪽;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226쪽.
3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 누 4289 판결.
40)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226-227쪽.
41) 김남진 • 김연태, 앞의 책, 243 쪽; 박균성, 앞의 책, 227 쪽.

상으로는 보세구역의 설영특허，42）공유수면매립면허，43）공유수면 사용 허가，44）자동차운수사업면허，45）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운영계약，46）재개 발조합설립인가，47）재건축조합설립인가48）등이 특허로 인정되고 있다．
（2）법적 성질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특허를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짐이 보통이나，법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특허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에 속하게 된다．49）
（3）특허의 효과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이나 그 밖에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킨다．권리설정행위，즉 협의의 특허에는 특허기업의 특허，공물 사용권의 특허와 같이 특허된 권리의 내용이 공권（公權）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광업권•어업권과 같이 사권（私權）의 성질을 띠는 것도 있다．

## 3．등 록

（1）의의 및 도입 배경

강학상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42）대법원 1989．5．9．선고 88 누 4188 판결．
43）대법원 1989．9．12．선고 88 누 9206 판결．
44）대법원 2004．5．28．선고 2002 두 5016 판결．
45）대법원 2010．1．28．선고 2009두 19137 판결．
46）대법원 2006．3．9．선고 2004다 31074 판결．
47）대법원 2012．4．12．선고 2010다 10986 판결．
48）대법원 2012．10．25．선고 2010 두 2507 판결．
49）김남진－김연태，앞의 책，245쪽．

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공증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은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 추기만 하면 행정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 야만 하는 기속행위로 이해된다.50)

본래의 의미에서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허가제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최근 규제 완화 작업의 결과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 한다. 즉 종래 허가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허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과도하게 재량을 행사하여 국민에 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강학상의 등록은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나 등록관청이 등록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전혀 재량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장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거의 자 동적으로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허가 또는 면허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의 재량을 없애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면허 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51) 그리하여 일 반적으로 등록은 인허가에 비하여 규제의 강도가 약하고, 따라서 규 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허가제를 실시할 만큼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은 없는 경우에 채택하는 규제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52)
(2) 법적 성질

영업규제 수단으로서의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등 록을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그 법적 성격에 관해 서는 등록의 가부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50) 최영규, 앞의 학위논문, 1993. 2, 136쪽.
51) 정태용, 앞의 논문, 한국법제연구원, 2000, 200쪽; 법제처, 앞의 책, 143-144쪽.
52) 최영규, 앞의 학위논문, 138쪽.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53)와 수리를 요 하는 신고의 별칭으로 보는 견해54)로 나뉜다.

실제 실정법상으로는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 무등록자에 대한 처벌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예 : 영업등록제도) 가 있고, 이 경우 법률이 행정청에게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을 접 수•심사•결정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는 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 제의 기능을 갖게 된다.55) 이 점에서 등록제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로 보고자 하는 입장에 나름의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요구로 「석유사업법」 등에서 종전에 허가로 규 정한 것을 '등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으나, 규제완화의 핵심사항인 허용요건의 완화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허가제를 행정규제의 대표로 인식한 여론의 추이에 쫓아서 단지 용어만을 변경 하는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56)
그리하여 현행법상 등록제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단정짓기는 곤란하나, 본질적으로는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자 연적 자유의 회복이 허가제의 본질이고, 그에 따라 허가에 있어서 광 범한 재량축소가 인정되는 사정 - 문헌상으로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기속행위로 보기까지 한다 - 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용어라는 외양적 변화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 }^{57)}$

등록에 있어서도 행정청에 의한 등록의 수리58)가 등록의 대상이 되
53) 김용섭,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판례월보 제 352 호, 판례월보사, 2000. 1,42 쪽.
54)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법리 재검토, 월간고시, 고시계, 2001. 4, 19쪽.
55)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198-199쪽.
56)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002. 2, 34쪽 참조.
57) 김중권, 앞의 논문 35 쪽 참조.
58)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 시 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는 사인의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허가에 가 까운데, 다만, 등록의 수리에 있어서 행정청의 심사 범위가 적격사유 의 유무 등에 한정되는 점에 허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59)}$
4. 신 고60)
(1) 의 의

행정법상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 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 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행위", ${ }^{61)}$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 실•관념의 통지로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 }^{62)}$ "행정청에 대 하여 보통 문서로써 행하는 요식적 • 명시적 통지", ${ }^{63)}$ "일정한 법률사 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64)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신고의 통상적인 법적 효과는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신고대상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신고와 같이 사법상의 혼인의 효력이 창설적으로 발생하 는 경우도 있다.65)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신고는 사 실로서의 신고일 뿐이다. ${ }^{66)}$

[^0]그런데 실정법상 신고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그 유형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다르므로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 는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요구되며, 수리거부에 대해서 취소소 송이 인정되거나 또는 신고의 효과로서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의 현실은 행정규제의 완화책으로서 종래의 허가제 를 신고제로 바꾸면서도 제도의 실질은 변화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의 신고제는 형식은 신고제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 }^{67)}$

연혁적으로 볼 때, 허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허가 여부의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줄이고 신속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도가 법정의 자격•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록 제도로 발전되고, 국민에게 이보다 더 부담을 덜 주는 제도로서 일정한 신고만 하면 특정 영업을 쉽게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다 완화된 형태의 신고제도가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68)

[^1]그러나 현행법상 신고제도는 법적 성격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2) 종 류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전형적인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 니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단순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 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되는 신고를 말한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신고는 신고가 상대방(행정기관)에 제출되 어 도달된 때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 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사인의 신고행위 그 자체 만으로 금지가 해제된다), ${ }^{69)}$ 이는 자체완성적인 행위인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도 그 효과와 관련하여 법적 효과의 발생요 건으로서의 신고(예 : 혼인신고)도 있고, 경찰상 금지의 해제원인으로 서의 신고(예 : 각종 영업신고)도 있다. 또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의 신고는 의무적 신고(예 : 출생신고)와 임의적 신고(예 : 혼인신고) 로 구분될 수 있다. ${ }^{70)}$
「행정절차법」 제 40 조 제 1 항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 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 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형적인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69) 홍정선, 앞의 책, 329 쪽.
70)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중범 김 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150쪽.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기관에 도 달하면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즉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개별법령 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 는 경우（예컨대，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제 4 항 • 제 5 항）에는 「행정절차법」 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며，반대로 개별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 이 완료되는 행위라면「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인 신고에 해당한다．7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수리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데，그러한 경우의 수리는 행정행위가 아닌＇사실행위’로서의 수리를 의미한다．즉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만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그 밖의 수리는 다만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72)}$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예 ：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의 발생 또는 경찰상 금지의 해제를 통한 기본 권（영업의 자유）의 회복］를 가져온다．신고에 의하여 법이 정한 신고 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신고에 대한 심사•처리는 불 필요하며，설사 행정청이 신고에 대한 심사•처리를 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예컨대，건 축법상의 신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 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신고의 효과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심사•처 리 등 별단의 조처가 불필요하다．${ }^{73)}$ 자체완성적 행위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흠의 효과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따라서 개별 행정법령의 해석이 문제된다．

71）대법원 1996．7．12．선고 95 누 11665 판결；대법원 2000．4．11．선고 98 두 5682 판결．
72）김남진 • 김연태，앞의 책， 255 쪽．
73）김철용，앞의 책， 139 쪽．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행정법상 신고에는 이상과 같은 전형적인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이 외에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변형적인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행 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 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 는 신고(예 : 수산업법 제47조의 어업신고)를 말한다. ${ }^{74)}$ 즉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수리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 항을 통지하고 사인이 알린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인식의 표시행위인 점에서 단순한 문서의 도달이나 접수와 다르다.75)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 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자체완성적 신고와 다르다.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 야만 금지가 해제된다. ${ }^{76)}$
74)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 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는 수산 업법 제44조 제 2 항의 규정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 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 152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수산업법 제 44 조 소정 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 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관할관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된 구 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수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구역에 관하여는 같 은 법 제44조 소정의 적법한 어업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 다 37382 판결.
75) 김남진 - 김연태, 앞의 책, 255 쪽.
76) 홍정선, 앞의 책, 329 쪽.

대체로 신고가 인•허가나 등록에서의 신청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77)}$ 판례는「수산업법」 제47조의 어업신고，78）구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79）등을 이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고，비록 명칭은 신고가 아니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 항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80）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3）양자의 구별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 고는 그 법적 효과，신고수리의 의미 및 수리거부에 대한 쟁송가능성 등에 있어 그 내용을 달리하는 바，신고의 효과，신고에 대한 신고필 증의 의미，신고수리의 의미，신고수리 거부처분의 성질 등에서 구별 실익이 있다．

그런데 개별법령상 나타나고 있는 신고가 과연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로서의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 고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개별법령이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서의 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77）김남진 • 김연태，앞의 책， 140 쪽．
78）대법원 2000．5．26．선고 99다37382 판결．
79）대법원 2007．6．1．선고 2005두 17201 판결．
80）＂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3．31．법률 제 74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9 조 제 1 항，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9． 22. 대통령령 제 196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가）목，제 18 조의 2 제 1 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 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 고에서의 신고에 해당하며，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 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2． 26 선고 2006 두 16243 판결．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81}$ 다만,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 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행위 내지 직접적으로 행정목 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82)

일설은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의 신고의 구별기준으로 "원칙상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 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 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요건을 신고요건의 한 부분으로 한다고 하여도 입법자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할 수도 있는바, 양자 의 구별은 신고요건의 성질이 아니라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83)}$

생각건대, 물론 신고제와 허가제가 가지는 법적 의미의 차이에서 본 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제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입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신고는 사인의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그 러한 점에서 본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 고라고 할 수 없고, 등록 또는 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을 것이다. ${ }^{84)}$

특히 행정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종래의 허가제를 대폭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없이 형식 만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실질은 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실질적인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다수 포함되
81) 홍정선, 앞의 책, 149 쪽; 김명길, 앞의 논문, 474 쪽; 조성규, 앞의 논문, 242 쪽 참조.
82) 김명길, 앞의 논문, 474쪽.
83) 홍정선, 앞의 책, 150 쪽.
84) 조성규, 앞의 논문, 243쪽.

는 점에서도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실질적 허가와의 구별은 용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85)}$

따라서 적어도 허가제의 실질을 가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실 질적 요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86）

4）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대다수 문헌은 신고를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 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하고，판례 또한 이러한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즉 대법원 2000．5．26， 99 다 37382 판결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존재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이 고，대법원 2002．4． 12,2001 두 9288 판결은＇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 분취소’라는 사건 이름이 시사하듯 그와 같은 맥락에 선다．이 외에도 대법원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양 수인의 지위승계신고（대법원 1993．6．8．선고 91 누 11544 판결），「건축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건축물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대법원 1992．3．31．선고 91 누 4911 판결），「건축법」 제 14 조에 따른 건 축신고（대법원 2010．11．18．선고 2008두 167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1．20．선고 2010 두 14954 전원합의체 판결），구 「수산업법」 제 44 조에 따른 어업신고（대법원 2000．5．26．선고 99다37382 판결）를＇수 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87)}$

이와는 달리 판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에 따른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대법원 1993．7．6．선고 93마635 판결） 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고 있다．

85）조성규，앞의 논문，243쪽．
86）조성규，앞의 논문， 243 쪽．
87）대법원 1995．2．24．선고 94 누 9146 판결；대법원 1993．6．8．선고 91 누 11544 판결．
(3) 구별 개념

1) 통 보

통보는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의 행정협조 차원에서 행하는 통지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신고는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이다. 그러 나 양자 모두 정보제공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통 지

통지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즉 특정 사실의 통지행위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로 볼 수 있다(고지행위, 통보행위).

이와는 달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항을 알 리는 행위로서의 통지행위는 그 자체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 는 행정행위이다. 그 예로는 사실에 관한 관념의 통지(토지수용에서의 사업인정의 고시, 특허출원 공고, 귀화고시), 행위자의 의사의 통지(대 집행위 계고, 납세의 독촉)를 들 수 있다.
3) 신 청

신청이란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 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쌍방적 행정행 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신청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요청하는 절차상의 요건이 되나, 순수한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신청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 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나 신청 모두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의 통지를 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같으나 신청은 승낙여부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 고와는 차이가 있다．${ }^{88)}$

행정요건적 행위의 신청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 또 는 이익을 위하여 어떤 행정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특히 허가•특 허•인가 등은 어느 것이나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제17조）．즉 신청은 처분절차의 개시요건이다．89）
（4）신고의 요건

신고의 요건은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90）다만，「행정절차 법」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의무적인 성질 을 갖는 경우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 요건으로 i）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ii）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iii）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 제 2 항）．물론 신고인의 편익을 위해 신고의 내용은 사전에 주 지되어야 한다．이를 위해＂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 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 등

88）宇賀克也，行政手續法の解說，學陽書房，2006，58頁．
89）김세규，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동아법학 제33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12，54－55努．
90）＂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규정사항，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 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 점영업）의 영업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4．23．선고 2008 도 6829 판결．

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다．한편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 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와 수리 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91）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의무적인 성질을 갖 는 신고의 경우에 앞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제40조 제3항）．그리고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 야 한다（제40조 제4항）．「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 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 의 경우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92)}$
（5）신고의 수리
1）의무적 수리
신고의 수리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서는 개념상 문제 가 되지 아니하고，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서만 문제된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 로 수리하여야 한다．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이것은 판례의（원칙적）입장이기도 하다． 93 ）예외의 판례가 보이

91）홍정선，행정법원론（상），박영사，2010，192쪽．
92）홍정선，앞의 책，193쪽．
93）＂토지거래신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 21 조의 7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 28 조，국토 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시장•군 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일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기도 한다. 부적법한 수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거부하여야 한 다. 만약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다면, 그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수 리)가 된다.94)
2) 신고필증

행정실무상으로는 신고를 필한 경우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상이하다.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의 신고필증은 다 만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해 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말하자면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에서의 신 고필증은 사인의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승인하는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고, 신고의 효과를 발생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 인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즉 그것은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95)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주어지는 신고필증은 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지만, 그 서면에 나타나고 있는 수리는 신고한 사인들에게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인 것이라는 점에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시 부여되는 신 고필증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96)

[^2](6)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 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행정절 차법 제 40 조 제 2 항). 「행정절차법」은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자체완성적 신고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 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 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97)}$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신고의 효 과가 발생한다.98) 판례는 주민등록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 }^{99)}$

## 2) 부적법한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이었다면 행 정청이 수리하였다고 하여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왜냐 하면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도달로서 효력을 발생 하는 것이고, 그 수리는 도달을 확인하는 사실상의 행위일 뿐이며, 신 고가 도달되었다고 하여도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건 미비의 부적법한 신 고를 하고 신고영업을 영위한다면, 그러한 영업은 무신고영업으로서
97) 홍정선, 앞의 책, 194쪽.
98) 홍정선, 앞의 책, 194쪽.
99)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17850 판결.

불법영업에 해당하게 된다.100) 이러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취소처분 이 아니라 영업장폐쇄조치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101)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요건미비의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행위는 위법한 수리행 위가 된다.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 다면 수리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고,102)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 지 아니하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아니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가 된다. 수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 라서 수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신고업의 영업행위는 무
100)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 제 11 조, 제 2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 조 및 제 25 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 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 의 종류별로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 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 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 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 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대법원은 종래부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 정된다고 하는데, 공법상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발생의 여부를 사인에게 의존시키는 판례의 논리구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인 의 공법상 의무의 구체화는 공행정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사인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한다. 홍정선, 앞의 책, 196 쪽 각주 1 참조.
101) 홍정선, 앞의 책, 195쪽.
102)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 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 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 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신고영업으로서 불법(위법)영업에 해당하지만, 수리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신고업의 영업행위는 수리가 취소되 기까지는 불법(위법)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리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신고인의 신고영업을 막을 수 있다.103)
3) 신고의무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신고의무위반이 사법적 효력의 부인을 의미하는가는 신고의무를 규 정하는 법조항이 단속규정인가, 효력규정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104)

## (7) 수리의 거부(거부행위의 처분성)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에는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바,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 고,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만약 자체완성적 공 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에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접수의 거부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달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사실상의 행 위에 불과하며, 사인의 신고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는 발생한다. 판 례도 같은 입장이다. ${ }^{105 \text { ) 그러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특히 정보제 }}$
103) 홍정선, 앞의 책, 195-196쪽.
104) "국토이용관리법 제 21 조의 2 , 제 21 의 7 , 제 21 조의 3 제 7 항, 제 33 조 제 4 호의 각 규정 을 종합하면 위 법 제 21 조의 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 다카 2777 판결.
105)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 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 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13. 대통령령 제 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제조업의 허가등 에 관한 규칙(1997. 4. 23. 해양수산부령 제 19 호 수산물가공업 허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

공적 신고)라 하더라도 수리의 거부는 잠정적인 금지를 종국화시킨다 는 의미에서 일종의 금지하명이라고 보아 수리거부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06)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 가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법한 거부처분을 항 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제 1 절 국토•고통 관련 법제 분야

## 1. 개 관

국토교통부 소관 총 102 개 법률 중 27 개 법률에서 건설기계사업 등 106 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영업은 허가제 7건, 면허제 7건, 등록제 77건, 신고제 16 건으로 운영 중이고, 인허가권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81 개, 지방자치단체장이 23 개를 가지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순 } \\ & \text { 번 } \end{aligned}$ | 법률명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근거 조문) } \end{aligned}$ | $\begin{gathered} \hline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 \hline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 <br> 록 - 신고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1 | 건설기계 <br> 관리법 | 건설기계사업(건설기 계대여업/건설기계정 비업/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 계 폐기업)(법 제21조) | 등 록 | 시장 - 군수 구청장 |  |
| 2 | 건설기술 관리법 | 책임감리업(감리전문 회사, 법 제28조) | 등 록 | 시 - 도지사 |  |
| 3 | $\begin{aligned} & \text { 건설산업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건설업(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법 제8 조 및 시행령 제7조와 결부된 별표 1) | 등 록 | 국토교통 부 장관 | - 종합공사 를 시공하는 업 종: 토목공사 업/건축공사 업/토목건축 공 사 업 / 산 업•환경설비 공사업/조경 공사업 - 전 문 공 사 를 시공하는 업종. 실 내 건 축 공 |


| 순 | 법률명 | $\begin{gathered} \text { 영업명 } \\ \text { (근거 조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등 } \\ & \text { 록 } \cdot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사업/토공사 업 / 미 장•방 수•조적공사 업/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 계 - 구조 물 해체공사 업/금속구조 물 - 창 호 공 사업/지붕 판 금 - 건 축물 조립공사업/ 철근•콘크 리트공사업/ 기계설비 공 사업/상 - 하 수도 설 비 공 사업/보링• 그라 우 팅 공 사업/철도• 퀘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 경 식 재 공 사업/조경시 설 물 설 치 공 사업/강구조 물공사업/철 강 재 설 치 공 사업/삭도설 치공사업/준 설공사업/승 강 기 설 치 공 사업/가스시설 |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 순 | 법률명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근거 조문)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등 } \\ & \text { 록 • 신고권자 } \end{aligned}$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시공업(제1종, <br> 제 2 종, 제 3 종) <br> 난 방 시 공 업 <br> (제1종, 제2종, <br> 제3종)/시설물 <br> 유지관리업 |
| 4 | 건축사법 | 건축사업(법 제 18 조) | 사무소 <br> 개설신고 | 국토교통 부 장관 |  |
| 5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업(법 제14조) | 등 록 | 특 별자치시 <br> 장 - 특 별자 <br> 치 도지사 - <br> 시장 - 군수 - <br> 구청장 |  |
| 6 | 공인중개사 <br> 의 업무 및 <br> 부동산 <br> 거래신고에 <br> 관한 법률 | 공인중개업(법 제9조) | 사무소 개설등록 | 시 장 - 군 <br> 수 - 구청장 |  |
| 7 | 교통안전법 | 일 반교 통 안 전 진 단업 (법 제39조) | 등 록 | 시 - 도지사 |  |
| 8 |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업 (법 제21조) | 등 록 | 국토교통 부 장관 |  |
| 9 | 궤도운송법 | 궤도사업(법 제4조) | 허 가 | 특별자치도 <br> 지사 - 시장 - <br> 군수•구청장 |  |
| 10 | 도시교통 <br> 정비 <br> 촉진 법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대행업(법 제25조, 제26조) | 등 록 | 국 토 교 통 부 장관 |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순 <br> 번 | 법률명 | 영업명 <br> (근거 조간) | 등록•신고 <br> 유형 | 인•허가•등 <br> 록•신고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 순 번 | 법률명 | $\begin{gathered} \text { 영업명 } \\ \text { (근거 조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등 } \\ & \text { 록 • 신고권자 } \end{aligned}$ | 비 고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hline \text { 시 • 도에 걸 } \\ & \text { 치는 경우 : } \\ & \text { 국 토 교 통 부 } \\ & \text { 장관) } \end{aligned}$ |  |
| 19 | 자동차 <br> 관리 법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 차매매업/자동차정비 업(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 동차부분정비업, 원동 기전문정비업)/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법 제 53조제1항 및 시행령 제 12조제1항] | 등 록 | 시장 - 군수 - <br> 구청장 | 자동차정비업 은 1 개의 영 업으로 봄 |
| 20 | 제주특별 <br> 자치도 <br> 설치 및 <br> 국제자유 <br> 도시 조성을 <br> 위한 <br> 특별법 | 카지노업 <br> (법 제171조의6) <br> 휴양펜션업(법 제174조) | 허 가 등 록 | 도지사 |  |
| 21 | 지하수법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법 제22조) | 등 록 | 시장 - 군수 구청장 |  |
|  |  | 지하수영향조사업 <br> (법 제27조) | " | " |  |
|  |  | 지하수정화업 <br> (법 제29조의2) | " | " |  |
| 22 | 철도사업법 | 철도사업(법 제5조) | 면 허 | 국토교 통 부 장관 |  |
| 23 | 측량 - 수로 <br> 조사 및 <br> 지적에 <br> 관한 법률 | 측량업 (측지측량업/지 적측량업/공공측량업/ 일 반측량업 / 연 안조사 측량업/항공촬영업/공 | 등 록 | 국 토 교통 부 <br> 장관 (측지측 <br> 량업, 연안 <br> 조사업, 항공 |  |


| $\begin{aligned} & \text { 순 } \\ & \text { 번 } \end{aligned}$ | 법률명 | $\begin{gathered} \text { 영업명 } \\ \text { (근거 조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등 } \\ & \text { 록 • 신고권자 } \end{aligned}$ | 비 고 |
| :---: | :---: | :---: | :---: | :---: | :---: |
|  |  | 간영상도화업/영상처 리업/수치지도제작업/ 지 도 제작 업 /지 하시 설 물측량업,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4조) |  | 촬영업, 공간 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 도제 작업, 지도제 작업, 지하시 설물측량업) 시 - 도지사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  |
|  |  | 수로사업(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수로측량 업/해양관측업, 법 제 54 조 및 시행령 제45조) | 등 록 | 해 양수 산 부 장관 |  |
|  |  | $\begin{aligned} & \text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 } \\ & \text { 행업(법 제93조) } \end{aligned}$ | 등 록 | 시 - 도지사 |  |
| 24 | 항공 법 | 국내항 공운송 <br> 사업 <br> (법 제112조) | 면 허 | 국 토교 통 부 장관 |  |
|  |  | 산업 국제항공운송 <br> 사업 <br> (법 제112조) | 면 허 | 국토 교통 부 장관 |  |
|  |  | 소형항공운송사업 <br> (법 제132조) | 등 록 | 국토교통 부 장관 |  |
|  |  | 항공기사용사업 <br> (법 제134조) | 등 록 | 국토교 통 부 장관 |  |
|  |  | 항공기취급업 <br> (법 제137조) | 등 록 | 국 토 교 통 부 장관 |  |
|  |  | 항공기정비업 <br> (법 제137조의2) | 등 록 | 국토교통 부 장관 |  |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 순 | 법률명 |  | 영업명 거 조문)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등 } \\ & \text { 록 • 신고권자 } \end{aligned}$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상업서류 송달업 <br> (법 제139조) |  | 신 고 | 국 토교통 부 장관 |  |
|  |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법 제139조) |  | 신 고 | 국 토 교통 부 장관 |  |
|  |  | 도심공항터미널업 (법 제139조) |  | 신 고 | 국 토 교통 부 장관 |  |
|  |  | 항공기대여업 <br> (법 제140조) |  | 등 록 | 국 토 교통 부 장관 |  |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법 제141조) |  | 등 록 | 국 토 교통 부 장관 |  |
| 25 | 해외건설 촉진 법 | 해외건설업(종합건설 업/일 반건설업/산업설 비공사업/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전기공사 업/정보통신공사업/환 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해 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법 제5조 및 시행업 제 5 항제 1 호와 결부된 별표1) |  | 신 고 | 국토교통 부 장관 |  |
| 2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 화물자동차운 송사업 (일 반/ 개별/용달, 법 제3조 및 시 행령 제3조) | 허 가 | 국토교통 부 장관 |  |
|  |  |  | 화 물 자 동 차 운송주선사업 <br> (법 제24조) | " | 국토교통 부 장 관 |  |
|  |  |  | $\begin{aligned} & \text { 화 물 자 동 차 } \\ & \text { 운송가맹사업 } \\ & \text { (법 제29조) } \end{aligned}$ | $\prime$ | 국토교통부 장관 |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순 | 법률명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근거 조문)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등 } \\ & \text { 록 • 신고권자 } \end{aligned}$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합 } \\ & \text { 계 } \end{aligned}$ | 26개 법률 | 106개 영업 | 허 가 | 7건 | 중앙 |  |  |
|  |  |  | 면 허 | 7건 | 행정 <br> 기관장 | 81개 |  |
|  |  |  | 등 록 | 77건 | 지방 |  |  |
|  |  |  | 신 고 | 16건 | 단체장 |  |  |

## 2．개별법상 영업규제

（1）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 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 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건설기계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건설기계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 |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 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 |
| 건설기계매매업 | －중고（中古）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
| 건설기계폐기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 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왜•절단 또는 용해 （鎔解）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 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37 조 제 1 항 제 7 호 및 제8호）．건설기계사업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사항 변경 <br> 신고 | 시장•군수• <br> 구청장 |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법 제24조 |
| 개업 • 휴업 • <br> 폐업 • 재개업 <br> 신고 | $"$ | －사업을 개업 • 휴업 또는 폐 <br> 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 <br> 개한 경우 | 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 25 조의 3 에서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업 종 | 준수의무의 내용 |
| :---: | :---: |
| 건설기 계대여업자 |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가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것 <br>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 계를 대여하지 아니할 것 |
| 건설기계정비업자 |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br>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 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br>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 른 사후관리를 할 것 |
| 건설기계매매업자 |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 |


| 업 종 | 준수의무의 내용 |
| :---: | :--- |
|  | 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br> 서면으로 고지할 것 |
|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저당권 |  |
| 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이해관계인이 져평권기업자 |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 <br> 우에는 폐기할 수 있음）와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 <br> 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에는 폐기를 하지 아니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 업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건설기계，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 게 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2）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 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 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책 임감리등107）업＇（감리전문회사）을 규제하고 있다．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감리전문회사로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28 조 제 1항）．${ }^{108)}$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부수하는 등록－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107）「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등은＂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말한다 （제 2 조 제 12 호）．
108）「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책임감리등업 등록•신고 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 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 구 분 | 등록•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사항 변경 <br> 등록 | 시•도지사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br>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제외） | 법 제28조 <br> 제2항 |
| 휴업•폐업신고 | $" \prime$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법 제28조 <br> 제3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 <br> 하려는 경우，감리전문회사 <br>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 법 제29조의2 <br> 제1항 |

감리전문회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되고，회사별로 업무범위가 구분된다（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07조）．

| 회사의 종류 | 업무범위 |
| :---: | :---: |
| 종합감리전문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
| 토목감리전문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
| 건축감리전문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
| 설비감리전문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5항에서는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 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 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

상하도록 하고，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으며，소속 공무원，관계 전문가，건설감리 협회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 32 조 제 2 항 및 시행령 제 114 조 제 2 항）．
（3）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건설공 사를 하는 업）을 규제하고 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기준신고 | 국토교통부 <br> 장관 |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br>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br> 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 법 제9조 <br> 제4항 |
| 폐업신고 | $\prime \prime$ | －건설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20조의2 <br> 제1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prime \prime$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br>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을 <br> 하려는 경우 | 법 제17조 <br> 제1항 |

109）「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 신청 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그 에 부수하는 등록•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건설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 구 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 :---: | :---: | :---: |
| 종합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 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  | $\begin{gathered} \text { 산업•환경설비 } \\ \text { 공사업 } \end{gathered}$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 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 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
| 전문 <br> 공사를 <br> 시공 <br> 하는 <br>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 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br>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  | 미장 - 방수 조적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 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 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 :---: | :---: | :---: |
|  |  |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 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br> 방수공사 :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 트모르타르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br>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 트블록 -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 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 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  | $\begin{gathered} \text { 비계 • 구조물해체 } \\ \text { 공사업 } \end{gathered}$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 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치하는 공사 <br>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br>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  | 금속구조물 <br> -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 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 는 공사 <br> - 금속구조물공사 <br>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br>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br>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 거나 설치하는 공사 <br> 온실설치공사: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 의 설치공사 |


| 구 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 :---: | :---: | :---: |
|  |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 - 지붕 • 판금공사: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 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br>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 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  | $\begin{gathered} \text { 철근•콘크리트공 } \\ \text { 사업 } \end{gathered}$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 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 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 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begin{gathered} \text { 상 - 하수도설비 } \\ \text { 공사업 } \end{gathered}$ |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 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br>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  | $\begin{gathered} \text { 보링 • 그라우팅 } \\ \text { 공사업 } \end{gathered}$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 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 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 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
|  |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 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 지 - 관리하는 공사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 :---: | :---: | :---: |
|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 을 설치하는 공사 |
|  |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br>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 립•설치하는 공사 <br>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  | 철강재설치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br>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 립 - 설치하는 공사 <br>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 제 2 종 및 제 3 종의 업무내용 <br>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br>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 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br>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br> - 저장능력 500 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설의 설치•변경공사 |


| 구 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 :---: | :---: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
| :--- |


| 구 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 :---: | :---: | :---: |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 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br>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cdot$ 재축 및 대수 선 공사 <br>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 설 -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br> - 전문건설업종 중 1 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 - 보강공사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 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나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 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4) 건축사법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 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 한 보수를 받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창 규제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 18 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 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 23 조 제1항）．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 제 17 조 제 5 호）．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

국토교통부장관은「건축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 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30 조 제 1 항）．
（5）골재채취법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 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에서는＇골재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시설•장비 및 기 술인력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14 조 제 1 항）．골재채취업 등록 및 등록기준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48 조의 2 제 1 호 및 제 2호）．골재채취업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기준신고 | 시장 $\cdot$ 군수 <br> 또는 구청장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br>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br> 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br> 신고 | 법 제14조 <br> 제3항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상호 등 <br> 변경신고 | $" \prime$ | -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br>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 법 제16조 |
| 폐업신고 | $\prime \prime$ | - 골재채취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 법 제17조의2 <br> 제1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법 <br> 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br> 상속으로 골재채취업자의 지 <br> 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17조 <br> 제3항 |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 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인중개 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 다(법 제9조 제 1 항). 공인중개업자는 1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 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7조 제3호 및 제5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부 수하는 등록 -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등록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소속공인중개사 <br> 고용 등 신고 | 등록관청 |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 한 경우 | 법 제 15 조 <br> 제 1 항 |
| 인장등록 | " |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 법 제16조 <br> 제 1 항 |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 |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 전사실 신고 | 법 제21조 <br> 제 1 항 |
| 휴업•폐업• 재개업신고 | "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휴 업기간의 변경,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 는 경우 | 법 제21조 <br> 제 1 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 법 제 17 조 <br> 제1항 |

공인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 제 거래가격 등을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27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법 제27조의2).
(7)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에서는 '일반교통진단업'을 규제하고 있다.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 제60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2항).

시 - 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적절하 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 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 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 1 항).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체계의 효율성 • 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 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업＇을 규제하고 있다．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 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조）．평가대행자 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29조 제1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3조에서는 평가대행업자에게 다음 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구 분 | 준수의무의 내용 |
| :---: | :---: |
| 평가서 등 자료 <br> 보존 의무 |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당 <br>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 년 동안 보존할 것 |
|  |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 <br> 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 <br> 성하지 아니할 것 |
| 타당성 평가서 |  |
| 작성과 관련한 |  |
| 의망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  |
| 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지 |  |
| 아니할 것 |  |
|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 |  |
| 통 수요를 조사 • 분석하거나 예측하지 아니할 것 |  |


| 구 분 | 준수의무의 내용 |
| :---: | :---: |
|  |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 <br> 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br> 그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br>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 <br> 하지 아니할 것 |
| 기 타 |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 <br> 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 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9）궤도운송법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 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궤도운송법」에서는 ‘궤도사업’［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법 제4조 제1항）．궤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수 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궤도사업 허가 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br> 변경허가／신고 | 시장•군수 <br> 구청장 |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br>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br> 는 경우 | 법 제4조 <br> 제4항 |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휴지 <br> 폐지신고 | ＂ | －궤도사업의 경영의 전부 또 <br> 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 <br> 려는 경우 | 법 제11조 <br> 제1항 |
| 영업양도 등 | 신고 | －궤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 <br> 하려는 경우，상속으로 궤도 <br>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br> 경우 | 법 제9조 1 항 및 <br> 제2항 |

「궤도운송법」 제26조에서는 궤도사업자에게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 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10）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 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교통영향분석•개선대 책수립대행업＇을 규제하고 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하고，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11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110）「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 등과 관 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7조에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구 분 | 준수의무의 내용 |
| :---: | :---: |
| 자료 보존 의무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 료를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 년 동안 보 존할 것 |
| 타당성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의무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 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br>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것 |
| 기 타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 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도급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제외함） |

（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 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 업전문관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1）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2）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3）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 행계획서의 작성，（4）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6）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7）법 제77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 한 동의서 징구（徵求），운영규정 작성 지원，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 항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 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을 말한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 경등록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 74조의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하게 할 수 있다（법 제74조 제1항）．
（12）도시철도법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 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도시철도법」에서는＇도시철도사업’을 규제 하고 있다．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와 관련된（1）도시철도시설의 건설，（2）도 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3）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4)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차량 - 도시철도부지 등 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 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 4조 제 1 항).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업하거 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 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법 제 15 조의 2 제 1 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자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 게 도시철도건설자의 사무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25조 제 1 항).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 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창고업’을 규제하고 있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63조 제1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15 조 제 1 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 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 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2) 물류창고업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 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 경등록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63조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창고업자에게 물류창고 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같은 법 제 21 조의 2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61조 제2항).
（14）물류정책기본법
물류체계의 효율화，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 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국제물류주선업＇을 규제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 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 업을 말한다．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 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함）등 등록기 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69조 제2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 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 1항）．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 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5조 제1항）．
（15）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 준이 되게 하고，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업을 규제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제 26 조의 2 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고，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감정평가사는 감 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 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 에＂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법인은 그 명칭에＂감정평가법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 34 조 제 1 항）．

감정평가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9조 제1항）．
－법 제 3 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제 16 조에 따른 표준주 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법 제 9 조 제 1 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 11 조 제 4 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제 16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 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36 조 에 따라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 3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16）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동산개 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을 규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 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 천제곱미 터 또는 연간 1 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33 조 제 1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보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보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사항 <br> 변경신청 | 국토교통부 <br> 장관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 <br>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br> 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법 제7조 <br> 제2항 |


| 구 분 | 신고 - 보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폐업신고 | " | -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 법 제15조 제 1 항 |
| 영업양도 등 신고 | " | -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개발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려는 경우 | 법 제 11 조 |
| 사업실적 등 보고 | " | -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 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의 변경 사항 | 법 제 17 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 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2) 부동 산개발업자에 대한 경영상황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 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17）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 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 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에서는＇안전전문진단업＇을 규제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고，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 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 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5항）．

안전전문진단기관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 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9조의 6 제 3 항）．
（1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 :---: | :---: |
| 여객자동차 <br> 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 에 응하여 자동차 를 사용하여 유상 （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노선 <br> 여객자동차 <br> 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노선） 을 정하여 여객을 운 송하는 사업 |
|  |  | 구역 <br> 여객자동차 <br> 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  |
| 여객자동차 <br> 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 |  |  |
| 여객자동차 <br> 운송가맹사업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 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1항）．「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적 성질은 특정인에게 권리 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특허＇에 해당하고，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1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 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111）대법원 2010．1．28．선고 2009 두 19137 판결．

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80조).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에 부수하는 인•허가•등록•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인•허가•등 <br> 록•신고권자 | 내 용 |  |
| :---: | :---: | :---: | :---: | 법적 근거


| 구 분 | 인•허가•등 <br> 록•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운임/요금신고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br>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br>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br>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 <br> 임이나 요금을 정한 경우 | 법 제8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는 운수사업자에 관한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 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 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 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 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 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자(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 사자에게서 받을 것


## 준수의무의 내용

- 법 제 24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 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2)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 못하는 제한이 따른다(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 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0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 제 11 조, 제 12 조, 제 14 조(제 2 항은 제외한다), 제 15 조 및 제 16 조(제 1 항은 제외한다) 가 준용된다(법 제35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80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 여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79조 제 1항 및 제2항).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 아야 한다(법 제 36 조 제 1 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등록•허 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80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업에 부수하는 인•허가 - 신고 - 보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인 - 허가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공사시행 인가 | 시 - 도지사 | -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38조 <br> 제 1 항 |
| 사용약관 신고 | " | - 사용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 40 조 <br> 제1항 |
| 시설 사용료 인가 | " | -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 자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 으려는 경우나 시설 사용료 를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41조 <br> 제1항 |
| 터미널 <br>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 변경인가 | " | - 터미널의 위치•구조 및 구 조•설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43조 <br> 제1항 |
| 휴업•폐업허가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 | 법 제48조, <br> 법 제 16 조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인 - 허가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  | 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 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 | 제1항 |
| $\begin{gathered} \text { 영업양도 등 } \\ \text { 신고 } \end{gathered}$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양도 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 속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 48 조, <br> 법 제14조 <br>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 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 대합실 -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법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 차터미널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 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 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또는 운수종사 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하게 할 수 있다(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4)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2 개 이

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허가•신고 시 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80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부수 하는 인•허가•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인 - 허가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고 | 시 - 도지사 | -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 법 제49조의 2 <br> 제1항 |
| 운송가맹약관 신고(변경신고) | 국토교통부 <br> 장관 또는 <br> 시 - 도지사 | - 사용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 49 조의 4 <br> 제1항 |
| 휴업•폐업허가 | " | - 여객자동차운 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 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 | 법 제 49 조의 7 , <br> 법 제 16 조 <br> 제 1 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 여객자동차운송가 맹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여객자동차운송가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 49 조의 7 , <br> 법 제14조 <br>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 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장부•서 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 다(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19）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 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br>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 |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정비작업 또 <br> 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 |
| 자동차해체 |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br> 재사용 강용한 법 <br>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53 조 제 1 항）．자동차 관리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4항）．특히 자동차정비사업 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정비책임자를 선임하 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4조 제 1 항）．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신청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76조 제 14호 및 제15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금지행위의 내용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위탁•위임 •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함)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 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 법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행위(자동차정비업자만 해당함)
-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 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동차매매업자만 해당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1)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 부를 고지하여야 하는데(법 제58조 제1항),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 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58조 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 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 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 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 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카지노업’과 '휴양펜션 업'을 규제하고 있다.

1) 카지노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하려면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171 조의 6 제 1 항 및 제 2 항).
2)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74조 제1항).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 광진흥법」 제 20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1）지하수법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 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업＇，‘지 하수정화업’을 규제하고 있다．

1）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 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상속으 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 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로 하여

금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 하게 할 수 있고,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 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2) 지하수영향조사업

지하수영향조사업은 법 제7조 또는 제 13 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 하는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 13 조 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 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1 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3) 지하수정화업

지하수정화업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 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하수정화업을 하려 는 자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지하수정화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상속으로 지하수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29 조의 2 제 3 항，제 24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 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 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22）철도사업법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 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사업법」에서는 ‘철도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철도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철도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 5 조 제 1 항）．「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법인＇으로 한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철도사업 면허，인•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8조）．
철도사업 면허에 부수하는 인•허가－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인•허가 • <br>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사업계획 <br> 변경신고／인가 | 국토교통부 <br> 장관 |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br>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br> ：인가） | 법 제12조 <br> 제1항 |


| 구 분 | 인－허가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운임 • 요금 <br> （변경）신고 | ＂ | －운임 •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 | 법 제9조 <br> 제 1 항 |
| 철도사업약관 （변경）신고 | ＂ | －철도사업약관을 정하거나 변경 하려는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
| 공동운수협정 <br> （변경）인가／ <br> 신고 | ＂ |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 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법 제13조 <br> 제 1 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 하려는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 휴업•폐업 허가／재개업 신고 | ＂ | －철도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 는 경우 | 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도사업자에게 해당 철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철도사업자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23）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 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측량업’, ‘수로사업’ 및 ‘측량기 기 성능검사대행업'을 규제하고 있다.

## 1) 측량업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측량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법 제4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와 결부된 별표 7).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측지측량업 | -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 • 지물에 댁 <br>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  |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갖춰진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br>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층량 <br>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br>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 지적측량업 |  |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 -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br>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 연안조사측량업 | -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 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br> -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 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
| 공간영상도화업 | -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 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
| 영상처리업 | -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 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
| 수치지도제작업 | -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 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 지하시설물측량업 | -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측량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측량업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측량업자가 30 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8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1)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 를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측량업자가 법 제44조 제 2 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항).
2) 수로사업

수로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54 조 제 1 항 및 제4항).

수로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법 제5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5조와 결부된 별표 9).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수로조사업 | -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어항 등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br> -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로조사 <br> - 조석, 조류, 해류, 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측 <br> -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br> - 해양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br> - 수로조사 관련 도면의 작성 <br> ※ 해도제작업은 제외함 |
| 수로측량업 | - 수로사업 업무내용 중 단빔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수로 측량 <br> - 수로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
| 해양관측업 | - 조석, 조류, 해류, 수질, 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br> - 해양관측 관련 도면의 작성 |
| 해도제작업 | - 해도, 전자해도 및 해양주제도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데 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

수로사업 영업 양도 등 신고，휴업•폐업 등 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46 조 및 제 48 조를 준용한다（법 제54조 제6항）．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는（1）수로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로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2）수로사업 자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수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 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항）．

3）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기술능 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93 조 제 1 항）．측량기가의 성능검사대행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 1 항）．
（24）항공법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 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항공시설 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며，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 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항공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다음의 표와 같은 항공 관련 사업 을 규제하고 있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 공운송사업으로 구분됨） |
| 소형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 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건설 또는 사진촬 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에 대한 급유，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그 밖에 정비등을 제외한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
| 항공기정비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i）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을 하는 업무，ii）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 하는 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상업서류 송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제 2 조제 2 항 단 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 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 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 （代理）［여권 또는 사증（查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 한다］하는 사업 |
| 도심공항터미널업 |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 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항공기대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 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1)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 112 조 제 1 항).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및 면허에 부수하는 인•허가•승인•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155 조 제 1 항). 항공운송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 <br> 당하는 욱낭을 함 |
| 국제항공운송사업 걱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잉징평의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 하여, 국제 정기편과 국제 부정기편의 어느 하나에 해 <br> 당하는 운항을 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부수하는 인•허가•승인•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인 - 허가 - 승 <br> 인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정기편 운항 허가 | 국토교통부 장관 | -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 노선별 허가 | 법 제 112 조 <br> 제2항 |
| 부정기편 운항 허가 | " | -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 | 법 제 112 조 <br> 제2항 |
| 면허사항 <br> 변경면허 | " |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 112 조 <br> 제5항 |
| 허가사항 <br> 변경허가 | " | -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 112 조 <br> 제5항 |


| 구 분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승 } \\ & \text { 인 • 신고권자 } \end{aligned}$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운항규정 및 <br> 정비규정 <br> (변경)신고/ <br> 인가 | " |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최 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 로그램 등: 인가) | 법 제 116 조 <br> 제1항 |
|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 <br> 운임 • 요금 <br> (변경)인가/ <br> (변경)신고 | " | -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 물(우편물은 제외함) 운임 •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 117 조 <br> 제 1항 |
| 공동운수협정 <br> 체결 등 <br> (변경)인가/ <br> 신고 | " |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 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 운송사업자(외국인 항공운송 사업자를 포함함)와 공동운항 협정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 운임 • 홍보•판매에 관한 영 업협력 등 제휴협정을 체결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경미 한 사항 변경: 신고) | 법 제 121 조 <br> 제1항 |
| $\begin{gathered} \text { 영업양도 등 } \\ \text { 신고 } \end{gathered}$ | " |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합 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 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경우 | 제 124 조부터 제 126 조까지 |
| 폐업승인/신고 | " | -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하 려는 경우: 승인 <br> -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하 려는 경우: 신고 | 법 제 128 <br> 제1항 및 <br>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운송사업자의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공항시설，비행장，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항공기，항 행안전시설，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

2）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법 제132조 제1항）．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에 부수하는 인 • 허가 • 승인 •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155 조 제1항）．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1조제2항부터 제 5 항까지，제 116 조 및 제 117 조를 준용한다（법 제 132 조 제 3 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형항공운 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고，사무소，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 사，질문할 수 있다（법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

## 3）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34조 제1항）．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에 부수하는 인•허가•승인•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 야 한다（법 제 155 조 제 1 항）．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 116 조 및 제 117 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 3 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 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질문할 수 있다(법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
4)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37조 제1항). 항공기취급업 등록 신청 및 등록에 부수하는 인•허가•승인•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155 조 제 1 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취급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질문할 수 있다(법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
5)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37조의2 제1항). 항공기정비업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155 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질문할 수 있다(법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
6) 상업서류 송달업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상업서류 송달업•항공운송 총대리점업•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39조 제1항). 상업 서류 송달업•항공운송 총대리점업•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및 그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155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 송달업자•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도 심공항터미널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

하게 할 수 있고，사무소，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질문할 수 있다（법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 송달업자가「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 송달업자에 대하여 「우편법」과 관련된 사 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항공법 제153조 제4항）．

7）항공기대여업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40조 제1항）．항공기대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 야 한다（법 제 155 조 제 1 항）．

8）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법 제141조 제1항）．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155조 제1항）．
（25）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해외건설 업＇（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규 제하고 있다．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하고，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해외건설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 령 제 5 조제 1 항과 결부된 별표 1 ）．

| 영업명 |  | 영업 내용 |
| :---: | :---: | :---: |
| 종합건설업 |  |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 <br> －건축공사 <br>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br> －전기공사 <br> －정보통신공사 <br>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br> －이상의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 리를 포함함） <br> －이상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br> －법 제 2 조 제 3 호에서 정한 활동 |
| $\begin{aligned} & \text { 일반 } \\ & \text { 건설업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토목 } \\ & \text { 공사업 } \end{aligned}$ |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이에 대한 유지－보 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함）및 이에 부수되 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 $\begin{aligned} & \text { 건축 } \\ & \text { 공사업 } \end{aligned}$ | －건축공사，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 리를 포함함）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 $\begin{aligned} & \text { 토목 } \\ & \text { 건축 } \\ & \text { 공사업 } \end{aligned}$ | －토목공사－포장 공사－항만준설공사 <br> －건축공사 <br> －이상의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 리를 포함함） <br> －이상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산업설비공사업 |  |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 치공사，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조경공사업 |  | －조경공사，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 관 리를 포함함）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begin{gathered} \text { 전문 } \\ \text { 건설업 } \end{gathered}$ | 「건설 <br> 산업기 <br> 본법」상 <br> 전문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 전 문공사，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 를 포함한다）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영업명건설업 <br> 소분류에 <br> 따른 <br> 강사업 |  |
| :---: | :---: |
| 졍기공사업 내용 |  |
| •전기공사,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 |  |
| 리를 포함한다)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 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10 조).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 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 :---: |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다른 사람의 요 구에 응하여 화 물자동차를 사용 하여 화물을 유 상으로 운송하 는 사업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일정 대수 이상의 화 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화물자동차 1 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 송하는 사업 |
|  |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 송하는 사업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 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 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 |  |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에 부수하는 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65조 제1항).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부수하는 허가•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허가-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국토교통부 <br> 장관 | -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 변경: 신고) | 법 제3조 <br> 제3항 |
| 허가기준 신고 | " | - 허가받은 날부터 3 년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 한 사항 신고 | 법 제3조 <br> 제7항 |
| $\begin{gathered} \text { 운임 • 요금 } \\ \text { 신고 } \end{gathered}$ | " | - 운임과 요금을 정한 경우 (2012.12.31까지 유효) | 법 제5조의2 <br> 제 1 항 |
| 운송약관 <br> (변경)신고 | " | - 운송약관을 정한 경우 및 변경한 경우 | 법 제6조 <br> 제1항 |
| 휴업•폐업 신고 |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 부를 폐업하려는 경우 | 법 제 18 조 <br> 제 1 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 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 는 경우 | 법 제16조 제1항 및 <br> 제 17 조 <br>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 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 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10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 송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법 제47조의 2 제 1 항), 이는 보고적 성격의 신고의무라고 생각된다. 최대 적재량이 5 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사 고가 발생한 경우「상법」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법 제 7 조 제 1 항 및 시행령 제 41 조의 13 제 1 항），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 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35조）．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제11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 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 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아니할 것
－법 제 2 조 제 3 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 여지 아니할 것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 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지 아니할 것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법 제 12 조에 따른 준 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을 부당하게 화주，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 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 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일 것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 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지 아니할 것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 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법 제 40 조제 1 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위•수탁차주＂ 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 대인 운송사업자（이하＂1대사업자＂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 대사업자 가 요구하면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 준수의무의 내용

화물위탁증을 내줄 것

- 법 제 24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 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 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 여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법 제2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화물자동차 운 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에 부수하는 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 를 내야 한다(법 제 65 조 제 1 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하여 는 같은 법 제6조, 제 16 조부터 제 18 조까지를 준용한다(법 제 28 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선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이는 보고 적 성격의 신고의무라고 생각된다．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 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상법」 제 135 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법 제7조 제1항），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제26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 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다만，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 주나 1 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 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 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지 아니할 것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지 아니할 것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1）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허 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 선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 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 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에 부수하는 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65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 16 조부터 제 18 조까지를 준용한다(법 제28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법 제47조의 2 제 1 항), 이는 보 고적 성격의 신고의무라고 생각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상법」 제 135 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법 제7조 제1항), 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 35 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허 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 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 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 제 2 절 산업 - 자원 관련 법제 분야

## 1. 개 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 88개 법률 중 20개 법률에서 계량기 제작 업 등 60 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영업은 허가제 14 건, 등록제 36 건, 신고제 5건으로 운영 중이고, 인허가권112)은 중앙행정기관장이 27 개, 지방자치단체장이 29 개를 가지고 있다.

| 순 번 | 법률명 | 영업명 (근거 조문)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인 - 허가 - <br> 등록 - 신고 <br> 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1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기 제작업(법 제6조 제 1 항제 1 호) | 등 록 | 시 - 도지사 |  |
|  |  | 계량기 수리업(법 제6조 제1항제2호) | 등 록 | " |  |
|  |  | 계량증명업(법 제6조제 1항제3호) | 등 록 | " |  |
|  |  | 계량기수입업(법 제8조 제1항) |  |  | -등록 등을 <br> 통하여 영업 <br> 을 규제하 <br> 지 아니함 |
|  |  | 계량기판매업(법 제9조 제1항) |  |  | " |
| 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제조업 <br>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허 가 | 시장 - 군수 <br> 구청장 |  |
|  |  |  | 신 고 | " |  |

[^4]

제 2 절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 $\begin{aligned} & \text { 순 } \\ & \text { 번 } \end{aligned}$ | 법률명 | 영업명 (근거 조문)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인 - 허가 - <br> 등록 - 신고 <br> 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8 | 액화석유 <br> 가스의 <br> 안전관리 <br>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 제3조제1항) | 허 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서울특별시 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  |
|  |  | 액화석유가스용품 제조 사업(법 제3조제1항) | " | " |  |
|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br> 사업(법 제3조제2항) | " | 특별자치도 <br> 지사-시장 <br> 군수•구청장 |  |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법 제3조제2항) | " | " |  |
|  |  | 외국가스용품 제조업 <br> (법 제6조의2) | 등 록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
|  |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 <br> 사업(법 제6조의3) | 등 록 | 시장 - 군수 구청장 |  |
| 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법 제25조) | 등 록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
|  |  |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 시공•세관업(법 제37조) | 등 록 | 시 - 도지사 |  |
| 10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사업 (법 제21조) | 신 고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





## 2．개별법상 영업규제

（1）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량기 제작업’，‘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계 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계량기 수입업’ 및 ‘계량기 판매업’을 규제하고 있다．다만，「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량기 제작업，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만을 등록제로 운영 중이고 계량기 수입업 및 계량기 판매업의 경우는 등록 등을 통하여 영업을 규제하지 아니한다．
계량기 제작업，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 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계량기 제작업，계량기 수리업，계량증 명업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42조 제1호）．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제작업자，계량기 수리업자，계량기 수입업자，계량기 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 소．공장．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 운반 •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 냉동 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

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고압가스 제조업’，‘고압가스 판매 업＇，＇고압가스 용기 등 제조업＇，＇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 기등 제조업＇，＇고압가스 수입업＇，＇고압가스 운반업＇을 규제하고 있다．

1）고압가스 제조업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함）하려는 자는 그 제조 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단，고압가스 충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 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고압가스 제조업 허가 신청 및 그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4조 제 1 항）．

고압가스 제조업 허가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br> 변경허가 | 시장－군수－ 구청장 |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4조 <br> 제1항 |
| 신고사항 변경신고 | ＂ | －신고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4조 <br> 제2항 |
| 사업개시• <br> 중단－폐지－ <br> 재개 신고 | ＂ |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및 일정기간 중단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 법 제7조 |
| 영업양도 등 신고 | ＂ | －고압가스 제조업을 양도하거 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 로 고압가스 제조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안전관리자 <br> 선임 • 해임 <br> 퇴직 신고 | $" \prime$ | -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 <br> 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 <br> 한 경우 | 법 제15조 <br> 제3항 |
| 안전관리규정 <br> 제출 및 <br> 작성 $~$ | 보존 |  |  |

고압가스 제조업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 23 조 제 1 항),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 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법 제 25 조 제 1 항).
2) 고압가스 판매업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3항).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 신청 및 그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 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고압가스 판매업에 부수하는 신 고사항은 고압가스 제조업의 경우와 같다.
고압가스 판매업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3조 제1항),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 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법 제 25 조 제 1 항).
3) 고압가스 용기 등 제조업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5 조 제 1 항). 고압가스 용기 등 제 조업 등록 신청 및 그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 제34조 제1항). 고압가스 용기 등 제조업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고압가스 제조업의 경우와 같다.

고압가스 용기 등 제조업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3조 제1항),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 25 조 제 1 항).
4)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 등 제조업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한다(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또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 기 등 제조업자는 3 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 등 제조업 등록 신청 및 그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 를 내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 등 제조업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고압가스 제조업의 경우와 같다.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 등 제조업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3조 제1 항),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5) 고압가스 수입업

고압가스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5 조의 3 제 1 항).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 신청 및 그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고압가스 수입업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고압가스 제조업의 경우와 같다.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3조 제1항),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 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6) 고압가스 운반업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 4 제 1 항). 고압가스 운반업 등록 신청 및 그에 부수하 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고압가스 운반 업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고압가스 제조업의 경우와 같다.
고압가스 운반업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3조 제1항),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 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법 제 25 조 제1항).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 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광해방지사업'(1) 산림복구, (2)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함), (3) 오염수질의 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4)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감리,
（5）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다만，산업 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 1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3 항의 위임에 따 른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에서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다음의 표 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휴업•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광해방지사업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것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함）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함）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되지 아니할 것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 는 것을 촉진하고，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 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기 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신탁관리업＇［기 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기술등＂이라 한다） 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기술료의 징수•분배，기술의 추가 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업］을 규제하고 있다．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35 조의 2 제 1 항）．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 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이용자，그 밖에 해당 기술 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 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같은 조 제6항），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 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같은 조 제7항）．

한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 조 제 1항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기술이전 유형별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1）법 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2）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3）대표 자를 변경한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 업하였을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 도록 하고 있는데，이러한 변경허가，통보 의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 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의6）．

## （5）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 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가스공급시설과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

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도시 가스사업＇（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일반 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및＇천연가스수출입업＇（천연가스 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1）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 :---: | :---: |
| 가스도매사업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 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  |  |
| 일반도시가스사업 |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 게 공급하는 사업 |  |  |
|  |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 받거나 스스로 제 조한 도시가스를 용기，저장탱크 또 는 자동차에 고 정된 탱크에 충 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 통상자 원부령으 로 정하는 사업 |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 －배관 또는 저장탱크 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 여 자동차에 충전 하는 사업 |
| 도시가스충전사업 |  |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 －이동충전차량을 통 하여 공급받은 압축 도시가스를 자동차 에 충전하는 사업 |
|  |  | 고정식 <br> 압축도시가스 <br> 이동충전차량 <br> 충전사업 | －배관 또는 저장탱 크를 통하여 공급 받은 도시가스를 압 축하여 이동충전차 량에 충전하는 사업 |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 :---: | :---: |
|  | 액화도시가스 <br> 자동차 <br> 충전사업 | - 배관 또는 저장탱크 <br> 를 통하여 공급받은 <br> 액화도시가스를 자동 <br> 차에 충전하는 사업 |  |
|  |  | - 저장탱크 또는 자동 <br> 차에 고정된 탱크를 <br> 통하여 공급받은 액 <br> 화도시가스를 제2항 <br> 액화도시가스 <br> 소녹에 따궁전사업 선박 <br> 에 충전하는 사업 |  |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도시가스사업 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 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3 조 제 1 항 부터 제3항까지).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의 허가 신청 및 허가에 부수하는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부수 되는 신고•보고•승인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보고• <br> 승인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가스도매사업 <br> 허가사항 <br> 변경허가 | 산업자원부 <br> 장관 | -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br>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br>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조 <br> 제1항 |
| 일반도시가스 <br> 사업 변경허가 | 시•도지사 | -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br>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br>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조 <br> 제2항 |


| 구 분 | 신고•보고• <br> 승인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도시가스충전 <br> 사업 변경허가 | 시장•군수• 구청장 |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br>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br>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조 <br> 제3항 |
| 사업개시•휴업• 폐업 신고 <br> 영업양도 등 <br> 신고 | 하압을 개시하는 경우 밍청 사 <br>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br>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법 제8조 |  |


| 구 분 | 신고•보고• <br> 승인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가스공급계획 <br> 제출(변경보고) | 시•도지사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br> 연도 이후 5 년간의 가스공급 <br>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br> 말일까지 제출하고, 가스공 <br> 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고 | 법 제18조 <br> 제1항 및 <br> 제3항 |
|  | - 가스도매사업자가 다음 연도 <br>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br> 가스공급계획 <br> 제출(변경보고) | 삭성하여 매년 12월 방상 말일까 <br> 잔운중장관 제출하고, 가스공급계획을 <br> 변경한 경우 보고 | 제2항 및 <br> 제3항 |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허가 행정청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직접 받을 의무와 그들이 고용하고 있 는 자 중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 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 3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또한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들이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 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43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 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2) 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10 조의 2 제 1 항).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10 조의 4 제2항). 특히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0조의5 제1항). 천연가스수출입 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법 제 10 조의 2 제 3 항 및 제 7 조 제 3 항).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 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석유 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규제하고 있다.

1) 석유정제업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 함)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5조 제1항), 석유제품 중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제 2 항). 석유정제업 등록 신청•신고 및 등록•신고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석유정제업 등 록 - 신고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신고사항 변경등록/신고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 사업개시•휴 업•폐업 신고 | " | - 석유정제업을 개시•휴업 또 는 폐업한 경우 | 법 제 12 조 <br> 제2항 |
|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 " | -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의 2 와 결부된 별표 4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고 | 법 제38조 <br> 의 2 제 1 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 제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석유정제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 함)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법 제 38 조 제 1 항).
2) 석유수출입업

석유수출입업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석유수 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함)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석유수출입업 등록 신청 및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석유수출입업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사항 <br> 변경등록 | 산업통상 <br> 자원부장관 |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br>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9조 제 <br> 1항 |
| 사업개시•휴업• <br> 폐업 신고 | $"$ | －석유수출입업을 개시•휴업 <br> 또는 폐업한 경우 | 법 제12조 <br> 제2항 |
| 석유제품 <br> 판매가격 보고 | $" \prime$ |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정하여 <br>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br> 와 결부된 별표 4에서 정한 <br> 기간까지 보고 | 법 제38조 <br> 에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수 출입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석유수출입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 함）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법 제 38 조 제 1 항）．

## 3）석유판매업

석유판매업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석유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다만，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10 조 제 1 항）．석 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석유판매업 등록 신 청 및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 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판매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함） 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 취하게 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4）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32 조 제 1 항 본문）．다 만，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 신청 및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 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 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함）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5）석유대체연료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 다．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석유대체연료판매 업 등록 신청 및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 제41조 제 1 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 체연료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함）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법 제 38 조 제 1 항）．
（7）석탄산업법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 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 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석탄산업법」에서는＇석탄가공업’을 규제하고 있다．113）

석탄가공업은 다시 ‘연탄제조업＇（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 업）과＇기타 가공탄제조업＇（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 으로 구분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제5호 및 같은 영 제14조 제 1 항과 결부된 별표 1 참조）．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 고，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석탄가공업 자가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22조）．석탄가공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및 「민 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석탄가공업 등록－변경신고，석탄가공업 승계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0조）．

113）「석탄산업법」에서는 석탄가공업 외에 ‘석탄광업’（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등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석탄가공업의 경우와는 달리 등록제 등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고，품질 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그 품질을 검사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1）「서 탄산업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품질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및（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서류 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출자료 및 보 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 다（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8）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 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 다음 과 같은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액화석유가스 <br> 충전사업 |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 <br> 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함）하 <br> 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 액화석유가스 <br> 집단공급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 <br> 로 공급하는 사업 |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 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함）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
| $\begin{aligned} & \text { 가스용품 } \\ & \text { 제조사업 } \end{aligned}$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 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 |
| 외국가스용품 제조사업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지방 자치법」 제 175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 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 항）．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시•도지사＂라 한 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조 제2항）．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 고，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

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전단).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 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 군 -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한 하에 놓인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 3 제 1 항).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 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 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 항).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함)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 20 조 제 1 항).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2 제1항).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하고，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 은 조 제2항）．외국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3항），「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재등록 기간에 대 하여 규정한 바 없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 판매사업－위탁운송사업，가 스용품 제조사업，외국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등록，변 경등록 및 재등록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 판매사업－위탁운송사업，가 스용품 제조사업，외국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등록에 부수되는 신고•보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보고 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비 고 |
| :---: | :---: | :---: | :---: | :---: |
| 영업소 설치 <br> 허가 | 시장 <br> 군수• <br> 구청장 |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 여 영업소를 둔 경우 | 법 제3조 <br> 제5항 및 <br> 제6항 | －액화석유가 <br> 스 충전사업 <br> 자만 해당함 <br> －영업소 마다 <br> 허가를 받아 <br> 야 함 |
| 사업개시• <br> 휴업•폐업• <br> 재개업 신고 | 허가 <br> 행정청 |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 업하려는 경우，사업 을 일정 기간 중단하 거나 중단 후 이를 재 개하려는 경우 | 법 제7조 |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 병하려는 경우，상속 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 법 제8조 |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begin{gathered} \text { 신고 • 보고 } \\ \text { 권자 } \end{gathered}$ | 내 용 | 법적 근거 | 비 고 |
| :---: | :---: | :---: | :---: | :---: |
|  |  | 등의 절차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  |  |
| 안전관리 규정 제출 | " | - 시설 및 용기•가스용 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안전관리 규정 을 정한 경우(사업을 시작할 때 제출) | 법 제12조 제 1 항 | - 액화석유가 <br> 스 충전사업 <br> 자 - 집단공 <br> 급사업자. <br> 판매사업자, <br> 가 스 용 품 <br> 제조사업자, <br> 외국가스용 <br> 품 제조사업 <br> 자를 대상 <br> 으로 함 <br> -한국가스안 <br> 전공사의 의 <br> 견서를 첨부 <br> 하여야 함 |
| 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퇴직 신고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 는 해임하거나 안전관 리자가 퇴직한 경우 | 법 제16조 <br> 제1항 및 <br> 제2항 | -사업을 시작 하거나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 에 선임하여 야 함) <br> -안전 관리자 가 여행, 질 병 등의 사 유로 일시적 으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 리 자 를 |


| 구 분 | 신고•보고 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비 고 |
| :---: | :---: | :---: | :---: | :---: |
|  |  |  |  | 지 정 하 여 직무를 대 행하게 하여 야 함 |
| 액화석유가스 <br> 판매가격 <br> 보고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 법 제38조 <br> 의 2 제 1 항 | - 액화석유가 스 충전사 업자•집단 공 급 사 업 자, 액화석 유 가 스 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 이 120 톤 이 상인 액화 석 유 가 스 판매사업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액화석 유가스 판 매사업자 |
| 사고발생 통보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 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 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 시설이 손괴되거나 가 | 법 제39조 제1항 | -한국가스안 전 공 사 가 사업자로부 터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 행정청 등 에 보고함 |


| 구 분 | 신고•보고 <br> 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비 고 |
| :---: | :---: | :---: | :---: | :---: |
|  |  | 스누출로 인하여 인명 <br> 대피나 공급중단이 발 <br> 생한 사고, 그 밖에 <br> 가스시설이 손괴되거 <br> 나 가스가 누출된 사 <br> 고로서 산업통상자원 <br> 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br> 가 발생한 경우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검사의무는 액 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도 마찬가 지로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사업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법 제 19 조의 2 제 1 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 판매사업자 - 위탁운송사 업자•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이하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시 - 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함)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단체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 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

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 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 매시설 • 영업소시설 • 위탁운송시설 • 저장시설，가스용품 제조시설，용 기，가스용품，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38조 제1항）．
（9）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 업＇과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공업＇을 규제하고 있다．

1）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1）에너지사용시설 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2）같은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4）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 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 제 2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 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장비，자산 및 기술인력 등 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 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 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66조 제1항）．

2）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공업은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설 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이 나 세관（세관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하는 업을 말한다（법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공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세공업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 고 있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 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65조 제1항 및 제3항）．
（1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사 업＇을 규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활동（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 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1）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 석，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 검토， 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2）＇（1）＇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3）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 에 관한 견적（見積），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을 갖 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중요 사항을 변경하 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 신고，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5조 제1호 및 제2호）．
（11）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 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 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존층보 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특정물질114） 제조업＇，‘특정물질 수입업＇，＇특정물질 사용업＇을 규제하고 있다．115）

1）특정물질 제조업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1항）．특정물질 제조업자는 특정물질 제조

114）특정물질이란「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 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15）「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물질 판 매업＇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특 정물질의 종류별 용도，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특정물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제조업자•수입업자가 판매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24조의2).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허가)나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신고) | 법 제4조 <br> 제1항 |
| 제조 수량 허가 | " | -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 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연도마다 허가 | 법 제9조 제1항 본문 |
| 제조 수량 증량 허가 | " | - 허가받은 제조 수량을 초과 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 법 제 10 조 <br> 제1항 |
| 제조 수량 신고 | " |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 조하려는 경우 그 수량을 정 하여 신고 | 법 제9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2항 |
| 휴업•폐업• <br> 재개업 신고 | " | - 특정물질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그만두려는 경우,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 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 법 제8조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 특정물질 제조업을 양도하거 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 로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물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 소•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 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2）특정물질 수입업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116)}$ 특정물질 수입업자는 특정물질 수입부담금 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24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물질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에게 사 무소•공장，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 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3）특정물질 사용업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물질 사용업을 예정하고 있으나，그 제조업이나 수입업의 경우와 는 달리 허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다만， 같은 법에서는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나 특정물질 사용업자에게 특정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16조），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출입• 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바（법 제 25 조 제 1 항 및 제 2 항），（과연 누가 특 정물질 사용업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이러

116）「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물질 제 조업의 경우와 달리 특정물질 수입업의 경우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무를 부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등을 통한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아마도 특정물질 수입업자의 휴업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거나 영업양도 등을 통한 지위승 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법상의 불비라고 생각되는바，향후 법 개정시 준용규정 등을 통하여 휴업이나 지위승계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법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허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특정 물질 사용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건전한 상거 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영업＇및＇준대 규모점포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는（1）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 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2）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3）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형 마트，전문점，백화점，복합쇼핑몰，그 밖에（4）용역의 제공장소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5）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 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 분의 10 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및 별표）．

준대규모점포는（1）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직 영하는 점포，（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3）＇（1）＇및＇（2）＇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 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 는 점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통계법」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 （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를 말한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 고，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8 조 제 1 항）．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 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1）상거래질서의 확립，（2）소비자의 안전유지 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3）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 12 조 제 1 항）．다만，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는（1）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2）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 우에는 i）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 법」에 따른 법인，ii）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중 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iii）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 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i）～iii）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 분의 1 이상이 동의 하여 지정하는 자（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 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함）가 위의 업무를 수행하며（법 제 12 조

제2항），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에게（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
（1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닝사업’을 법제화 하고 있다．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고，이러닝산업이란（1）이러닝콘텐츠 및 이러 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 는 유통하는 업，（2）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3）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 2 조 제1호，제 3 호 및 제4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는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다만 강제 신고 가 아니라 임의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법 제 20 조의 4 제 1 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 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이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닝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 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14)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전기공사업법」에서 는 '전기공사업'(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 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4 조 제1항 및 제2항).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공사업자는 등록사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전기공사업자자의 지위를 승 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전기 공사업 등록,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영업 승계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35 조 제 2 호, 제 3 호 및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 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 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 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데 (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에 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5)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에서 는 ‘전기사업’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 대행업’을 규제하고 있다.

1) 전기사업

전기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발전사업 |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 자에게 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송전사업 |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배전사업 | -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사업 |
| 전기판매사업 |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사업 |
| 구역전기사업 | - 3만5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 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 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전기사업 허가에 부수하는 신고 - 인가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인가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br> 변경허가 | 산업통상자원 <br> 부장관 | -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br>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br> 변경하는 경우 | 법 제7조 <br> 제1항 |
| 사업개시 신고 | " | -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법 제9조 <br> 제4항 |
| 전기설비 <br> 이용요금 <br> 이용조건 <br> (변경)인가 | "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 |  |  |
| 가 전기설비의 이용과 그 밖 |  |  |  |
| 의 요금조건에 관한 사항을 |  |  |  |
|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웅약관 |  |  |  |
| (변경)인가 | " 법 제15조 | 제1항 |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신고•인가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  | 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br>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br> 공사를 하려는 경우(신고) |  |
| 전기안전관리자 <br> 선임/해임/변경 <br> 신고 | " |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br>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73조의2 <br> 제1항 |
| 중대한 사고 <br> 통보 | " | -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 <br>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br>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96조의3 <br> 제1항 |

「전기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전기사업자에 게 다음의 표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금지행위의 내용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 기준 |
| :---: | :---: |
| -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 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 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 ㅇ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 성•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 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 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 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 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행위 | -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br> -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 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br> -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br> -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


| 금지행위의 내용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 기준 |
| :---: | :---: |
|  | －이상의 행위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 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 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 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 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 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 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 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 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 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 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상의 행위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행위 |
|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 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 정하는 행위 |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 （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 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 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br> －이상의 행위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 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br>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 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하는 행위 |


| 금지행위의 내용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 기준 |
| :---: | :---: |
|  | -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 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상의 행위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행위 |
| -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 국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 는 행위 | -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법 제 35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전력계통 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br> ㅇㅂㅂㅂ 제 45 조제 3 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 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 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 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는 행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이상의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 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 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7)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의 조치를 명 할 수 있다(법 제 23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 분의 5 의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 는 경우,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여기서 말하는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경 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전형적 과징 금이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이상의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 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2)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 대행업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표와 같은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 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의5 제1항).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법 제73조의5 제2항).

| 구 분 | 사업자 | 등록 - 신고권자 |
| :---: | :---: | :---: |
| 등 록 | - 법 제 7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전기안 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구 분 | 사업자 | 등록•신고권자 |
| :---: | :---: | :---: |
| 등 록 | - 법 제7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전기 <br> 언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 <br> 믈 대행하려는 자 | 시•도지사 |
| 신 고 | - 법 제7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기 <br>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br> 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16)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 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 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 설계업’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을 규제하고 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은 종합설계업, 전문 설계업(1종/2종)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과 결부된 별표 4),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은 종합감리업, 전문감리업으로 구분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 1항과 결부된 별표 5).

전력시설물 설계업이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전력시설물 설계업이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양도 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업자나 전력시설 물 공사감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 16 조의 2 제 1 항). 전력시설물 설계업이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전력시설물 설계업이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 변경등록, 영업 양도 등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26조 제 5호 및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 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 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 게 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 (17)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산업발전법」에서는 ‘전시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전시사업은 전시산업(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 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 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 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 동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전시시설사업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 |
| 전시주최사업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 • 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 |
| 전시장치사업 |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 • 설치하거나 절계 • 디시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 |
| 전시용역사업 |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3항）．
（18）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 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녹색성 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능형전력망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사업은 지능형전력망（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 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 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 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지능형전력망사업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나뉜다．${ }^{117)}$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은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 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지능형전력망 서비 스 제공사업은 다시（1）수요반응관리서비스 제공사업，（2）전기차 충 전 서비스 제공사업，（3）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나뉜다．수요반

117）「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능형전력망사업을 크게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이 중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만을 등록제도로 규제하고 있고，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 품 제조사업은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응관리서비스 제공사업은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수요를 관리 하는 사업을 말하고，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은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 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그 밖의 서비스 제 공사업은 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판 매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 다（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 항과 결부된 별표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려 는 자는 전문인력，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 12 조 제 1 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지 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 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1）「전 기사업법」제 48 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 며，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너 지사업법」에서는＇집단에너지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 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1）지역냉난방사업과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냉난방사업은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 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 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하 고,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 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 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 1 항).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부수하는 인•허가•신고사항은 다음의 표 와 같다.

| 구 분 | 인•허가• <br>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br> 변경허가 | 산업통상 <br> 자원부장관 | - 허가반은 사항 중 산업통상 <br>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br> 변경하는 경우 | 법 제9조 <br> 제1항 |
| 휴업•폐업 <br> 허가 | " | - 집단에너지사업의 전부 또는 <br>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 <br> 는 경우 | 법 제14조 <br> 제1항 |
| 재개업 신고 | $\prime \prime$ | - 집단에너지사업을 휴업한 자가 <br>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 법 제14조 <br> 제3항 |
| 법인 해산 | 인가 | -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법인 의 <br>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br> 총사원의 동의 인가 | 법 제14조 <br> - 집단에너지사업을 양도하거 <br> 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 <br> 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지위 <br> 릉 승계하려는 경우, 「민사집 <br> 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 <br> 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 <br> 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 법 제12조 |  |  |  |


| 구 분 | 인•허가 • <br>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공급규정 <br> （변경）신고 | $\prime \prime$ |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 <br> 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거 <br> 나 변경한 경우 | 법 제17조 <br> 제 1 항 |
| 안전관리규정 <br> （변경）신고 | $" \prime$ | －사업 개시 전에 안전관리규 <br> 정을 정하여 신고，변경한 경 <br> 우 변경 신고 | 법 제27조 <br>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 의 보고•자료제출，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20）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는＇해외자원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5 조 제 1 항）．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함）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인 이상 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를 하려면 대표자를 정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

류•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 게 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제 3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 1. 개 관

보건복지부 소관 총 78 개 법률 중 7 개 법률에서 소독업 등 19 개 영 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영업은 허가제 2건, 등록제 3건, 신고제 13 건으로 운영 중이고, 인허가권은 중앙행정기관장이 1 개, 지방자치단체 장이 17 개를 가지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순 } \\ & \text { 번 } \end{aligned}$ | 법률명 | 영업명 (근거 조문) | 인 - 허가 - 등록 • <br> 신고 유형 | 인 - 허가 - <br> 등록•신고 <br> 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1 | 감염병의 <br> 예방 및 <br> 관리에 <br> 관한 법률 | 소독업(법 제52조) | 신 고 | 특별자치도지 <br> 사 또는 시 <br> 장 - 군수 - <br> 구청장 |  |
| 2 | 공중위생 <br> 관리법 |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이용업/미 용업/세탁업/위생관 리용역업, 법 제3조) | 신 고 | $\begin{aligned} & \text { 시 장 • 군 } \\ & \text { 수•구청장 } \end{aligned}$ |  |
| 3 | 모자보건법 | 산후조리업(법 제15조) | 신 고 |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 장 - 군 수-구청장 |  |
|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이송업 (법 제51조) | 허 가 | 시 - 도지사 |  |
| 5 | 의료기사 <br> 등에 관한 <br> 법률 | 치과기공물 제작업 <br> (법 제11조의 2 ) | 등 록 | 특별자치도 <br> 지사 또는 <br> 시 장 - 군 <br> 수•구청장 |  |

제 3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left.$| 순 <br> 번 | 법률명 | 영업명 <br> （근거 조문） | 인 • 허가 <br> •등록 <br> 신고 유형 | 인 • 허가 • <br> 등록 • 신고 <br> 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신고 | 13건 | 지방 <br> 자치 <br> 단체장 | | 17개 |
| :--- | \right\rvert\,

2．개별법상 영업규제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소독업＇을 규제하고 있다．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제1항）．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 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 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53조）．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1항 및 제 2 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57조）．
（2）공중위생관리법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공중위생영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영업（1）농어촌에 소재하는 「농어촌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2）「산림문화•휴 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청소년활동진흥법」제 10 조제 1 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설，（4）「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 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제외함） |
|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맥반 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 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1）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3）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은 제외함） |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 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
|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 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 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3 조 제1항）．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 일 이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공중 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측량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3 조의 2 제 1 항，제 2 항 및 제 4 항）．공 중위생영업자 중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외에 각 영업자별로 다 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업 종 | 준수의무의 내용 |  |
| :---: | :---: | :---: |
|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지킬 것 |
|  | 맥반석 • 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 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 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 킬 것 |
|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면도기는 1 회용 면도날 |  |


| 업 종 | 준수의무의 내용 |
| :---: | :--- |
|  | 만을 손님 1 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br> -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br> -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
| 미용업 | -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 <br> 장 또는 피부밍ㅇㅇㄹ 할 것 <br>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br>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 회용 면도날 <br> 만을 손님 1 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br> -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
| 세탁업 | -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br>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 <br> 리할 것 |
| 위생관리용역업 | -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br>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 |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학력•자격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6조 제1 항).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9조의2).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 아야 하고(법 제17조 제2항 본문), 신고 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 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 자보건법」에서는＇산후조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 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 다．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15조의2）．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15 조의 10 ）．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서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임산부 및 영유아 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 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 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 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준수의무의 내용

-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원 칙적으로 미리 받아야 하고, 신고 후 2 년마다 1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법 제 15 조의 6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 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 15 조의 7 제 1 항).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서는 '응급환자이송업'을 규제하고 있다.

응급환자이송업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 아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51 조 제 1 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

경허가를 받아야 하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53조）．응급환자이송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 속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및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54조）．

## （5）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기공물 제작업’ 및 ‘안경 판매업＇을 규제하고 있다．

1）치과기공물 제작업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치과기공소 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1 개소의 치과기공 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법 제11조의2）．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치과기공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0조）．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기공소 개 설자에 대한 보수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종사자인 의료기사등에게 보수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15조 제1항).
2) 안경 판매업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 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경업소는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안경사는 1 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법 제 12 조 제 1 항 부터 제 4 항까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 매하여야 하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 법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안경업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13조).

안경업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 다(법 제20조). 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경업소 개설자 에 대한 보수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종사자인 의 료기사등에게 보수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15조 제1항).
(6)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

적으로 하는「의료법」에서는 '의료업', '의료유사업', '안마업', '외국인 환자유치업',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1) 의료업

의료업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의료업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 및 제33조 제 1 항)

의료기관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된다.

| 기관명 | 내 용 |  |
| :---: | :---: | :---: |
| 의원급 의료기관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 원 |
|  |  | 치과의 원 |
|  |  | 한의 원 |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 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
| 병원급 의료기관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 | 병 원 |
|  |  | 치과병원 |
|  |  | 한방병원 |
|  |  | 요양병원 |
|  |  | 종합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3항).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 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구 「의료법」（2007．7．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 치 결정118）을 받아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 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에 따르면（1）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 을 개설하는 경우，（3）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 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에 부수하는 신고•등록사항은 다음의 표 와 같다．

118）＂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이렇게 회복된 자유에 대하여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환자가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순차 적，교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금지되지 않는 현실에서 복수면허 의료 인은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 양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뛰 어나고，그가 행하는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고 평가될 수 있다．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위험영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하 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복수면허 의료인이든，단수면허 의료인이든＇하나의＇의료기관만을 개설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같은＇대우를 받는다．그런데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과 대 학과 한의과 대학을 각각 졸업하고，의사와 한의사 자격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하였 다．따라서 단수면허 의료인에 비하여 양방 및 한방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지식 및 능력이 뛰어나거나，그가 행하는 양방 및 한방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취 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복수면허 의료 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 건 법률조항은＇다른 것을 같게＇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헌재결 2007．12．27．2004헌마1021）．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신고 - 등록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허가(병원급 의료기관) | 시 - 도지사 | -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 법 제33조 <br> 제5항 |
| 개설장소 이전허가(병원급 의료기관) | " | -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 |
| 신고사항 <br> 변경신고(의원급 <br> 의료기관/조산원) | 시장 - 군수 <br> 구청장 | -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 | " |
| 개설장소 <br> 이전신고(의원급 <br> 의료기관/조산원) | " | -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 법 제37조 <br> 제 1 항 |
| 특수의료장비 <br> 설치 등록 | " | - 특수의료장비(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 법 제38조 <br> 제1항 |
| 휴업•폐업 신고 | " | -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 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 법 제40조 <br> 제 1항 |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입원실은 남 - 여별로 구별할 것


## 준수의무의 내용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 니할 것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변•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 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2 조제 5 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2）의료유사업

「의료법」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 사（이하＂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법 제81조 제1항）．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4）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고자자 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
（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국토의 효율적 이 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 한 법률」에서는 ‘장례지도사 교육업’을 규제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의 3 제 1 항에서는 장례지도사를 교육하 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 4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 1．개 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 50 개 법률 중 10 개 법률에서 게임제작업 등 59 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이들 영업은 허가제 4건，등록제 31건， 신고제 13 건，지정제 11 건으로 운영 중이고，인허가권 119 ）은 중앙행정 기관장이 2 개，지방자치단체장이 57 개를 가지고 있다．

[^5]


| $\begin{aligned} & \text { 순 } \\ & \text { 번 } \end{aligned}$ | 법률명 | $\begin{gathered} \text { 영업명 } \\ \text { (근거 조문)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 - 허가 - <br> 등록• <br> 신고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유원시설업 <br> (법 제5조 <br> 제2항) | 대통령령 으로 <br> 정하는 유원시설업 $\frac{\text { : 허가 }}{\text { 그 밖의 }}$ <br> 유원시설 <br> 업: 신고 | 특별자치도 <br> 지사 또는 <br> 시장 - 군수 - <br> 구청장 | 유원시설업은 다시 종합유 원시설업/ 일 반유원시설업 / 기타 유원시 설업으로 구분 됨(영 제2조 제 1 항 제 5 호) |
|  |  | 관광편의 <br> 시설업 <br> (법 제6조) | 지 정 | $\begin{aligned} & \text { 시 - 도지사 } \\ & \text { 또는 시장 - } \\ & \text { 군수 } \cdot \text { 구청장 } \end{aligned}$ | 관광편의시설 업은 다시 관 광유흥음식점 업/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 인전용 유흥 음식점업/ 관 광식당업/ 시내 순 환광 광업/ 관 광사 진 업 / 여객자동차터 미 널시 설 업 / 관 광펜 션 업 / 관 광 궤 도 업 / 한옥체험 업 / 외국인관광 도 시민박업으로 구분됨(영 제2 조 제 1 항 제 6 호) |
| 3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뉴스통신사업(법 제8조) | 등 록 | 문화체육 <br> 관광부장관 |  |


| 순 | 법률명 | 영업명(근거 조문) |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 - 허가 - <br> 등록• <br> 신고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br> 법률 | 신문사업(법 제9조) |  | 등 록 | 시 • 도지사 |  |
|  |  | 인터넷신문사업 <br> (법 제9조) |  | " | " |  |
|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br> (법 제9조) |  | " | " |  |
| 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업 (영화제작업/ 수입업/배급업/상영업, 법 제26조) |  | 신 고 | 시장 - 군수 - <br> 구청장 |  |
|  |  | 영화상영관업(법 제36조) |  | 등 록 | " |  |
|  |  | 비디오물 영업 | 비 디오물 제작업(법 제57조) | 신 고 | " |  |
|  |  |  | 비 디오 물 <br> 배급업(법 <br> 제57조) | " | " |  |
|  |  |  | 비 디오물 시 청 제 공 업(법 제 58조) | 등 록 | " |  |
| 6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br> 법률 | 음반 - 음악영상 제작 <br> 물업(법 제16조제1항) |  | 신 고 | 시 - 도지사 |  |
|  |  | 음반 - 음 반 영 상물 배 급업(법 제 16 조제 1 항)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온라인음악서비스제 } \\ & \text { 공업(법 제16조제2항)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시장 • 군수 • } \\ & \text { 구청장 } \end{aligned}$ |  |
|  |  | 노래연습장업 <br> (법 제18조) |  | 등 록 | " |  |

제4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 순 번 | 법률명 | 영업명(근거 조문) |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 $\begin{aligned} & \text { 인 - ㅎ } \\ & \text { 등독 } \\ & \text { 신고 } \end{aligned}$ | 가 - 련자 |  | 고 |
| :---: | :---: | :---: | :---: | :---: | :---: | :---: | :---: | :---: | :---: |
| 7 | 인쇄문화산 <br> 업 진흥법 | 인쇄사업(법 제12조) |  | 신 고 |  | 특별자 <br> 지사 <br> 시장 - <br> 구청장 | 치 도 <br> 또는 구산 |  |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 <br> 간행물 <br> 사업 | 잡지사업 <br> (법 제15조) | 등 록 |  | 시 • 도 | 지사 |  |  |
| 8 |  |  | 잡지외 정 <br> 기 간 행 물 <br> 사 업 ( 법 제 16조) | 신 고 |  | 특별자 <br> 지사 <br> 시장 - <br> 구청장 | 치 도 <br> 또는 구산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법 제10조) |  | 등록체육 <br> 시설업: <br> 등록 |  | 시 • 도 | 지사 |  |  |
| 9 |  |  |  | 신고체육 시설업: 신고 |  | 특별자 <br> 지사 <br> 시 장 <br> 수•구 | 치 도 또는 - 군 <br> 청장 |  |  |
| 10 | 출판문화산 <br> 업 진흥법 | 출판사업 | (법 제9조) |  |  | 특별 <br> 지사 <br> 시 장 <br> 수 - | 치 도 또는 <br> - 군 청장 |  |  |
| $\begin{aligned} & \text { 합 } \\ & \text { 계 } \end{aligned}$ | 10개 법률 | 59개 영업 |  | 허 가 | 4건 | 중앙 <br> 행정 <br> 기관장 | 2개 |  |  |
|  |  |  |  | 등 록 | 31건 |  |  |  |  |
|  |  |  |  | 신 고 | 13건 | $\begin{aligned} & \text { 지방 } \\ & \text { 자치 } \\ & \text { 단체장 } \end{aligned}$ | 57개 |  |  |
|  |  |  |  | 지 정 | 11건 |  |  |  |  |

## 2．개별법상 영업규제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 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규제하고 있다．

1）게임 제작업
게임제작업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 제 2 조 제 4 호）．게임제작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 2 항）．게임제작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 일 이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30 조 제 1 항）． 게임제작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 1 항 제 1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28 조에서는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 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 려 두지 아니할 것

## 준수의무의 내용

-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 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 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 할 것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 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 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 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을 준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 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게임제작업자, 게임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게 이 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2) 게임 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제작업자, 게임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 게임배급업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 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 는 영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25 조 제 1 항 본문 및 제2항). 게임배급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30 조 제 1 항).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자는 시• 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3) 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 업을 말하는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게임제공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일반게임제공업 | -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br>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br> 제공하는 영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 <br> 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 인터넷컴퓨터 <br> 게임시설제공업 | -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 <br>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 영업명

## 영업 내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26 조 제 1 항 본문 및 제 4 항).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 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이상의 게임제공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2) 관광진흥 법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서는 ‘관 광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 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관광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 영업 내용 |
| :---: | :---: | :---: |
| 여행업 |  |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 공하는 업 |
| 관광 <br> 숙박업 | 호텔업 |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 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 용하게 하는 업 |
|  | 휴양 <br> 콘도 <br> 미니엄업 |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 관광객 <br> 이용시설업 |  |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문화 -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또는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 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국제회의업 |  |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 회•전시회 등을 포함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 치 -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 준비 • 진행 등의 업무 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 카지노업 |  |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 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 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유원시설업 |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 <br> 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 <br> 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 <br> 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 <br> 함함） |
|  | －그 밖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br> 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 는 자는 자본금•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 1 항 및 제 3 항）．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특히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 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부지，대지 면적，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 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 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 15 조 제 1 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 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여기서는＂～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규정만을 놓고 보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임의사항인 사업계획 승 인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해당 영업을 등록하기 위해 서는 그 승인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그렇다고 한다면＂～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5 조 제 1 항）．허가받은 사항 중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 야 하고，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26조 제2항）．

「관광진흥법」 제 28 조에서는 카지노사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행 위를 금지하거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금지행위 및 준수의무의 내용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 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함）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 을 하는 행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 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킬 것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법 제5조 제2항）．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 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관광진흥법」 제6조에서는＂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실제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실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여기서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관련 하위법령에 비추어보면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청에게 재 량권 행사의 여지를 거의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법적 성격은 등 록이나 신고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관광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 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관광사업자 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행정 청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상의 관광사업의 등록，변경등록，지위승계 신고，사업계획 승인시 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79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법 제9조）．

관할 행정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 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의 사무 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
（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책임을 높이는 한편，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뉴스통신사업＇을 규제하고 있다．120）

뉴스통신사업은 뉴스통신（「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 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업으로 하 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 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 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1） 제호（題號），（2）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 의 성명•생년월일 • 주소，（3）편집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4）무 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5）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 록하여야 하고，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 5 조 •

120）「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 료제출，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5 항）．${ }^{121)}$

## （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 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 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는＇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및＇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규 제하고 있다．${ }^{122)}$

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 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과 같이 세분된다（법 제2조 제1호）．

| 종 류 | 내 용 |
| :---: | :---: |
| 일반일간신문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 <br> 등을 전퐈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121）「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 집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 5 항에서는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 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 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결격사유와 외국인 등 으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매우 이질적인바，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즉 등록신청 시 이미 재산을 출자받은 경우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서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와 함께 규정하고，등록신청 후 재산을 출자받은 경우는 제9조의6 정도로 조문을 신설하여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2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 자료제출，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종 류 | 내 용 |
| :---: | :---: |
| 특수일간신문 | －산업 • 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 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 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 회 또는 월 2 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함） |
| 특수주간신문 | －산업 • 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 파하기 위하여 매주 1 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 회 또는 월 2 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함） |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 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 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 한다（법 제2조 제2호）．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뉴스통신，「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 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는데（다만，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함，법 제2조 제 5호），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포털을 법적으 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9．7．3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9785호）전부개정 시 입법되었다．

원칙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 등을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 1 항）．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에 부수하는 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등록사항 } \\ & \text { 변경등록 } \end{aligned}$ | 시－도지사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9조 <br> 제 1 항 |
| 폐업 신고 | ＂ | －영업을 폐쇄한 경우 | 법 제11조 <br> 제1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신문사업 또는 인터넷신문사 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민 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 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 | 법 제 14 조 |
| 외국자금 출자 서류 제출 | ＂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 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 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 법 제 15 조 |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휴업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아마도 그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서는 특히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그 기 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것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을 것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할 것

## （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화업＇， ‘영화상영관업＇，‘비디오물영업＇을 규제하고 있다．123）

1）영화업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 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법 제2조 제1호）으로서 영화업은 다 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같은 조 제9호 및 제8호）．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영화제작업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것 |
| 영화수입업 |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것 |

12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 의 보고，자료제출，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영화배급업 |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것 |
| 영화상영업 | - 영화상영(영화를 공중에 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을 업으 <br> 로 하는 것 |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영화업 신고, 변경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90조 제3항).
2) 영화상영관업

영화상영관(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설 치•경영하려는 자는 영화상영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영화상영관 경영 등록에 부수하는 등록•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 다. 영화상영관 경영 등록, 변경등록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 90조 제3항).

| 구 분 | 등록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등록사항 } \\ & \text { 변경등록 } \end{aligned}$ | 시장 - 군수 $\cdot$ 구청장 |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36조 <br> 제1항 |
| 재해대처계획 신고 | " | -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 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 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 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 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한 경우 | 법 제37조 <br> 제1항 |
| 영화상영 등 신고 | " |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 로 변경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 법 41조 제1항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구 분 | 등록－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  |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 |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 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화 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 계하려는 경우 | 법 제46조 |

3）비디오물영업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1）「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과（2）컴퓨 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12호）．비디오 물영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같은 조 제 14 호부터 제 17 호까지）．

| 영업명 |  | 영업 내용 |
| :---: | :---: | :---: |
| 비디오물제작업 |  |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 |
| 비디오물배급업 |  |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 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
| 비디오물 <br> 시청 | 비디오물 <br>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 |


| 영업명 |  | 영업 내용 |
| :---: | :---: | :---: |
| 제공업 |  | 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  | $\begin{aligned} & \text { 비디오물 } \\ & \text { 소극장업 } \end{aligned}$ |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 에 제공하는 영업 |
|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 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  | 그 밖의 <br> 비디오물시청 <br> 제공업 |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 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 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57조 제1항),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제61조 제 1 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57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 61조 제1항).

이상의 비디오물영업 등록, 변경등록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90조 제3항).
비디오물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 우, 상속으로 비디오물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3조）．

비디오물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는 특히 비디오 물시청제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다음 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 을 출입시킬 것（다만，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만 해 당함）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만 해당함）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 （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음반•음악영 상제작물업’，‘음반•음반영상물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을 규제하고 있다．124）

12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 료제출，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1）음반 • 음악영상제작물업，음반 • 음반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음반•음악영상제작물업은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 일（이하＂음반등＂이라 함）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 하고（법 제2조 제8호），음반•음반영상물배급업은 음반 등을 수입（원 판수입을 포함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 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 하며（같은 조 제9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 공하는 영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려 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 16 조 제 1 항 본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상과 같은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이상의 신고，변경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1조）．

이상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 우，상속으로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2）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 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13호）．노래연습장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 18 조 제 1 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 등록，변경등록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1조）．
노래연습장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속으로 노래연습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민사집 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

노래연습장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24 조 제 1 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특히 노래연습장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노래연습장영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다만，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 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7）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인쇄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 쇄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인쇄문화산업 진흥 법」에서는 인쇄사업에 부수하는 그 밖의 신고사항이나 관리•감독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다만，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 에서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8）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서는＇정기간행물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125)}$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 행물로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 문을 제외한 다음의 표와 같은 것을 말한다．

| 정기간행물명 | 내 용 |
| :---: | :---: |
| 잡 지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 산업 • 과학 • 종교 • 교 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 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125）「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 격의 보고，자료제출，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정기간행물명 | 내 용 |
| :---: | :---: |
| 정보간행물 |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br> 행되는 강행물 |
| 전자간행물 |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br> 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 <br> 행한 간행물 |
| 기타간행물 |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달안행물 목적으로 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업을 '정기간행물사업'으로 통칭하고, 이를 다시 ‘잡지사업’와 ‘잡지외간행물사업’(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잡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15 조제 1 항).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 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정기간행물사업 등록 - 신고에 부수하는 등록•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구 분 | 등록•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사항 <br> 변경등록(잡지 <br> 사업만 해당함) | 시•도지사 | -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 15 조 <br> 제1항 |
| 신고사항 <br> 변경신고(잡지 <br> 외간행물사업 <br> 만 해당함) | 특별자치도지 <br> 수 $\cdot$ 시중청장 |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6조 |
| 제1항 |  |  |  |


| 구 분 | 등록－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폐업신고 | 관할 행정청 | －영업을 폐쇄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 |
| 외국자금 출자 서류 제출 | ＂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 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 법 제21조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정기간행물사업을 양도하거 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 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 22 조 |

（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 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을 규 제하고 있다．126）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 2 호 및 제 1 호）．체육시설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법 제 10 조）．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등록 체육시설업 |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 |,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 |
| :--- |
| 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육디소상업업，골프 연습장업，체력 |
| 단련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

12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2조 제1항）．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하고（법 제 16 조 제 1 항 전단），영업을 시작하 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 1 항 전단）．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 을 제외함）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등록 체육시설업 등록，변경등록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법 제20조）．신고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시에는 수수료 를 내야 한다（법 제37조 제3호）．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 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체육시설업 승 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신고 등의 절차는 두고 있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업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는 제외함）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 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27)}$

127）이 외에도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 배치의무，안전•위생기준 준수의무，등을 부담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 조 및 제 24 조 참조）．

## 준수의무의 내용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 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 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공연이나 무대연 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함）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다만，자동판매 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함，무도학원업자 및 무도장업자만 해당함）

## （10）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출판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출판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 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 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법 제2조 제1호），출판사는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출판문화산 업진흥법」에서는 출판사 신고 및 변경신고 외에 출판사업에 부수하는 그 밖의 신고사항이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제 5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 1. 개 관

환경부 소관 총 47 개 법률 중 15 개 법률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업 등 47개 영업을 창설 규제하고 있다. 이들 영업은 허가제 20건, 등록제 22건, 신고제 4건으로 운영 중이고, 인허가권128)은 중앙행정기관장이 20 개, 지방자치단체장이 33 개를 가지고 있다.

| 순 번 | 법률명 | 영업명 (근거 조문) | $\begin{gathered} \hline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권자 } \end{gathered}$ | 비 고 |
| :---: | :---: | :---: | :---: | :---: | :---: |
| 1 | 가축분뇨의 <br> 관리 및 <br> 이용에 관한 <br> 법률 | 가축분뇨관련영업(가 축분뇨수집 • 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가축 분뇨시설관리업, 법 제28조) | 허 가 | $\begin{aligned} & \text { 시 장 • 군 } \\ & \text { 수•구청장 } \end{aligned}$ |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법 제34조) | 등 록 | " |  |
| 2 | 건설 <br> 폐기물의 <br> 재활용 <br> 촉진에 <br>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업(수 집 - 운반업/중간처리업, 법 제21조) | 허 가 | 시 - 도지사 |  |
| 3 | 대기환경 보전법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법 제68조) | 등 록 | $\begin{aligned} & \text { 시 장 • 군 } \\ & \text { 수•구청장 } \end{aligned}$ |  |
| 4 | 먹는물 <br> 관리법 | 먹는샘물등(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법 제21조) | 허 가 | 시 - 도지사 |  |
|  |  | 수처리제 제조업 (법 제21조) | 등 록 | " |  |

128) 타법에서 인허가권자를 정하는 경우 개수 산정에서 제외함.

| 순 번 | 법률명 | $\begin{gathered} \text { 영업명 } \\ \text { (근거 조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권자 } \end{gathered}$ | 비 고 |
| :---: | :---: | :---: | :---: | :---: | :---: |
|  |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br> (법 제21조) | " | " |  |
|  |  | 유통전문판매업 (법 제21조) | 신 고 | " |  |
|  |  | 정수기 제조업 <br> (법 제21조) | " | " |  |
|  |  | 정수기 수입판매업 (법 제21조) | " | " |  |
| 5 | 물의 재이용 <br>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계•시공업 (법 제18조) | 등 록 | $\begin{aligned} & \text { 시 장 • 군 } \\ & \text { 수 • 구청장 } \end{aligned}$ |  |
| 6 | 소음•진동 <br> 관리법 | 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 검사대행업(법 제41조) | 등 록 | 특 별자치 도 <br> 지사 또는 <br> 시 장 - 군 <br> 수•구청장 |  |
| 7 | 수도법 | 저수조청소업(법 제43조) | 신 고 | 특별자치시 <br> 장 - 특 별자 <br> 치도지사 - <br> 시 장 - 군 <br> 수 - 구청장 |  |
| 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폐수처리업(법 제62조) | 등 록 | 환경부장관 |  |
|  |  | 유독물영업(제조업/판 매업/보관 • 저장업/운반 업/사용업, 법 제20조) | 등 록 | 시 - 도지사 |  |
| 9 | 물질 관리법 |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 용업, 법 제34조) | 허 가 | 환경부장관 |  |


| 순 번 | 법률명 | $\begin{gathered} \text { 영업명 } \\ \text { (근거 조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유형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권자 } \end{gathered}$ | 비 고 |
| :---: | :---: | :---: | :---: | :---: | :---: |
| 10 | $\begin{gathered} \hline \text { 전기•전자 } \\ \text { 제품 및 } \\ \text { 자동차의 } \\ \text { 자원순환에 } \\ \text { 관한 법률 } \end{gathered}$ | 폐자동차재활용업 (파 쇄재 활용업/파쇄잔재 물 재 활용업/폐가스류 처리업, 법 제32조) | 등 록 | 환경부장관 |  |
| 11 | 토양환경 <br> 보전법 | 토양정화업(법 제23조의7) | 등 록 | 시 - 도지사 |  |
| 12 | 폐기물 <br> 관리법 |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 - 운 반업/중간처 분업/최종처분업/종합 처분업/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종합재 활용업, 법 제25조) | 허 가 | 지정폐기물 : <br> 환경부장관 <br> 그 밖의 폐 <br> 기물 : 시• <br> 도지사 |  |
| 13 |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법 제19조의2) | 등 록 | 환경부장관 |  |
|  |  | 기술진단 대행업 (법 제20조의2) | 등 록 | 환경부장관 |  |
|  |  | 분뇨•수집 운반업 (법 제45조) | 허 가 | $\begin{aligned} & \text { 특별자치도지 } \\ & \text { 사 • 시장 } \cdot \text { 군 } \\ & \text { 수 } \cdot \text { 구청장 } \end{aligned}$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 시공업(법 제51조) | 등 록 |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법 제52조) | " |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 | " | " |  |
| 14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 대행업(법 제16조) | 등 록 | 시 - 도지사 |  |


| 순 <br> 번 | 법률명 | 영업명 <br> (근거 조문) | 인 • 허가 • <br> 등록 • 신고 <br> 유형 | 인 • 허가 • <br> 등록 • 신고 <br> 권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2. 개별법상 영업규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수집 - 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규제하고 있다.

1)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 (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가축분뇨관련영업은 다시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2) 가축분뇨처 리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나뉜다. 가축분뇨수집 - 운반업은 가

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고，가축분뇨처리업은 처리 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을 말 하며，가축분뇨시설관리업은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 한다（법 제28조 제2항 각 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에 부수하는 허가•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5조 제4호）．

| 구 분 | 허가－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 시장－군수－ <br> 구청장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28조 제 1 항 |
| 휴업•폐업• <br> 재개업 신고 ${ }^{129)}$ | ＂ |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 업하려는 경우 | 법 제 40 조 |
| 영업양도 등 신고 | ＂ |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도하거 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 로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 29 조 <br>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와 결부된［별표 9］에서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함）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0 조에서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이라는 조명（條名）하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강학상의＇허가＇라는 용어의 정의에 비추어 보거나 일 반적인 영업승계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관련 부령에서도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준수의무의 내용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 법 제 28 조제 3 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의 수집 - 운반을 의뢰받으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할 것
-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 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할 것
-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 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 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 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만 해당함)

이 외에도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가 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3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 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 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 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 부터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2항).

가축분뇨업무담당자(보다 정확하게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가 받아야 할 교육은 (1) 신규교육과 (2) 재 교육으로 구분된다. 신규교육은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하고(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재교육은 법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 년 이 내에 1회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각 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 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 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2)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본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에 부수하는 등록•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45조 제5호).

| 구 분 | 허가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고 | 시장 - 군수 - <br> 구청장 | -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4조 <br> 제2항 |
| 휴업•폐업• <br> 재개업 신고 | " | -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하려는 경우 | 법 제 40 조 |
| 영업양도 등 신고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 공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 는 경우, 상속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34조 제5항 및 제29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결부된［별표 10］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 계－시공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할 것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지 아니 할 것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하도급하려면 「건설산 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것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 개월 이상 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것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 관할 것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할 것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 역시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38조 제1항 제3호）．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시 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 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 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ㅁㄴㅣ 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페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을 말하고, 수집 • 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 하는 영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이 적절 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 2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부수하는 허가•신고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60조).

| 구 분 | 허가•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 <br> 허가/신고 | 시•도지사 | -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br> (허가) <br> - 경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br> (신고) | 법 제22조 <br> 제항 및 <br> 제 2 항 |
| 휴업 • 폐업 • <br> 재개업 신고 | " | -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 <br> 개업하려는 경우 | 법 제33조 <br> 제 1 항 |


| 구 분 | 허가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 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 법 제31조 <br> 제1항 |
| 시설 사용 신고 | " | -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법 제 28 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 또 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 설폐기물 수집 - 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 수집 - 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 할 것
-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 - 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 수집 - 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 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준수의무의 내용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을 지킬 것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 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5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이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3 년마다 1 회 이상의 교 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3）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 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 제 53 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 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 1 항 전단）．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기술인력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1）신규교육과（2）정기교육으로 나뉜다．신규 교육은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 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 술인력만 해당함）받아야 하고，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 준으로 3 년마다 1 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받아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2 제 1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4 조 의3과 결부된［별표 30의3］에서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금지행위－준수의무의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 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정비분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 외의 정비기술자에게 전문정비를 하게 하 지 아니할 것
－정비분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와 「자 동차관리법」 제 43 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를 받아 정비를 시행할 것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 및 기준（원격측정기에 의한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을 준수할 것
－봉인이 되어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촉매장치•가버너 등）을 정 비한 때에는 재봉인을 할 것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1항 제9호）．
（4）먹는물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에서는＇먹는물관 련영업＇（먹는샘물등 제조업／수처리제 제조업／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정수기 제조업 • 수입판매업）＇및＇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을 규제 하고 있다．

먹는샘물등（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수처리제（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 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제3항）．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 21 조 제4항）．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 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 5 항）．

먹는물관련영업 허가•등록•신고에 부수하는 허가•등록•신고사 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먹는물관련영업 허가•등록•신고，변경허 가－등록－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56조）．

| 구 분 | 허가 • • 등록 • 신고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 허가 (먹 는 샘 물 등 제조업) | 시 - 도지사 | -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21조 <br> 제1항 후단 |
| 등록사항 변경등 록(수처리제 제 조업,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 | " | -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21조 <br> 제2항 후단, <br> 제3항 후단 |
| 신고사항 변경 <br> 신고 (먹는 샘물 등 유통전문판 매업, 정수기 제 조업 또는 수입 판매업) | " | -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21조 제4항 후단, 제5항 후단 |
| 경미사항 변경 신고(먹는 샘 물 등관련영업) | " |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21조 <br> 제7항 |
|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 " | -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하려는 경우 | 법 제21조 제7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 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석 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 법 제25조 |
| 시설 사용 신고 | " | -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법 제28조 |

「먹는물관리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처 리제 제조업자，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 육을 받아야 하고，그가 고용하는 품질관리인에게 품질관리교육을 받 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환경부장관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 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 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온수기의 설치•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 • 용 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이나 냉•온수기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고，영업 관계 장부，서류，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 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물의 재이용 촉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공업＇을 규제하고 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18 조 제 1 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하•폐수처 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페수처리 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시공할 것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환경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은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제5호）．
（6）소음•진동관리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 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 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 검사대행업＇을 규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 38 조 제 1 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6 조에 따른 점검 결과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이하＂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개선 결과

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와 결부된［별표 18］에서는 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검사대행자에게 다 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확인검사대행자는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과 기준을 지킬 것
－검사 업무는 반드시 기술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거짓으로 검사하지 아니 할 것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시험장비를 사용할 것

환경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은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차 개선 결 과 확인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 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제5호）．
（7）수도법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 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법에서는＇저수조청소업’을 규제하고 있다．

저수조청소업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하고，저 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수도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는 환경부 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조수조 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 다．즉 저수조청소업자，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 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 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 야 하고，법 제 35 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 발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하되，다만，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종업원을 고용한 저수조 청소업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8）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 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처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폐수처리업은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을 말하고，폐수처리업은 다시（1）폐수 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 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과（2）폐수 재이용업（위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으로 나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62조 제1항）．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73조 제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에서는 폐수처 리업자에게 다음의 표와 같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준수의무의 내용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 이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할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라 폐수처 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 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시－도지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준수사항 이행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에게 필요한 보 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 68조 제1항 제 5 호）．
（9）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서는 ‘유독물영업＇과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 1）유독물영업

유독물영업은 다시（1）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 조하는 영업），（2）유독물 판매업，（3）유독물 보관•저장업，（4）유독물 운반업，（5）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 척 • 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으로 나뉜다．

유독물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유독물영업 등록에 부수하는 등록•신고•승 인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유독물영업 등록，변경등록•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54조 제6호）．

| 구 분 | 등록•신고• <br> 승인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변경사항 등록／ <br> 신고 | 시•도지사 | －확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br>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20조 <br> 제2항 |
| 휴업•폐업신고 | $" \prime$ | －영업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 법 제26조 <br> 제1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유독물영업을 양도하거나 합 <br> 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유 <br> 독물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br> 려는 경우 | 법 제28조 |


| 구 분 | 등록－신고 • 승인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유독물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변경신고 | ＂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 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 독물영업자가 유독물 취급시 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 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승인） <br>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신고） | 법 제 30 조 |

유독물영업자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 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 1 항 제 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5 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을 받게 하여야 하고，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거나 관련 서 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2）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 18 조 제 1 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이러한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취급제한물질 판매업，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취급

제한물질 운반업，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 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 도장（塗裝）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 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함］을 하려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 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34 조 제 1 항）．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 28 조부터 제 30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34조 제6항）．

| 구 분 | 등록－신고 • 승인권자 | 내 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변경사항 등록／ 신고 | 시－도지사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20조 <br> 제2항 |
| 휴업•폐업신고 | ＂ | －영업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 법 제 26 조 <br> 제 1 항 |
| 영업양도 등 <br> 신고 | ＂ | －유독물영업을 양도하거나 합 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유 독물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려는 경우 | 법 제 28 조 |
| 유 독 물 관 리 자 <br> 및 취급시설의 <br> 공동활용 승인／ <br> 변경신고 | ＂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 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가 유독물 취급 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 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승인） <br>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신고） | 법 제 30 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 장，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 1 항 제 8 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5 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

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해당 교 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제 1 항 및 제2항）．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 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45 조 제 1 항 제 10 호）．
（10）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 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13． 7． 16 ，일부개정，법률 제11913호，2014．1．1．시행）130）에서는 ‘폐자동 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1）폐자동차재활용업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 으로서，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br> 부서 재활용하는 영업 |
| 파쇄잔재물 <br> 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br> 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잔재물을 재활용하 |

130）「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16일자로 일부개정되었는데，이 때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제도에 관한 중 요사항들이 개정되었다．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황을 분석함을 밝힌다．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 32 조 제1항）．폐자동차재활용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 속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및 「민사집행 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또는 파쇄잔 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5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 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 1 항 제 5 호）．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 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2）폐가스류처리업
폐가스류처리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 한 영업을 말하고，폐가스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 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32 조의 2 제 1 항）．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2 제2항）．폐가스류처리 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로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 라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조）．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수•처리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5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 36 조 제 5 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 관•저장，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 46 조 제 1 항 제 5 호）．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해당 시설•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37 조 제 1 항）．
（11）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 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토양환경보 전법」에서는＇토양정화업’을 규제하고 있다．

토양정화업은 토양정화（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 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및 제7호）．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23 조의 7 제 1 항）．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상속으 로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 사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 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정화업자 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의2 제2항）．
（12）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을 수집 • 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서，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된다．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기계 적 처분，화학적 처분，생물학적 처분，그 밖에 환경부장 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 영업명 | 영업 내용 |
| :---: | :---: |
| 폐기물 |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법 제13 <br> 최종재활용업 |
| 표의2에 따믄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  |
| 종합재활용업 |  | |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 |
| :---: |
| 읍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 25 조 제 1 항).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법 제 25 조 제5항).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법 제 25 조 제 11 항).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폐기물처리 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하려는 경우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3조).

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허가관청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38조 제 1 항 제 4 호).

「폐기물관리법」 제 3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에 종 사하는 기술요원 등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부담한다 （같은 조 제3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 36 조 제 1 항 제 4 호）．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시행에 필요 한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13）하수도법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 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기술진단 대행업＇，＇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 처리시설관리업’을 규제하고 있다．

1）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 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바，관리대행업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 }^{131)}$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6] 지방공단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하수도법 제 19 조의 2

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하수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 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 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기술진단 대행업

「하수도법」 제 20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 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 행하게 할 수 있다．기술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의 2 제 2 항 및 제 3 항）．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 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분뇨•수집 운반업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 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45조 제1항）．분뇨•수집 운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6조）．분 뇨•수집 운반업 허가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70조 제1호）．

[^7]분뇨•수집 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 록하여야 하며， 3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하수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1항 제3호）．

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51조 제1항）．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56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 제70조 제2호）．

「하수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하수처 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69조 제1항 제4호).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 업하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6조). 개인하수 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70조 제3호).

「하수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는 고용 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하수처 리시설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 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 1 항 제 5 호).

6）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53조 제1항）．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 업하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6조）．개인하수 처리시설관리업 등록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70조 제3호）．

「하수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고용 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하수처 리시설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 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 1 항 제 5 호）．
（14）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 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대행업’을 규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대행업은 대기오염물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간오염물질，악취，수질오염물질，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 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측정대행업＂이라 한다） 으로서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 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 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 16 조 제 1 항）．측정대행 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3 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법 제 18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 항）．측 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 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 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 정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해당 시설•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 제4호）．
（15）환경영향평가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 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는＇환경영향평가업＇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업으로서 환경영향평 가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환경영향평가 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57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 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사업 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1항).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제 1 절 개 관

이상에서는 (1)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2) 산 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3)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 광 관련 법제 분야, (5)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별 영업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법상 영업규제는 부처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규제 완화 노력에 따라 등록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다수의 인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분 야 | 총 소관 법률 수 | 영업규제 <br> 법률 수 | 규제 <br> 영업 수 | 영업규제 유형 |  | 인 - 허가권자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국토 } \\ \text { 교통 } \end{gathered}$ | 102개 <br> 법률 | 26개 법률 | $\begin{aligned} & \text { 106개 } \\ & \text { 영업 } \end{aligned}$ | 허 가 | 7건 | 중앙 <br> 행정 <br> 기관장 | 81개 |
|  |  |  |  | 면 허 | 7건 |  |  |
|  |  |  |  | 등 록 | 77건 | 지방 <br> 자치 <br> 단체장 | 23 개 |
|  |  |  |  | 신 고 | 16건 |  |  |
| 산업• <br> 통상. <br> 자원 | 88개 <br> 법률 | 20개 법률 | 60개 영업 | 허 가 | 14건 | 중앙 <br> 행정 기관장 | 27 개 |
|  |  |  |  | 등 록 | 36건 |  |  |
|  |  |  |  |  |  | 지방 | 29 개 |
|  |  |  |  | 신 고 | 5건 | 자치 <br> 단체장 |  |


| 분 야 | 총 소관 <br> 법률 수 | 영업규제 <br> 법률 수 | $\begin{gathered} \text { 규제 } \\ \text { 영업 수 } \end{gathered}$ | 영업뀨 | 유형 | 인 • | 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허 가 | 2건 | 중앙 행정 | 1개 |
| 보건 - | 78개 | 7개 법률 | 19개 영어 | 등 록 | 3거 | 기관장 |  |
| 복지 | 법률 | 7개 불 | 19개 영붑 | 등 | 3근 | 지방 |  |
|  |  |  |  | 신 고 | 13건 | $\begin{gathered} \text { 자치 } \\ \text { 단체장 } \end{gathered}$ | 17 개 |
|  |  |  |  | 허 가 | 4건 | 중앙 |  |
| 문화 • | 50개 |  |  | 등 록 | 31건 | 기관장 |  |
| 관광 | 법 |  |  | 신 고 | 13건 | 지방 |  |
|  |  |  |  | 지 정 | 11건 | 단체장 |  |
| 환 경 | 47개 <br> 법률 | 15개 법률 | 47개 영업 | 허 가 | 20건 | 중앙 <br> 행정 <br> 기관장 | 20 개 |
|  |  |  |  | 등 록 | 22건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지방 } \\ \text { 자치 } \\ \text { 단체장 } \end{gathered}$ | 33 개 |
|  |  |  |  | 신 고 | 4건 |  |  |
| 합 계 | $365 \text { 개 }$ <br> 법률 | 78개 법률 | 291개 <br> 영업 | 허 가 | 47건 | 중앙 <br> 행정 <br> 기관장 | 131개 |
|  |  |  |  | 등 록 | 169건 |  |  |
|  |  |  |  | 신 고 | 51건 |  |  |
|  |  |  |  |  |  | 지방 |  |
|  |  |  |  | 면 허 | 7건 | 자치 | 159 개 |
|  |  |  |  | 지 정 | 11건 | 단체장 |  |

영업규제의 내용은 개별 법률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최초 의 인허가등록신고에 이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인허가등록신고 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변경)인허가등록신고 시에는 대다수의 법령에서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최초의 인허가등 록신고나 변경인허가등록신고 외에 영업 수행 상 각종 보고•신고•

자료(계획)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복 또는 과다한 의무 부과가 문제될 수 있고, 이러한 각종 의무 이 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나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나 법률의 근거 없 이 또는 법률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가 있었다.
몇몇 법률에서는 영업자 또는 그 협회•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영업 수행상의 안전이나 거래질서유지 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 만 대다수의 법률에서는 영업자에게 금지의무나 준수의무(경우에 따 라서는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여 영업 수행상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등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당하거나 과다한 의무 부과나 법률의 근거 없이 또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의무의 내용, 그 이행 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그 이행상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몇몇 법률에서는 영업자 또는 그 협회 •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영업 자나 그가 고용하는 자의 영업수행 능력 제고나 공중위생 등 국민보 건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훈련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는 법률도 다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중복 교육, 교육 대상 불명확, 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훈 련 이수 불이행에 대한 부당한 제재 등이나 제재적 성격으로 교육• 훈련을 강제하는 경우, 실제로 법령 위반의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한 교육 - 훈련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영업현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 료제출, 공무원의 현장 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활동 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조사의 불가피성이 나 법령상 그 범위나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몇몇 법령에서는 행정조사의 범위나 대상을 구체 화하지 않은 채 매우 포괄적인 사유로 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 도록 하고 행정조사 기피•거부•방해 등과 관련하여 과다한 제재수 단을 예정하거나 중복•수시 행정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영업규제 관련 법령에서는 의무 이행을 담보하거나 그 위 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적 행정처분, 행정형벌, 과징금•과태 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예정하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제재 수단을 예정하 고 있는 경우, 제재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예 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 등 불합리한 규정을 두어 기업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영업규제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해당 법제 분야별로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2) 영업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 담지우는 경우,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 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4)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각종 보고•신고 의 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는 경우, (6) 그 밖에 영업과 관련 하여 불합리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문제점을 적시하고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국토•고통 관련 법제 분야

1．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1）관련 법령 및 조문：「골재채취법」제 14 조 제 3 항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시행령 |
| :---: | :---: |
| 제 14 조（등록）（1）골재채취업을 경영하 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br>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br> （3）제 1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 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제 16 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골 재채취업자는 그 상호 • 명칭 또는 사 | 제 19 조의 2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 한 사항의 신고 주기）（1）법 제14조 제 3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 률 제 8479 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 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 년을 말한다． <br> （2）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 장 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br>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1）법 제16 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br>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br> 2．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시행령 |
| :---: | :---: |
| 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br> 제 48 조의 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br> 1.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br> 2.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 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br> 3. 제 22 조의 3 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br>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1)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 1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 14 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br> 2.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 지 아니하고 3 개월이 경과한 경우 <br> 3. 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 <br>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 3.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 <br> (2)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 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 터 30 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시행령 |
| :---: | :---: |
| 못하게 된 경우 <br> 5. ~ 13. (생 략) <br> (2) ~ (5) (생 략) <br> 제5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br>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r> 1. 제 14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신고기 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br> 2. 제 17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br>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br> (2) (생 략) <br> 부 칙 <법률 제11016호, 2011.8.4> 제 2 조(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 14 조제 3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 지는 같은 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

## 2) 검토의견

- 「골재채취법」 제 14 조 제 1 항 본문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 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3 년 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8조의2 제2호), 등록기준 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 개월이 경과 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이와 같이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자에게 일반적인 등록 사항 변경등록(또는 신고)의무 외에 등록기준 사항에 관한 신고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업자는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또 매 3 년마다 등록기준 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기준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관 한 사항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개선 방안

- 골재채취업자의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 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비추어보 면 등록기준 사항에 관한 신고사항은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과 일치하는바 행정청은 등록사항 변경신고제도를 활용하여 골재채 취업자가 법상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별 도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골재채취업자에 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골재채취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4 조（등록）（1）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 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br>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br> （3）제 1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 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관한 사항을 3 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제48조의2（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br> 1．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br> 2．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 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br> 3．제 22 조의 3 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 제 14 조（등록）（1）•（2）（현행과 같음） <삭 제> <br> 제 48 조의 2 （수수료）（현행 과 같음） <br> 1．（현행과 같음） <삭 제> <br> 3．（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9 조(등록의 취소 등) (1)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 13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 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 14 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br> 2.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 지 아니하고 3 개월이 경과한 경우 <br> 3. ~13. (생 략) <br> (2) ~ (5) (생 략) <br> 제 52 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 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r> 1. 제 14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자 <br> 2. - 3. (생 략) <br> (2) (생 략) | 제 19 조(등록의 취소 등) (1) (현행과 같음) <br> 1. (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3. ~ 13. (현행과 같음) <br> (2) ~ (5) (현행과 같음) <br> 제52조(과태료) (1) (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2. - 3. (현행과 같음) <br> (2) (현행과 같음) |

（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1）관련 법령 및 조문 ：「물류정책기본법」제 43 조 제 4 항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 :---: | :---: | :---: |
| 제 43 조（국제물류주선업 <br> 의 등록）（1）국제물류 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br> （2）제1항에 따라 국제 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이하＂국제물류주선업 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br> （3）제1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 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야 한다． <br> （4）국제물류주선업자는 | 제30조의 2 （국제물류주선 업의 등록）법 제 43 조 제3항에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 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 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br> 1．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이 10 억원 이 상인 경우 <br> 2．컨테이너장치장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 <br> 3．「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은 행으로부터 1억원 이 상의 지급보증을 받 은 경우 <br> 4． 1 억원 이상의 화물 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한 경우 | 제 7 조（국제물류주선업 의 변경등록）（1）법 제 43조제2항에서＂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br> 1．상 호 <br> 2．자본금 또는 자산평 가액 <br> 3．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임원의 성명을 말 한다）및 주민등록번 호（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등록번호를 말한다） <br> 4．주사무소 소재지 <br> 5．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br> （2）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을 등록한 자（이하＂국 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 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60 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변경등 |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 :---: | :---: | :---: |
| 제3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 경과할 때마다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br>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br>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 제 물류 주 선 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 제 3 호 • 제 3 호 의 2 - 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 2. (생 략) <br> 2 의2. 제 43 조제 4 항을 위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한 때 <br> 3. ~5. (생 략) <br> (2) 제 1 항에 따른 처분 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록 신청서에 변경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3) 시•도지사는 국제 물류주선업자가 그 주 사무소를 다른 특별 시•광역시•도 및 특 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로 이전하 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 역을 관할하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관련 서 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

2）검토의견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 제 1 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 려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는 자본금 등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 준에 관한 사항을 3 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러한 신고의무를 위 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을 받 게 될 수 있다（같은 법 제 73 조 제 1 항 제 1 의 2 호）．
－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1）상호，（2）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액，（3）성명 및 주민등록번호，（4）주사무소 소재지，（5）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일반 적인 등록사항 변경등록의무 외에 등록기준 사항에 관한 신고의 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또 매 3 년마다 등록기 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등록기준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 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개선방안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 리감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사항 변경등록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의 2

에 비추어보면 등록기준 사항에 관한 신고사항은 등록사항 변경 등록사항과 거의 일치하는바(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라 할 것이고, 그 밖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 므로) 행정청은 등록사항 변경등록제도를 활용하여 국제물류주 선업가 법상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별도 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국제물류주선업 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물류정책기본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1) 국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1) ~ |
| 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 | (3) (현행과 같음)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  |
|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  |
| (2)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  |
|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 |  |
| 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 |  |
| 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  |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  |
| 하여야 한다. |  |
|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 |  |
| 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 |  |
| 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 |  |
| 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 |  |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 |  |
| 족하여야 한다. |  |
| (4)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 | 삭 제> |
| 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 년이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br>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1) 국토교통부 <br> 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 3 호•제 3 호의 2 •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을 한 때 <br>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br> 2 의 2 . 제 43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고한 때 <br> 3. 제 44 조(제 45 조제 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 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 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 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1) (현행과 같음) <br> 1. - 2. (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2의2. ~ 5. (현행과 같음)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 |  |
| 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  |
|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 |  |
| 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  |
| 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  |
| 을 대여한 때 |  |
|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 |  |
| 실을 확인한 때 |  |
| (2) (생 략) |  |

2．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시설물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자 교육
1）관련 법령 및 조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제14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 :---: | :---: |
| 제 6 조（안전점검의 실시） <br> （1）관리주체는 시설물 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하여 제 13 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br> （2）안전점검은 정기점 검•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 시한다． <br> （3）안전점검의 실시시 <br> 기，안전점검을 실시할 <br> 수 있는 자의 자격괴 안전점검 대가（代價）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7）（생 략） | 제 7 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1）법 제6조제 3 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자신의 책임하 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 （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 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 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 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책임기술자는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 의 등 록기준에 규정된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 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 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 | 제 4 조（책임기술자의 교육 훈련 등）（1）영 제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 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교육기관에서 해 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 람을 말한다．다만，「주 택법 시행령」제65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는 「주택법 시행규 칙」，제 28 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 교육을 35 시간 이상 이 수하여야 한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 :---: | :---: |
| 제 7 조(정 밀 안 전 진 단의 실시) (1) 관리주체는 1 종시설물에 대하여 제 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br> (2) 관리주체는 시설물 에 대하여 제6조에 따 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 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br>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의 자격과 정밀안전진 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 자의 감독하에 정밀안 전진단을 하려는 사람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 밀 안 전 진 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 의 교육훈련기관 <br>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교 육원 <br> (2) 제 1 항에 따른 교육 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한다.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제 6 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제출) (1) 제 3 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단 과정을 개설 -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 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2) 제 1 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 교육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3)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

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1)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 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3. 피교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소속
4. 수료번호
(3)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 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 시간 수 및 강사
6.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7.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제 14 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건설관련 공무원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제 16 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 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 평가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 과목 내용 등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 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 1 항에서는 관리주체 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 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다.
－이상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 의 감독 하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1）책임 기술자와（2）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일정한 기술인력의 자격요 건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고，이들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 육을 이수한 사람＂을（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2）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 상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정 및 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시간은 원칙적으 로 최소 70시간 이상이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규칙 제4조제 1 항 본문）．이 정도의 교육이면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유상（有償）으로 실 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그 비용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그

결과 현재로서는 교육기관마다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비용 을 산정하여 납부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해 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8.20., 타법개정 - 시행)에서는 교육 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의무(제6조),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의무(제7조), 강사요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제 14 조),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 16 조)을 규정하 고 있는데, 이들 사항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나 불이 익을 가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기관의 성격이 민간기관이라는 특 성을 고려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를 두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기관들이 직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 또 는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그 관리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3) 개선 방안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시 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면 굳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다시 교육기관 지정을 받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교육 기관에 대한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또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에 고유한 요건(예컨대, 강사요원 선임 등)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의무부과

에 관한 사항,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불이익 조치 등에 관한 사 항은 가급적 법률의 근거를 두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 차원 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지하수개발 - 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지하수법」제 34 조의 2 제 2 항

| 지하수법 |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
| :---: | :---: | :---: |
| 제34조의2(교육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 하수개발-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 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br> (2) 지하수개발•이용 관 련 업계 종사자 및 기 술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br>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교육 등) (1) 법 제 3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 별표 4 제 1 호에 해당 되는 지하수개발 - 이용 시공업체의 기술인력 <br> 2. 별표 5 제 1 호에 해당 되는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의 기술인력 <br> 3. 별표 6 제 1 호에 해당 되는 지하수정화업체 의 기술인력 <br> (2) 법 제 34 조의 2 제 2 항 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br>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 관리에 관한 기술 <br>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 절한 개발 -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br> (3) 제 1 항에 따른 교육 훈련 대상자는 법 제 22 조제 1 항, 제 27 조제 1 항, | 제35조(교육 등) 법 제3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교 육기간은 3 일 이내로 한다. |


| 지하수법 |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
| :---: | :---: | :---: |
|  | 제 29 조의 2 제 1 항에 따 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한다．다만，지하 수조사전문기관의 교 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 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에는 법 제 3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br> （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34 조의 2 제 3 항에 따 라 법 제34조의 2 제 2 항 에 따른 교육훈련업무 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br> 1．「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 공사 <br>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br> 3．법 제 26 조의 2 에 따라 설립된 협회 <br> （5）제 3 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지하수조사전문 <br> 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 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  |


| 지하수법 |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
| :---: | :---: | :---: |
|  |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 <br> 의 교육계획을 국토교 <br> 통부장관에 게 제출하 <br> 여야 하며，해당 연도의 |  |
|  |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  |
| 해 1월 30일까지 국토 |  |  |
|  | 교통부장관에 게 제출 |  |
|  | 하여야 한다． |  |
|  | （6）이 영에서 규정한 사 |  |
|  | 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  |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  |  |
|  | 한다． |  |

2）검토의견
－「지하수법」 제 34 조의 2 제2항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이에 따 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교육훈련 대상，교육훈련의 내 용，교육훈련 이행 기간，교육훈련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렁 제42조 제6항에 따라 교육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 관 련 업계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하려면 의무이행을 위해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 혀야 할 것인데，「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 • 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 아울러 기술인력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 더 나아가 지하수법령에서는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로서는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자체적 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비용은 지하수개발. 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 로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 방안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 련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교육 대상이 되는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되, 이 때에 도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 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비용에 관한 사 항이나 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3．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사전고지 예외 사항
1）관련 법령 및 조문：「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 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하도급의 적정 여부，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 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3）（생 략）
（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다만，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5）제 1 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 는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6）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2）검토의견
－「건설산업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

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같은 조 제 3항 본문에서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같은 항 단서에서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조사는 일종의 행정조사로서 행정 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조사기본법」 제 17 조 제 1 항에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 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1）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 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통계법」 제 3 조제 2 호에 따 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3）「행정조사기본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 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 통지 대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 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3항에서는 조사계획을 ‘서 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 급한 경우 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자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행정조사기본법」 제 17 조 제 1 항 단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3) 개선방안

- 건설업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해의 발생이 목전에 임박해 있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조사계획이 알려 질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더라도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 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도 록 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도록 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1)~ <br> (3) (생 략) <br>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 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 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br> (5) - (6) (생 략) |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1) <br> (3) (현행과 같음) <br> (4)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 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 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 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br> (5) - (6) (현행과 같음)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
| :---: | :---: |
|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 부 -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br> 제 75 조(자료의 제출 등) (1)시•도지사 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 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r>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 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칠 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 제 21 조(자료의 제출 등) (1) 법 제 7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로부 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 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보고(전자문 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 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br>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법 제 75 조제 2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 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 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 일전까 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qquad$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 14 호서식의 조사공무 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 :---: | :---: |
|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 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br>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 일시•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 어야 한다. <br>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1)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 제6호 및 제7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 3. (생 략) <br> 4. 제 74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br> 5.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 는 기피한 때 <br> 6. ~ 9. (생 략) <br> (2) ~ (5) (생 략)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 :---: | :---: |
| 제88조(과태료) (1) 제77조제3항에 따라 |  |
|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 •기피 또 |  |
| 는 방해한 자에게는 1 천만원의 과태 |  |
| 료를 부과한다. |  |
| 1. 삭 제 <2009.2.6> |  |
| 2. 삭 제 <2009.2.6> |  |
| 3. 삭 제 <2009.2.6> |  |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  |
| 태료를 부과한다. |  |
| 1. (생 략) |  |
| 2. 제 74 조제 1 항 및 제 75 조제2항에 |  |
|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 |  |
| 만히 한 자 |  |
| 3. 삭 제 <2009.2.6.> |  |
| (3) (5) (생 략) |  |

2)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 정조사적 성격의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다.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어떤 영업에 대한 이러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검사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 1 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같은 법 제 제75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업자가 중복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외에 이 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행정조사적 성격의 규정이라는 점과 조사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외에 ‘시장•군수＇가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 같은 법 제74조 제 1 항과는 다르다고 할 것인데，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입장에서는 양 조항에 따른 이중의 조사를 받게 되어 영업상 불필요한 부담을 받을 수 있고，「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 73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에서는 양 조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 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각각 등록 취소 또 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 88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 복 조사에 따른 이중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규정을 단일화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3）개선방안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조항 및 제재조항을 삭제하고，그 밖의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행정조사 규정만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를 함으로써 중복 조사 및 중복 제재의 부담을 완화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때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 조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도록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br>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br> 제75조（자료의 제출 등）（1）시•도지사 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 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시장． 군수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 <삭 제> <br> 제 75 조（자료의 제출 등）（1）～（3）（현행 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r>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 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 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br>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 일시•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 어야 한다. <br> <신 설> <br>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 소 등) (1) 시 • 도지사는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 제 6 호 및 제 7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 (4) 제2항에 따라 출입 •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br>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 소 등) (1)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야 한다. <br> 1. ~ 3. (생 략) <br> 4. 제 74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br> 5.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 는 기피한 때 <br> 6. ~ 9. (생 략) <br> (2) ~ (5) (생 략) <br> 제88조(과태료) (1) (생 략)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br> 1. (생 략) <br> 2. 제 74 조제 1 항 및 제 75 조제 2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 만히 한 자 <br> 3. 삭 제 <2009.2.6.> <br> (3) ~ (5)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5. ~ 9. (현행과 같음) <br> (2) ~ (5) (현행과 같음) <br> 제 88 조(과태료) (1) (현행과 같음) <br> (2) (현행과 같음) <br> 1. (현행과 같음) <br> 2. 제 75 조제 2 항- $\qquad$ $\qquad$ <br> 3. (현행과 같음) <br> (3) ~ (5) (현행과 같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1) 법 제75조 <br>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 <br> 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로부 |
| 제21조(자료의 <br> 과 같음)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 |  |
| 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  |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 |  |
| 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 |  |
| 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 |  |
| 함한다)하여야 한다. |  |
| (2)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  |
| 시장 • 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 |  |
| 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 |  |
| 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 |  |
| 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 |  |
| 지 조사의 일시 • 목적 등을 서면으로 |  |
| 통지하여야한다. |  |
| (3)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  |
| 표시하는 별지 제 14 호서식의 조사공 |  |
| 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  |

（3）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1）관련 법령 및 조문 ：「도시철도법」제 25 조 제 1 항

## 도시철도법

제25조（보고 및 검사）（1）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 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자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에 게 도시철도건설자의 사무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무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 려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1）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3．（생 략）
14．제 25 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 우，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생 략）

2）검토의견
－「도시철도법」 제 25 조 제 1 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필요하다 고 인정하면，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자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철도건설자의 사무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의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검 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조사란＂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 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제5조），원칙적으로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법령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행정조사에 관한 개별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등 일반국민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 구하는 경우（비록 실무적으로는 행정조사의 대상이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 나）이는 국민 또는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 므로 해당 개별법에 규정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와 범위에 한하 여야 하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2）
－그런데「도시철도법」 제 25 조 제 1 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 고만 규정하여 행정조사의 목적•범위 등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물론 법률에서 행정조사의 목적이나 범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법률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나，행정조사 의 목적•범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권한행사규정을

[^8]두면 행정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권한행사를 가능하게 하고133）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 상이 되는 기업 등 국민에게 적지 아니한 부담을 줄 수 있다．134）
－더 나아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 25 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 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 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비교적 중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발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한 측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도 이와 마찬가 지이므로 일괄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입법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보고•검사 등）（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그 밖의

133）윤장근，출입검사 및 질문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법제 1994년 12월호，법제처， 1994．12．＜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searchCondition＝ALL\＆search Keyword $=\%$ ec $\% \mathrm{~b} 6 \% 9 \mathrm{c} \% \mathrm{ec} \% 9 \mathrm{e} \% 85+\% \mathrm{ea} \% \mathrm{~b} 2 \% 80 \% \mathrm{ec} \% 82 \% \mathrm{ac} \& \mathrm{mpbLegPstSeq}=129347>$
134）강현철－이세정，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0．10．31，61쪽 이하 참조．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법령상＇필요한 경우＇등 자의적인 사유／내역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2012 규제개혁백서，708쪽 참조．

## 정비대상 입법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제 2 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에서는 행정조사의 대상 및 범위를 매우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입법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2 조 • 제 24 조•제 25 조 또는 제 40 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을 위 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 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 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2．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2）～（5）（생 략）

## 3）개선 방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 정조사 대상•범위 등을 법률에서 직접 또는 하위법령으로 위임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 4．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1）법인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1）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사법 시행령」제 23 조

| 거숙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
| :---: | :---: |
| 제 23 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1） 제 18 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전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br> （2）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건축사 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 조하는 소속 건축사，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 13 조에 따른 실무수련 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 18 조에 따른 자격등록 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건축사사무 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 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3）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 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 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 | 제23조（신고기준）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 자가 건축사여야 한다．다만，건축사 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 립하고 20 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 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을 대상으로 법 제 19 조에 따른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br>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이하＂전축사사무소개설신고＂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 36 조 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 건축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
| :---: | :---: |
| 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 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br> （4）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건축 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br> （5）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 개의 사 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건축사，건 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 개의 건 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br> （6）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br>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br> （7）삭 제＜2000．1．28＞ <br> （8）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 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제 2 호나 제 4 호의 경우 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1．「건설기술관리법」제 28 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 <br>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  |


| 건축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
| :---: | :---: |
| 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 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br> 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br> 4．「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 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 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 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br> （9）제 8 항제 4 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 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 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검토의견
－「건축사법」 제 23 조 제 1 항에서는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른 자격등 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는 건축사인＇자연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건

축사사무소 개설신고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 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일 것을 규정하여 대표자가 건축사이기만 하 면 법인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더 나아가 같은 조 단서에서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 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 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자연인과 법인 모두 영업의 자유를 향유하고 건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자연인인 건축사만 그 업을 수행 하도록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건축사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건축법」에 서는 건축사만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 행령에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 하여 일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3）개선방안

－원칙적으로 건축사만이 건축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건축사가 아 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지만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적으로 일 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정책

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 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연 인이 아닌 법인도 건축사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차원에서 법인을 개설신고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건축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3 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1) 제 18 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br> <신 설> <br> (2)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 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 |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br> (현행과 같음) <br> (2)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 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 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 을 설립하고 20 명 이상의 건축사를 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 19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r> (3) $\qquad$ 건축사 또는 법인 $\qquad$ $\qquad$ $\qquad$ |


| 현 행 | 개정안 |
| :---: | :---: |
| 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 속 건축사는 제 18 조에 따른 자격등 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 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 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3) ~ (9) (생 략) |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4) ~ (10)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 지와 같음) |

## 【 건축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
| :---: | :---: |
| 개정안 |  |
|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 | <삭 제> |
| 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 |  |
| 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 |  |
| 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  |
|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  |
|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 |  |
| 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 |  |
|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2）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신고 절차
1）관련 법령 및 조문：「도시철도법 시행령」제 19 조의 2 제 3 항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 시행령 |
| :---: | :---: |
| 제15조의2（운임의 신고 등）（1）도시철 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 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br> （2）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 전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 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 의 등）（1）시 • 도지사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運賃） 의 범위를 정하려면 시 • 도에 운임조 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br> （2）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 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br> （3）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 15 조의 2 제 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 할 때에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 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 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 사 또는 해당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br> （4）시•도지사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 전단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그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2）검토의견
－「도시철도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 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3 항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 는 경우에는 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해당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할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있는 데，이러한 협의 의무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라 할 것이고，협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항은 없지 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임 신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개선 방안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3 항의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협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다．

## 【 도시철도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5조의2（운임의 신고 등）（1）도시철 <br> 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 <br>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 |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 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br> ＜신 설＞ <br> （2）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 전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 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도시철도운영자는 제 1 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할 때에 해 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 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 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 도공사 또는 해당 도시철도운영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br> （3）（현행 제 2 항과 같음） |

##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9조의2（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 |  |
| 의 등）（1）시 19 도지사는 법 제 15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 |  |
|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運賃）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의 범위를 정하려면 시 • 도에 운임조 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 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br> (3)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15조의2제 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 할 때에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 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 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 사 또는 해당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br> (4) 시 • 도지사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 전단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그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삭 제> <br> (3) (현행 제 4 항과 같음) |

## 5．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1）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건설기계관리법」제 35 조의 2 제 1 항제 6 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1）시•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1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 24 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시•도지사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 한 경우

6．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 21 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3）제 1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2）검토의견
－「건설기계관리법」 제 35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 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6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 올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건설기관계리법」제 35 조의 2 제 1 항 제 6 호를 삭제하거나 건설기 계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의 대상 사유를 명확 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건설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건설기술관리법」 제 36 조의 17 제 5 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시정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제 23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 24 조제 2 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 26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 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검토의견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 17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 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지시（이하＂시정명령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 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5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개선 방안
－「건설기술관리법」 제 36 조의 17 제 5 호를 삭제하거나 건설업자 또 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대상 사유를 명확하 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감리전문회사 등록취소 등 공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113 조, 제 116 조 제 1 항 및 제 123 조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칙 |
| :---: | :---: | :---: |
| 제 30 조 (감리 전 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1) 시. 도지사는 감리전문회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 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br> (2) 시•도지사는 감리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6 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3) 감리전문회사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 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 제 1 항 및 제 2 항 각 | 제1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 30 조에 따라 감리전 문회사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 30 조 의 2 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br> 제 116 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1) 시•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 여야 한다. <br> (2) 법 제 33 조제 4 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란 감리전 문회사가 제 1 항에 따 라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을 말한다. | 제77조(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 우수건설업자 또 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1) 영 제122 조제 1 항에 따른 우수건 설기술용역업자, 우수 건설업자 및 우수감리 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그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 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 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 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 정한다)에서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 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 2 호 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br> 1. 제 76 조에 따른 평가평 점이 90점 이상일 것 2. 해당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
|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 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 4 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은 "시 - 도지 사"로 본다. <br> (5)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br> 제 33 조(감리원의 업무정 지 등) (1) 시•도지사 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br>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 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 6 조의 4 제 4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 교통부 장 관"은 "시 - 도지사"로 본다. <br> (3) 제1항에 따른 처분 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 123 조(우수업자등의 지 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 36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자등의 지정을 취소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이 있는 경우에는 <br>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 <br> 이 80점 이상으로 평 <br> 가되었을 것 <br> 3. 최근 5 년간 계속하여 <br> 해당 공사에 관한 면 <br> 허를 보유하였을 것 <br>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 <br> 허의 취소를 받은 사 <br> 실이 없을 것 <br> (2) 발주청은 영 제 122 <br> 조제 1 항에 따라 우수건 <br> 설기술용역업자, 우수 <br> 건설업자 또는 우수감 <br> 리원을 지정하거나 취 <br> 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br>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 <br> 는 일간신문에 공고하 여야 하며, 별지 제70호 <br> 서식, 별지 제 71 호서식 <br> 또는 별지 제72호서식 <br> 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 <br> 부장관에게 통보하여 <br> 야 한다. <br> 1. 발주청 <br>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 <br> 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br>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br> (업체명 • 면허번호• <br> 대표자 및 소재지) <br> 3. 지정날짜 및 유효기간 <br> 4. 지정 전문 분야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
| (4) 감리전문회사는 소 속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 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6 조의 4 제 4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원의 업무의 정지를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통보한 경우는 통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br> (5) 감리원이 감리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 목적물 또는 제 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 리원이 속하는 감리전 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 기 위하여 그 감리전문 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 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 용을 용역비용에 계상 하여야 한다. <br> (6) 제 5 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 |  | 5. $\begin{aligned} & \text { 취소사유(취소의 경 } \\ & \text { 우만 해당한다) } \end{aligned}$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
| 류 -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br> 제30조의2(과징금) (1) 시• <br> 도지사는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 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 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에는 업무정지에 갈음 하여 6 천만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br> (3) 제 1 항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 사의 품질확보를 위하 |  |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
| 여 발주청(「사회기반시 |  |  |
|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  |
|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  |  |
| 2조제4호에 따른 주무 |  |  |
| 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  |  |
|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 |  |  |
| 주하는 대통령령으로 |  |  |
|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 |  |  |
| 설기술용역사업(건축 |  |  |
| 사법제2조제3호에 따 |  |  |
| 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 |  |  |
| 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  |  |
|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 |  |  |
| 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  |  |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 | 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
| 를 우수업자 및 우수 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br> (3) 발주청은 건설기술 용역사업 또는 건설공 사를 발주할 때 제2항 에 따른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br> (4)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능력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 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 용역업자 또는 건설업 자에게 능력평가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br> (5) 발주청은 제 2 항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 수감리원을 지정한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br> (6) 제 1 항부터 제 4 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의 기준 •절차 • 항목과 <br> 그 밖에 평가에 필요 <br>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br> (7) 발주청은 제2항에 |  |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
|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 |  |  |
|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 <br>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 |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 따라 그 지정을 취소 |  |  |
| 하여야 한다．（각 호 |  |  |
| 생략） |  |  |

2）검토의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3조에서는 시•도지사는「건설기술 관리법」 제 30 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 30 조의 2 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 116 조제 1 항에서는 시 • 도지사는 같은 법 제 33 조에 따라 감 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23조에서는 발주청은 같은 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공고는 감리전문회사 등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책 을 마련함과 더불어 위반행위자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써 제재 를 가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규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입법례에 따라 이를＇공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공고 또는 공표제도는 형사벌 등과 달리 담당행정청은 간이한 수법을 발하면서 악덕업자에게는 효과가 크다는 것, 신 용을 중시하는 자에게는 효과가 절대적이라는 것(거래나 종업원 의 모집에 악영향이 있다), 처벌 등 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방법 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새로운 실효 성 확보 수단으로 확대 도입되는 경향에 있다.
- 이러한 공고 또는 공표는 그 자체로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 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일단 공고 또는 공표가 행해지면 사실상 상대방의 명예나 프라이버 시, 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인격권 •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가 있을 수 있 으므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13 조와 제 116 에서는 공고방법이나 절차를 직접 정하거나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지만, 공고방 법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같은 영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 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1) 발주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취소 사유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바(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등에 따른 공고 등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공고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외에 공고라는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관 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고 를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고방법 이나 절차 등을 관련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에서는 건 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 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을 공고하고，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등록말소 등의 공고）（1）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 조，제 82 조，제 82 조의 2 ，제 83 조 및 제 101 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 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공 사 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3）개선 방안
－감리전문회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처분 사실，감리원 업무정지 처분 사실，우수업자등 지정 취소 사실 등을 공고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필요하면 법률에 그 근거 를 두고，공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 정하도록 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 제 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
| （1）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 | （1）～（4）（현행과 같음）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등록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각 호 생략) <br> (2)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br> (3) - (4) (생 략) <br> <신 설> <br> (5)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제 $\mathbf{3 0}$ 조의 2 (과징금) (1) 시 - 도지사는 제 3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 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 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r>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 (5) 시 - 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감 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6)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제 30 조의2(과징금) (1) • (2) (현행과 같음) <br> (3) 시 • 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과 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 |


| 현 행 |
| :---: |
|  |
|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 |
| 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 |
| 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 |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1) 시 • |
| 도지사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
|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
|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 (2) (생 략) |
| <신 설>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 취소처분 <br> 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br>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 <br> 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도 지사는 법 제 30 조에 따라 감리전문회 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 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0조의 2 에 따 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br> <각 호 신설> <br>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1) 시 - 도지사는 법 제 33 조에 따라 감 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 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 야 한다. <br> <각 호 신설> | 제 113 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qquad$ $\qquad$ $\qquad$ $\qquad$ <br> 다음 각 호의 <br>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 <br> 1. OO <br> 2. OO <br>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br> (1) $\qquad$ $\qquad$ $\qquad$ <br> 또는 일간신문에 $\qquad$ $\qquad$ <br> 1. O O <br> 2. OO |


| 현 행 | 개정안 |
| :---: | :---: |
| (2) 법 제 33 조제 4 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 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 일을 말한다. <br> 제 123 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 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 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현행과 같음) <삭 제>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71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 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1) (생 략) <br> (2) 발주청은 영 제 122 조제 1 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하거나 취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 며,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 식 또는 별지 제 72 호서식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주청 <br>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 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현황(업체 | 제77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 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1) (현행과 같음) <br> (2) $\qquad$ 법 제36조제7항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1. ~5.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명 • 면허번호 • 대표자 및 소재지) |  |
| 3. 지정날짜 및 유효기간 |  |
| 4. 지정 전문 분야 |  |
|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

(4) 건축사 사망신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축사법」제8조 제3항

| 건축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
| :---: | :---: |
| 제 8 조(자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4 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br> (2) 삭 제 <1977.12.31> <br> (3)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 를 하여야 한다. <br> (4) 삭 제 <1995.1.5.> <br>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 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 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br> 1. 제 28 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br> 2.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 망신고 또는 제 27 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br>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 <br> 제41조(과태료) (1) (생 략)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br> 하는 사람에게는 50 만원 이하의 과 <br> 태료를 부과한다. <br> 1. 제 8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 6 조(사망신고) (1) 법 제8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 망한 건축사의 상속인을 말한다. <br> (2) 제 1 항의 상속인은 그 건축사가 사 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축사 자격 증을 반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건축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
| :---: | :---: |
| 2．～4．（생 략） |  |
| （3）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  |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  |

2）검토의견
－「건축사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 따르면 건 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망 신고를 하여야 하고，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건축사법」에서 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건축사의 상속인에게 건축사의 사망으로 인한 건축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 법률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단지 국토교통 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를 정리하고 건축사의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바，（소관 부처 의 건축사 실태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법 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사망신고의무를 부과 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수 단이라고 생각된다．

3）개선방안
－「건축사법」상 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관련 제재규정을 삭제 한다．만일 제 3 자가 사망한 건축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사업 무를 수행하거나 상속인이 건축사 자격증을 제 3 자에게 빌려 준 경우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건축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8 조（자격）（1）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4 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br> （2）삭 제＜1977．12．31＞ <br> （3）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 를 하여야 한다． <br> （4）삭 제＜1995．1．5．＞ <br> 제41조（과태료）（1）（생 략） <br>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50 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br> 1．제 8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4．（생 략） <br> （3）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 8 조（자격）（1）•（2）（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4）（현행과 같음） <br> 제41조（과태료）（1）（현행과 같음） <br> （2）（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1．～3．（현행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 와 같음） <br> （3）（현행과 같음） |

## 【건축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frac{\text { 제 6 조（사망신고）（1）법 제8조제3항에 }}{\text { 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 | ＜삭 제＞ |
| 사망한 건축사의 상속인을 말한다．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2) 제1항의 상속인은 그 건축사가 사 |  |
| 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사 자격 <br> 증을 반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br>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등 위반

1) 관련 법렁 및 조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9 조(허가 - 등록의 취소 등) (1)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제 3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0. (생 략)
2. 제 1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15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 15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 42. (생 략)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안전관리자) (1)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 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 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 3 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 라 한다)로서 비가연성 - 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3)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다 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 가관청•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 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5) ~ (8) (생 략)
[별표 13의2]

## 행정처분기준(제 15 조의 3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행정처분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 관련 <br> 법규 | 행 정 처 분 |  |  |  |
| :---: | :---: | :---: | :---: | :---: | :---: |
|  |  | 1회 <br> 위반 | 2회 <br>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 1. ~ 20. (생 략) |  |  |  |  |  |
| 21. 법 제 1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제1항 제21호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1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2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6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180일 |
| 22. 법 제 15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 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br> 제 1 항 <br> 제22호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1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2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6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180일 |
| 23. 법 제 15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 은 경우 | 법 제9조 <br> 제 1 항 <br> 제23호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1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br> 20일 | 사업 <br> 정지 <br> 또는 <br> 제한 60일 |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24. ~ 46. (생 략) |  |  |  |  |  |

2) 검토의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사업 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 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 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 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같은 법 제9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는 이상의 의무 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 취소 또는 6 개월 이내의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규 정하여 동일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5 조의 3 과 결부된 별표 13 의 2 2. 21. ~ 23 .까지에서도 그 처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생각건대,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과 선임•해 임 •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나 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들 의무 위반을 동일한 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것은 의무 위반에 대한 형평의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임•해임•퇴 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 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른 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하도록 한다.
- 더 나아가 안전관리자가 영업자의 관리•감독의 범위 밖에 놓이 는 퇴직 시에까지 이를 행정청에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없으면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를 제외하도록 한다.
(4)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등 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6조 제6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16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1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 가대행 업무를 한 자
2. 제 21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 로 등록한 자
3.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 제 23 조제 2 항제 2 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 23 조제 2 항제 5 호를 위반하여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 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6. 제 26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 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 22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 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 (3) (생 략)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26 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1) 제 25 조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 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 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 2) 검토의견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6조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입법자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 인지,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것인지 또는 단순히 제재적 행정조 치만을 취할 것인지에 관해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행정질서 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 다만, 행정법상의 위무위반에 대하여 가장 강한 제재라 할 수 있 는 행정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벌을 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행정목적과 그에 따른 상대방의 침익 정도나 국민의 법 감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 한 것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 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라는 제재가 예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 25 조 제 1 항 제 3 호 참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타당 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유•무 효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인바，등록취소 또 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 결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 이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형벌은 행정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것으로 본 종래의 통설에 비추어 보더 라도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 행정목적과 사회공익 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소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괄 호 안도 이와 마찬가지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바，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유사 입법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 소 또는 업무정지 등）（1）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 만，제 1 호•제 2 호 $\cdot$ 제 6 호 또는 제 8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7．（생 략）
8．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생 략）

## 유사 입법례

제 $\mathbf{3 0}$ 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 자의 업무 계속) (1) 제 29 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 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제5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3 조제 5 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이행 확인을 거짓으로 한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대행자
2. 제 26 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 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 30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5. (생 략)
(2) (생 략)

## 3) 개선방안

-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16조(벌칙) (현행과 같음) |
|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  |
|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1. ~ 5. (생 략) <br> 6. 제 26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등록취 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 결한 자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

（6）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등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73 조 제 1 항 제9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1）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 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8．（생 략）
9．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2）～（5）（생 략）

2）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3 조 제 1 항 각 호에서는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9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 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 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개선 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3 조 제 1 항 제 9 호를 삭제하거나 정 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 사유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7）도시철도운영인력 수급계획 제출

1）관련 법령 및 조문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의 5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 시행령 |
| :---: | :---: |
| 제 21 조（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도시 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 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br> 제 3 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1．～6．（생 략） <br> 7．＂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 터 라목까지의 활동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공사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 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 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19조의5（도시철도운영 인력수급계획 의 수립 등）（1）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 21 조에 따라 5 년 단위의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이하＂인력수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최초 계 획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2）도시철도운영자는 인력수급계획 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 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3）인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도시철도운영인력의 소요현황 및 전망 <br> 2．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방안 <br> 3．자체 교육시설의 확충방안 및 위탁 교육 실시계획 <br> 4．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 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2）검토의견
－「도시철도법」 제21조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도시철도운영인 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제 1 항에서는 인 력수급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는 변경 인력수급계획 제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에서는 인력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에는 공공기 관인 도시철도공사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 를 포함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하는바，법령에서 이러한 인력수급계획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도시철도운영자 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행 「도시철도법」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제재조항을 두고 있 지 아니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인력수급계획 제출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더라도 그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 19 조의 5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 인력수급계획 제출의무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 운 의무이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게다가 해당 조항에서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절 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다만，이에 선행하여 변경 인력수급계획을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해도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업무상 부담 완 화나 실질적 의무 이행 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개선 방안
－「도시철도법」에 인력수급계획 제출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제 2 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 인력수급계획 제출의무는 본래의 인력수 급계획 제출의무와는 다른 새로운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법 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이하에서는（변경）인력수급계획 제출의 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 【도시철도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1조（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도 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 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br> ＜신 설＞ <신 설> | 제21조（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 <br>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영인력 <br> 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br>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br>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br> （2）도시철도운영자는 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급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제 28 조（과태료）（1）제 21 조제 1 항 및 제 2 <br> 항에 따라 인력수급계획 및 변경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bigcirc$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r> （2）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9조의5（도시철도운영 인력수급계획 의 수립 등）（1）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 21 조에 따라 5 년 단위의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이하＂인력수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최초 계 획연도 2 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2）도시철도운영자는 인력수급계획 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 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3）인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도시철도운영인력의 소요현황 및 전망 <br> 2．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방안 <br> 3．자체 교육시설의 확충방안 및 위탁 교육 실시계획 <br> 4．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 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19조의5（도시철도운영 인력수급계획 의 수립 등）（1）（현행과 같음） <br> （2）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 21 조의 22 제2항에 따라 $\qquad$ $\qquad$ $\qquad$ <br> （3）（현행과 같음） |

## （8）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1）관련 법령 및 조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4 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다만，제 11 조제 5 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제 25 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제 22 조（시정조치）（1）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제 7 조제 2 항，제 8 조제 2 항，제 11 조제 1 항（같은 조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12 조，제 13 조，제 14 조，제 15 조제 1 항，제 17 조에 위반되는 행위
2．（생 략）
（2）－（3）（생 략）
제24조（영업정지 등）（1）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잔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1．제 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때
2．제 17 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자본금의 변경，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 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다만，제 25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4．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 • 기피－방해한 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제 21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7．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3）（생 략）

## 2）검토의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서는 부동 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행정소송법」에 따 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 는지 여부의 문제와는 달리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것 인지 또는 그 상대방이 부동산개발업을 양수할 것인지는 원칙적 으로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성질의 것이지 이 를 법령에서 제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양수도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받으면 되는 것이다．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 등록취소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영업양수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등록취소처분을 받고「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

지 중에 있는 경우에 영업을 양수도한 경우에도 영업양수도의 유무효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지 개별법률에서 이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영업정 지기간 중에 있거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행정 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 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같은 조 제 22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 산개발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민사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이행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실익이 없고，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를 명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같은 법 제 24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미 민사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이행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을 것이다．

3）개선방안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도하 는 사례가 많아서 법집행의 실효성이 몰각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28 조 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을 일반에게 알려서 영업양수도계약의 상대방이 영업을 양수하 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에서 영업의 양수도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등 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다만，제 11 조제 5 항 후 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제 24 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에 있는 경우 <br> 2．제 25 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 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삭 제＞ |
| 제22조（시정조치）（1）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 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 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r> 1．제 7 조제 2 항，제 8 조제 2 항，제 11 조 제 1 항（같은 조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12 조，제 13 조， 제 14 조，제 15 조제 1 항，제 17 조에 위 반되는 행위 <br> 2．（생 략） <br> （2）•（3）（생 략） | 제22조（시정조치）（1）（현행과 같음） <br> 1. $\qquad$ $\qquad$ $\qquad$ <br> 제 15 조제 1 항 $\qquad$ $\qquad$ <br> 2．（현행과 같음） <br> （2）－（3）（현행과 같음） |

（9）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도용 금지의 예외

1）관련 법령 및 조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34 조 및 제40조 제6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비밀유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생 략）
6．제 34 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검토의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벌칙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 34 조 본문에서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 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일반적인 업무 상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입법례와 동일한 것이다．그런데 같은 조 단서에서는＂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 견할 수 있도록 형벌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그런데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단서에서는 형벌의 구성 요건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경우 에는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를 매우 불명확한 상태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

3）개선방안
－비밀유지 의무 위반 해당성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 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만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만약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 입법례

【지방세기본법】 제 134 조의 8（비밀유지의무）（1）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 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다만，제 114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제 1 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 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비밀유지)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는 $\qquad$ <br> 1. $\circ \bigcirc$ <br> 2. 00 <br> - <br> $=$ <br> $=$ |

（10）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49 조의 6 제 1 항 제9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8．（생 략）
9．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 24 조제 1 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 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다만，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7．（생 략）
8．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제 1 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2）검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6 제1항 각 호에서는 여객자동 차운송개맹사업자의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9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을 위반한 경우＂는 구성요건이 매우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 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자칫 행정의 자의 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 개선 방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6 제 1 항 제 9 호를 삭제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의 대상 사 유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같은 법 제87조 제 1 항 제 8 호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일괄정비할 필요가 있다.
(11)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5 조 제 1 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터미널사업 • 자동차대 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 허가 • 인가 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 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5 호 • 제 8 호 및 제 39 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 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3. ~ 40. (생 략)
(2) (생 략)
(3) 제 1 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생 략)

##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 <br> 법조문 | 처 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1차 <br> 위반 | 2차 <br> 위 반 | 3차 <br> 위반 |
| 24. 사업 경영부실 | 71.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 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 법 제85 <br> 조제 1 항 | 사업면허 취소. |  |  |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 법조문 | 처 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1 차 <br> 위반 | 2차 <br> 위반 | 3차 <br> 위반 |
|  |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 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 제2호 | 사업등록 취소 |  |  |

2）검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5 조 제 1 항 각 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 등 정지•취소 등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 2 호의＂사업경영의 불확실，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는 제재처분의 구성요건이 매우 불명확하여（법원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겠지만）행정의 수범자가 어느 경우 에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등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수범자의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결부된 별표 327 ．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의 강한 제 재를 가하고 있는바 더욱더 이러한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고 생각된다．
－「철도사업법」 제 1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 45 조의 3 제 1 항 제 3 호도 이와 유사하므로 일괄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입법례

【철도사업법】제16조（면허취소 등）（1）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노선 운행중지• 운행제한•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다만，제4 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생 략）
2．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12．（생 략）
（2）－（3）（생 략）

【자동차관리법】제 45 조의 3 （지정의 취소 등）（1）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 대행자，종합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 만，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 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제 1 호•제 15 호 및 제 18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생 략）
3．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경우
4．～18．（생 략）
（2）（생 략）

3）개선방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5 조 제 1 항 제 2 호를 삭제하거나 국민 의 교통편의 보장을 위해 사업 경영의 불확실 등의 경우 제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또는 하위법 령으로 위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자동차정비책임자 해임 명령

1）관련 법령 및 조문 ：「자동차관리법」제64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점검 • 정비책임자의 선임 등）（1）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 • 정비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 • 정비책임자（이하＂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 고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 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3）제 1 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검토의견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 책임자가＂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 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는 문구가 불명확한 점을 문제 삼기에 앞 서 정비책임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점검• 정비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 는 것이고 법상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책임자에게 명 령이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 이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

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 만일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하고 그에 따라 정비책임자가 해임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해임된 정비책임자는 6개월 동안 정비책임 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자가 정비책임자에 대한 해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등록 취소, 사업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법 제66조 제 1 항 제 13 호 자목)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법 제82조 제7호).

3) 개선 방안

- 정비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이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필요하다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 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로 그 사유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더 나아가 행정형벌은 행정법령 위반에 대한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수단이라 할 것인데,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 정형벌을 통하여 제재함으로써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범죄자로 만드 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입법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5 조(안전관리자) (1)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 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 참고 입법례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 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 (4) (각 호 생략)
(5)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 20 조제 4 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6) 허가관청 •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 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 을 요구할 수 있다.
(7) 허가관청 •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 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 • 인원 • 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휴양펜션업의 등록 취소 등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4조 제7항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6（휴양펜션업의 등록 등）（1）～（6）（생 략）
（7）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삭 제＜2011．5．23＞
2．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 지 아니한 때
3．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8）－（9）（생 략）

2）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74조 제7항 제4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 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구 성요건이 매우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에 등록 또는 승인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 정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자 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74조 제7항 제4호를 삭제하거나 휴양펜션업 등록 또는 승인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정지 처분의 대상 사유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4）철도시설 공동 활용 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
1）관련 법령 및 조문 ：「철도사업법」제49조 제1항 제6호


## 철도사업법

제49조（벌칙）（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생 략）
6．제 31 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3）（생 략）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 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철도차량의 정비 • 검사 • 점검 • 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사고의 복구 및 구조•피난을 위한 설비
4．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2）검토의견
－「철도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위반 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를 보면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철도 역 등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관리자 등＂이라 한 다）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령상 공동 활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도 없고, 철도사 업자가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제한 도 없어 철도사업자가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관리자 등 은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 한 측면이 있다.

- 더 나아가 철도사업자도 사인(私人)이고 관리자 등도 사인인데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국가적 형벌권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 이를 가장 무거운 제재 수단인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매우 과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개선 방안

- 철도사업자가 관리자 등이 관리하는 시설을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공동 활용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그 활용 목적을 어느 정도 제한하여 관리자 등의 부당한 공동 활용의 부담을 완화하 고, 철도사업자의 관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동 활용 요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활용의 내용이나 범위의 대강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공동 활용 요청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제재(행 정형벌로의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제재수단을 강구하더라도 행정형벌보다는 약한 수단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 외에 철도사업법상 관리자 등은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 요 청에 따른 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철

도사업자에 비하여 약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는바 (협정에서 구 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공동 활용에 관한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철도사업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 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 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br> 1. ~ 5. (생 략) |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qquad$ $\qquad$ $\qquad$ $\qquad$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시설 $\qquad$ <br> 1. ~ 5. (현행과 같음) <br> (2) 제 1 항에 따른 시설의 공동 활용 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br> 1. $\mathrm{O} \bigcirc$ <br> 2. OO |
| 제4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 ~ 5. (생 략) <br> 6. 제 31 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br> (2) • (3) (생 략) | 제49조(벌칙) (1) (현행과 같음) <br> 1. ~5. (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2) - (3) (현행과 같음) |

## 6．기 타

（1）골재채취 능력 평가 및 시공 수수료

1）관련 법령 및 조문 ：「골재채취법」제 48 조의 2 제 3 호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 :---: | :---: |
| 제 48 조의 2 （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 <br> 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br> 1．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br> 2．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 는 자 <br> 3．제 22 조의 3 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 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br> 제 22 조의 3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1）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자본 금，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 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br> （2）제 1 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 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골재 채취 현황 보고서，재무상태，그 밖 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 14 조의 4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br> 사항）（1）법 제 22 조의 3 제 2 항에서＂그 <br>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br>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br> 1．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br> 2．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br> 3．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br> 4．골재에 대한「산업표준화법，에 따 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 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br> 제 14 조의 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br> 등）（1）법 제 22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골 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 년 2월 15 일（제 6 호에 따른 서류의 경 우 법인은 4월 15 일，개인은 5 월 31 일） 까지 별지 제 16 호의 2 서식의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br> 1．최근 3 년간의 법 제 22 조에 따라 허 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 는 최근 3 년간의 법 제 32 조에 따라 |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 :---: | :---: |
|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3）제 1 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br> 2．최근 3 년간의 제 13 조에 따른 골재 채취 현황 보고서 <br> 3．「산지관리법」제 25 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허가받은 토석채취（왜골재용） 의 허가증 사본 <br> 4．최근 3 년간의「산지관리법」제 25 조 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r> 5．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 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r> 6．개시대차대조표（신설법인에 한정 한다）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 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 계사 또는「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 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br> 7．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환경－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 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 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r> 8．최근 3 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br> 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업자 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 :---: | :---: |
|  |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br> 10．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 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생 략） <br> 제 14 조의 6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1） 협회는 제 14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골재 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 22조의 3 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 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다 만，제 14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br>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자의 성명을 말한다） <br>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br> 3．골재채취업 등록번호 <br> 4．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br> 5．골재채취능력 <br> （2）협회는 제 1 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 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

2）검토의견
－「골재채취법」 제 48 조의 2 제 3 호에서는 같은 법 제 22 조의 3 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에게 수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같은 법 제22조의 3 제 1 항에 따르 면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것이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법률 상의 혜택이나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므로（좋은 평가 결과를 받 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간접적인 혜택이나 이익에 불과함）그 평가 및 공시에 소 요되는 비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한 측면 이 있다．골재채취업자가 아니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3）개선방안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 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납부 하도록 한 수수료를 없애고，보다 근본적으로는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두는 근본 적인 목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단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 여 골재채취 능력 평가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골재채취업자에 게 본인의 부담 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 【골재채취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48조의2（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br>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br>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br> 하여야 한다． <br> 1．제 14 조제 1 （항에수료）따라 골재채취업 <br> 앵과 같음） <br> 등록하려는 자$\quad$ 1．．2．（현행과 같음） |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  |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 |  |
| 는 자 |  |
|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 <br> 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 삭 제>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개시일 지정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제 7 조(운송 개시)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 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천 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 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제 25 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1)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 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 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개 월 이내로 한다. <br> (2)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 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 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 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3) 관할관청은 제 2 항에 따른 운송개 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 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br> 제 26 조(수송시설의 확인) (1) 법 제7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 11 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치 |
| :---: | :---: |
|  |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r>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 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r> 3. 시설등의 명칭 • 위치 및 규모를 표 시한 명세서 <br> (2) 제 14 조제 1 항 및 제 23 조에 따른 시 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 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 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 설 확인신청서에 제 1 항제 2 호 및 제3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br> (3) (생 략) <br> ※ 제 34 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 는 별지 제 16 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br>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2．수탁자에 관한 제 12 조제 1 항제 5 호 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br> 3．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 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 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br> 4．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 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br>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 허가 신청）법 제 32 조에 따라 자동 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 16 호서식의 자 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할관청 은「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 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br> 1．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br> 2．수탁자에 관한 제 12 조제 1 항제 5 호 가목•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br> 3．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 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 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2）검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 1 항에 따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 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하되, 다만,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명 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률에서는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는 기일 또는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관청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인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정 권한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부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할관청이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 역시 마찬 가지이다.
- 그 밖에 법률의 명시적 수권 근거 없이 운송 개시일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수송시설와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 26 조의 경우 단순한 법률의 집행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법률적 수권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상 사업관리 위탁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제32조상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위탁 허가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일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3）개선방안
－수송시설 확인 및 운송 개시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한 기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자율적으 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7 조（운송 개시）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 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다만，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 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제 7 조（운송 개시）（1） <br>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qquad$ $\qquad$ $\qquad$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 (2) 제1항에 따른 수송시설 확인 및 운 송 개시 기일의 연기나 기간의 연장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제 3 절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 1．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1）고압가스 제조업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1）관련 법령 및 조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6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 4 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1）고 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 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 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 | 제 3 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1）법 제4조제 1 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각 호 생략） （2）법 제4조제 3 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 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다만，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 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br> （3）법 제4조제 3 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 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 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 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 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다 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4) 제 1 항과 제 3 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br> (5)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 려야 한다. | 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br> (4) 법 제 4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 <br> 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 1 항 또는 <br>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br>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br>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 여야 한다. <br>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 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 장이 없을 것 <br> 2.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 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 으로 인정될 것 <br>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 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br>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적합할 것 <br> (5) 법 제4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 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 3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br> (6)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br>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br> 수 있다． |  |

2）검토의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는「고압가스 안 전관리법」 제 4 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1）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 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3）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4）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 합할 것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가관청이 해당 허가를 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허가 관련 법령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 성 인정 확인을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법률상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이는 허가관청이 비용을 들여 확인을 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그런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허가신청을 하는 자 가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 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정상으로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하는 자의 판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

토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허가기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 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제출 이 사실상 강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기술검토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바,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할 수 있다.

- 만일 행정실제에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허가 신청인이 임 의적으로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의 부담으 로 기술검토를 받아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자기비용을 들여 기술검토를 받아 허가를 받은 사람과 행정청의 부담으로 기술검토를 한 후 허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도 발생 할 소지가 있다.

3) 개선 방안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을 허가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그 기술검토에 드는 비용을 행정청 이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또는 허가신청의 필요적 요건으로 명시 함으로써 애초에 허가 신청인의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기술검토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이하에서는 허가의 신청에 따라 이익을 받는 자가 허가 신청에 드는 부담하는 것으 로 하여 후자의 방식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 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1)~(5) (생 략) <br> (6)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1)~ (5) (현행과 같음) <br> (6)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제출하여 야 한다. |

（2）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
1）관련 법령 및 조문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 제 4 조（공사업의 등록） <br> （1）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r> （2）제 1 항에 따른 공사 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br> （3）제 1 항에 따라 공사 업을 등록한 자 중 등 록한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제 2 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등 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공사업의 등록） <br> （1）법 제4조제 2 항에 따 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 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 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별표 3 에 따른 기 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기 관 또는 「전기공사 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 1 호에 따른 자본 금 기준금액의 100 분의 25 이상에 해 당하는 금액의 담보 를 제공받거나 현금 의 예치 또는 출자 를 받은 사실을 증 명하여 발행하는 확 인서를 제출할 것 <br> （2）특별시장 • 광역시 <br>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시•도 지사＂라 한다）는 법 | 제 5 조의 2 （등 록 기 준에 <br> 관한 신고 등）（1）법 제4조제 3 항에 따라 등 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 9 호의 2 서식의 전기 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영 제6조제 2 항에 따 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지정공사 업자단체에 제출하여 야 한다． <br> 1．기업진단보고서 <br> 2．영 제 6 조제 1 항제 2 호 에 따른 확인서 <br> 3．전기공사기술자의 명 단과 해당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br> 4．사무실 사용 관련 서 류：임대차계약서 사 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br> 5．별지 제 11 호서식의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 (4) 시 •도지사는 제1 | 제4조제1항에 따른 공 | 전기공사업 등록수 |
| 항에 따라 공사업의 |  |  |
|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  |  |
| 맟업의 등록수겁을 내주어 청이 | 다음 각 호의 어나 하 | 낭록수첩" 해당하는 경우를 |
| 야 한다. 한다) 사본 |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공사업을 한 자 2．～8．（생 략） | 변경은 제외한다） <br> 5. <br> 전기공사기술자 | 경된 경우：별지 제 16호서식의 전기공사 기술자 보유 현황 （2）～（4）（생 략） |

2）검토의견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 1 항에서는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 제 1 항에서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1）상호 또는 명칭，（2）영업소의 소재지，（3）대표자，（4）자본금， （5）전기공사기술자）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 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 신고 외에「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전기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등록기 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이 지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신고시 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5조제3호），등록기준 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3조제1호）．

-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공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등 록사항 변경등록의무 외에 등록기준 사항에 관한 신고의무를 추 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자는 등록사항 변경이 발 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또 매 3 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 등록기준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무엇보다도 전 기공사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마다 복잡한 절 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참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변 경되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는바 전기공사업자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문 제가 있다.

3) 개선 방안

- 전기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감 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자 등록사항 변 경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비추어 보면 등록기준 사항에 관한 신고사항은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 과 거의 일치하는바 행정청은 등록사항 변경신고제도를 활용하 여 전기공사업자가 법상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감 독하고, 별도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전 기공사업자에게 부담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또한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에 관한 사항 변경을 이유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 니라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공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본금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전기공사업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4 조（공사업의 등록）（1）•（2）（생 략） <br> （3）제 1 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 2 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4）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공사 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 제 4 조（공사업의 등록）（1）•（2）（생 략） ＜삭 제＞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8 조（등록사항 변경신고）（1）법 제9조 | 제 8 조（등록사항 변경신고）（1）（현행과 |
| 제 1 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  |
|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방한 날부터 |  |
| 3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서식의 전기공 |  |
| 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  |
|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 |  |
| 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  |
|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
|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 |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
| 보고서 |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인 등기사항 |
|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2) ~ (4) (생 략) | (2) (4) (현행과 같음) |

## （3）집단에너지사업자 안전관리규정 변경신고

1）관련 법령 및 조문 ：「집단에너지사업법」제 27 조 제 1 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제27조（안전관리규정）（1）사업자는 공급 |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1）법 |
|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 | 제2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 |
|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 | 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
| 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 |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 |
| 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 | 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 |
| 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또한 같다． | 1．안전관리규정 |
| （2）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 | 2．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
| 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변경사유서 |
|  | （2）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 |
| 제5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
| 에 처한다． |  |
| 1．2．（생 략） |  |
| 3．제27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관 |  |
| 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 2）검토의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7 조 제 1 항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 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신 고하도록 하고 있다．

- 여기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 시점이 ‘사 업을 개시하기 전'으로 명확한데, 변경신고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 27 조 제 1 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 조 제 1 항 제2호에 비추어 사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언 제까지 신고하여야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 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 같은 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의 경우도 신고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그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을 2 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의 무 부과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 2．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 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
1）관련 법령 및 조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2 조의 2 제 4 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mathbf{3 1}$ 조의 26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등）（1）법 제 40 조제 2 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는 별표 3 의 9 와 같다．다만，국방부장관이 관장하 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별표 3 의 9 의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과목별 시 간，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1）법 제 65 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 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 2 와 같다．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 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제 1 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 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1 조의 26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검토의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 조의 26 제 1 항에서는 「에너 지이용 합리화법」제 40 조 제 2 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를 별표 3 의 9 로 정하되，다만 국방부장관이 관

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 행규칙」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부령에서 타부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의 2 제 4 항에서도 같은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 조의 26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3）개선 방안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등 이나 조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나 적어도 대통 령령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40 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1）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의 안전관리，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기기의 조종자（이하＂검사대상기기조 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br> （2）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기준 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단서 신설＞ | 제40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br> （현행과 같음） <br> （2） $\qquad$ $\qquad$ $\qquad$ 다만，국방부장관이 관장하 <br> 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


| 현 행 | 개정안 |
| :---: | :---: |
| (3)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 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 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br> (4)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 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 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 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 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 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 자격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br> (3) - (4) (현행과 같음) |
| 제65조(교육)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br> (2) ~ (4) (생 략) | 제65조(교육) (1)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다만, 국방부장관 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br> (2) ~ (4) (현행과 같음)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mathbf{3 1}$ 조의 26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 격 등) (1) 법 제 40 조제 2 항에 따른 검 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 위는 별표 3 의 9 와 같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 의 조종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br> (2) 별표 3 의 9 의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 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 제 31 조의 26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 격 등) (1) $\qquad$ $\qquad$ $\qquad$ <단서 삭제> <br> (2) (현행과 같음) |
| 제 33 조의 2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 한 교육) (1)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 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에 대한 교육의 기관 • 기간 • 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 의 2 와 같다. <br>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br> (3) 제 1 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 한 교육) (1) |
|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제31조의 26 제 1 항 단서 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 |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br>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 <br> 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 <br>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r> (2) ~ (4) (현행과 같음) |

##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중복보고의무 부과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 16 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 :---: | :---: |
| 제19조(보고 및 검사) (1)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br>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 원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 소에서 장부•서류•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br> (3) 제 2 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br> 제 6 조(공동신고) (1) 동일한 해외자원개 발사업에 대하여 2 인 이상이 공동으 로 제 5 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 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 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2)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 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 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 제 16 조(보고) (1)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br>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br> 3. 사업 진행 상황 <br>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br>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br>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 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br> (2) 제 1 항제 3 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 일 이내 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각각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 :--- | :--- |
| 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  |
| （3）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  |
|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  |

2）검토의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여 기서의 보고의무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법인 등이 행정기 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현행 입법례를 보면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1）일반 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과（2）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뉜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 는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의무를 규 정하는 경우에도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 고，필요한 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 는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방식과는 달리 그리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 1 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사업의 착 수 및 종료, (3) 사업 진행 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 고인의 대표자의 변경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제2항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 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에 각각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엄격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법률 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단지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규정 된 보고의무조항에 기대어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관한 광범 위하고 포괄적이며 과다한 보고의무를 거의 정기적으로 부과하 는 것은 해외개발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해외개발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여 이중의 보고의무를 부담 하는 문제가 있다.
- 그 밖에 같은 법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정질 서벌의 구성요건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법률의 명시적 인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률에 해외개발사업자에 대한 보고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조

항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보고권자를 일원화 하여 사업자 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개선방안
－해외사업자에 대한 보고의무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 되，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에서 구체 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고를 요구하는 방 식으로 규율 방식을 전환하고 보고권자를 일원화 하도록 한다．

## 참고 입법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 10 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해외농업개발사 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 9 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해외농업 개발사업자는 법 제 10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60 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제 3 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사업 진행상황
4．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2）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1）관련 법령 및 조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50 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50 조（검사）（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 • 사 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 20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제 24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제 25 조제 1 항 또는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확인 점검 • 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 27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검토의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50 조 제 1 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집단 에너지사업자의 영업소•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조사란＂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 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제5조），원칙적으로 행정조사 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 의 개별법령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 러나 행정조사에 관한 개별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업무에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경우 이는 국민 또는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개별 법에 규정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와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5)}$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0조 제 1 항은 검사의 목적•범위 등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물론 법률에서 행정조사 의 목적이나 범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필요하다고 인정하면＇행 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권한 행사 의 범위는＂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로 이 해하여야 할 것이나，행정조사의 목적•범위 등을 명시하지 아 니하고 포괄적인 권한행사규정을 두면 행정의 자의적이고 편의 적인 권한행사를 가능하게 하고136）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 능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 국민에게 적지 아니한 부담을 줄 수 있다．137）

135）국회법제실，앞의 책， 965 쪽 참조．
136）윤장근，출입검사 및 질문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http：／／www．moleg．go．kr／knowledge／ monthlyPublication？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b6\％9c\％ec\％9e\％85＋\％ea $\% \mathrm{~b} 2 \% 80 \% \mathrm{ec} \% 82 \% \mathrm{ac} \& \mathrm{mpbLegPstSeq}=129347>$ 참조．
137）강현철•이세정，앞의 보고서，61쪽 이하 참조．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와 유사한

- 더 나아가 같은 법 제58조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데,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는 법률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 개선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 는 행정조사 대상. 범위 등을 법률에서 직접 또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9]
## 4．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1）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1）관련 법령 및 조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5 조 및 제 36 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 35 조의 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br> （1）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 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br> 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 관 또는 단체인 경우 <br> 2．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 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 지 못한 경우 <br> 3．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 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r> 가．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1）법 제 3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기술신탁관 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1．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br> 2．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br> 3．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br> 4．신청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br> 5．정관 또는 규약 <br> 6．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br> 7．재무제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4）（생 략） <br> 제 35 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br> （1）법 제 3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기술신 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기 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 35 조의 7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 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 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 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 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 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 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 •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3)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 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 인신청 및 승인절차) (1) 기술신탁관 리기관이 법 제 35 조의 2 제 7 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 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 을 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 의 2 제 7 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 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br>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br> 법률 시행령 |
| :---: | :---: |
| 것으로 본다． <br> （5）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 는 경우에는 제 4 항의 허가 처리 기간 을 10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br> （6）제 1 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기술신탁관리 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 여 기술등의 위탁자，이용자，그 밖 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 와 관련된 자（이하＂기술위탁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br> （7）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 인할 수 있다． <br> （8）제 7 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지 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 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2）검토의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 조 제 1 항 에서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 조의 2 제 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기술신탁관 리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 34 조 제 1 항 제 1 호의 기술

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 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이（1）법 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2）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3）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 관이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변경허가，변경사실 통보，휴업•폐업 통보에 관한 사항 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에 관 한 법률적 근거만 있을 뿐 이상의 각종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 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7항 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이와 관련하여 같 은 법 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서면으로＂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더 나아가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 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 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이러한 승인신청 방법•절차나 변경승인을 받을 의무 등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결정시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 므로 법률의 근거를 두거나 법률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 조의 2 제 8 항 에서는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임 대상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개선 방안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방법•절차에 관한 수임 대상 법령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고，변경승인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두도록 한다．
－그 밖에 현행「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의 2 는 세부 조항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고 기술신탁관리업의 허 가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소 이질적이므로 분 조（分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제시한다．하위법령 개선안은 법률 개 선안에 맞춰 조정하면 될 것이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 （1）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 | （1）（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  |
| ＜신 설＞ | （2）제 1 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
|  | 허가를 받은 자（이하＂기술신탁관리 |
|  | 기관＂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 |
|  |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산 |
|  |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ㅂ하여야 |
|  | 한다． |
| （2）～（5）（생 략） | （3）～（6）（현행 제 2 항부터 제 5 항까 지와 같음） |
| ＜신 설＞ | （7）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 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 |
|  |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br>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
|  | 사실 및 사유를 통ㅂ하여야 한다． |
| （6）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 제35조의3（기술 수수료 등）（1）기술신 |
| 허가를 받은 자（이하＂기술신탁관리 | 탁관리기관이－－－－－－－－－－－－－－－－－－－－－－－－－－－－－－－－－ |
| 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 |  |
| 여 기술등의 위탁자，이용자，그 밖 |  |
| 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 |  |
| 와 관련된 자（이하＂기술위탁자등＂ |  |
| 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
| （7）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 | （2）제1항에 따른－－－－－－－－－－－－－－－－－－－－－－－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 인할 수 있다. <br> (8) 제 7 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 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br> (3) 제 2 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qquad$ $\qquad$ $\qquad$ |

（2）고압가스 제조 등 허가 기준
1）관련 법령 및 조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4항 제3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 4 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1）고 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 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 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4）제 1 항과 제 3 항에 따른 허가의 | 제 3 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1）법 제4조제 1 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각 호 생략） （2）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 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다만，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 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br> （3）법 제4조제 3 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内容積） 1 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 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 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 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다 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 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 하는 것은 제외한다．（각 호 생략） （4）법 제 4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 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br> (5)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 려야 한다.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 여야 한다. <br>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 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br> 2.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 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 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 로 인정될 것 <br>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 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br>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적합할 것 <br> (5) 법 제4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 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br> (6)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2）검토의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는 허가관 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을 고압가스 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고압가스 판매 허가 기준으로 들고 있다．이와 같은 지역 제한은 국민의 헌법 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어디서도 허가관청에게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일정 한 지역에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바，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3호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시설 설 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할 재량권을 부여 하는 문제가 있다．

3）개선방안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 여 일정한 지역에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한다．이 경우 허가관청이 미리 고압가스 관련 허가가 금지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법과 신청을 받은 뒤 해당 허가신청 지역에서의 허가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허가관청이 미리 고압가스 관련 허가가 금지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현 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후자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한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4 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1) 고 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 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 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신 설> | 제 4 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1)~ <br> (3) (현행과 같음) <br> (4) 시장 $\cdot$ 군수 . 구청장은 제 1 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 |


| 현 행 | 개정안 |
| :---: | :---: |
| (4) 제 1 항과 제 3 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 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 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br> (5)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 려야 한다. | 한할 수 있다. <br> (5) (현행 제4항과 같음) <br> (6) (현행 제 5 항과 같음)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 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1)~(3) (생 략) <br> (4) 법 제 4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 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 여야 한다. <br>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 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 제 3 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1)~(3) (현행과 같음) <br> (4) (현행과 같음) <br> 1. - 2.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 장이 없을 것 <br> 2.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 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 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 로 인정될 것 <br>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 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br>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적합할 것 <br> (5)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 3 항에 따 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br> (6)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삭 제> <br> 3. (현행 제 4 호와 같음) <br> (5) (현행과 같음) <br> (6) * 고압가스 제조 등 허가기준(1) 사례 참조 |

（3）고압가스 안전성향상계획 변경 작성•제출 등 의무
1）관련 법령 및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 13 조의 2 （안전성 평가 등）（1）제 11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 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 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이 경우 안전 성향상계획에는 제 28 조에 따른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br> （2）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br> （3）제 1 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br> （4）제 1 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 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제 11 조（안전성 평가 등）（1）법 제 13 조 의 2 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 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 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 치－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 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2）제 1 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 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 소에 갖춰놓아야 한다．다만，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 （3）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관 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br> （4）법 제 13 조의 2 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공정안전보 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 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 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 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검토의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에서는「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 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 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같은 법 제13조의 2 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등에 대한 변경계획 제출의무에 관하여 전 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률유보의 원칙상 이와 같은 변경 계획 제출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는＂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 소에 갖춰놓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이 최초로 안전성향상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을 말하는 것인지 변경계획을 제출한 사

업자등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만일 전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사업자등에 대한 새로운 의무 부과에 관한 사 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 이고，후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률에 근거를 두는 외에 최초로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에게는 5년마다 변경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에게만 변경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3 항에서는 같은 조 제 1 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 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이는 사업자등에 대한 새로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3）개선 방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변경안전성향상계획 제출 의무 부과， 5 년마다 안전성 재평가 실시 및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비치 의무 부과，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 및 제출 의무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1）제11조 <br>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 |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1）＊고압 <br> 가스 제조 등 허가기준（3）사례 참조.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 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 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 성향상계획에는 제 28 조에 따른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br> (2)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 할 수 있다. <br> <신 설> <br> <신 설> <br> <신 설> | (2) (현행과 같음) <br> (3) 제 1 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 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 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 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4) 제 1 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 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 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 가관청에 제출하고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 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 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 1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br> （3）제 1 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br> （4）제 1 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 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평가 결과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 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 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 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6）제 3 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 49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 였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향상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 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br> （7）제1항 및 제3항－－ $\qquad$ $\qquad$ $\qquad$ <br> （8）（현행 제 4 항과 같음）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
| :---: | :--- |
| 개정안 |  |
| 제11조（안전성 평가 등）（1）법 제13조 | 삭 제＞ |
| 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 |  |
| 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 |  |
| 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 |  |
| 치 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 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2) 제 1 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 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 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관 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  |

（4）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

1）관련 법령 및 조문：「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제3항

| 유통산업발 |  |
| :---: | :---: |
| 제 12 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br> （1）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 <br> 의 업무를 수행한다． <br> 1．상거래질서의 확립 <br> 2．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 속한 처리 <br> 3．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br> （2）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br> 1．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 하는 자 <br> 2．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입점상인（入店商人）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 또는「상법」에 따른 법인 <br> 나．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 른 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 라 한다）또는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사 | 제 6 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1） 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 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1．법 제 12 조제 2 항 각호의 1 에 해당함 을 증명하는 서류 <br> 2．입점상인의 현황 <br> 3．정관 또는 자치규약 <br> （2）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대규모점 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한다． <br> 1．법인，조합，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 12 조제 2 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 상인 2 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 한 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법인 ． 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및 상호 <br> 2．매장면적의 10 분의 1 이상의 증감 <br> 3．업 태 |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 :---: | :---: |
| 업조합"이라 한다) <br> 다. 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의 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 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 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 야 한다. <br>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입점상인 2 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 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 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4) (생 략) | (3) 법 제 12 조제 3 항 후단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4)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대 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 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검토의견

- 「유통산업발전법」제 12 조 제 1 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 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 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 규모점포에서는 (1) 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2）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i）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 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법」에 따른 법인，ii）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 항제 1 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사업협동 조합，iii）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 체（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i）～iii）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 분의 1 이상이 동의하 여 지정하는 자（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 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함）가 위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문장을 보면 ‘목적어’를 빠뜨려 법문언만으로는 신고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이 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1）법 제 12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입점상 인의 현황，（3）정관 또는 자치규약을 신고시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오히려 제 12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의 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신 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의 규정내용만을 보면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본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
－물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 기 때문에 의무 이행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에서 신고의무의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함으 로써 하위법령에서 입법자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신고사항으 로 추가하여 신고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신고의무의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률문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 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 밖에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 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 1 항의 신고사항(1) 법 제 12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 규약)과 제 2 항의 신고사항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 12 조 제 2 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 분의 1 이상이 동 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조합 또는 자치 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 분의 1 이상의 증감, (3) 업태] 을 비교해 보면 양자가 상이한 문제가 있다.
- 만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중 매 장면적에 관한 사항과 업태에 관한 사항은 대규모점포등개설 등 록사항이라고 생각됨)이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하려면 법 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한 경우 신고 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5）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전력시설물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 근거

1）관련 법령 및 조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27 조 제 6 항

|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 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1．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설계 업＂이라 한다） <br> 2．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감 리업＂이라 한다） <br> （2）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종 류별 등록 기준，영업 범위，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br> （3）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 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 어서는 아니 된다． <br> （4）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설계•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제 27 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1）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 와 같고，전력시설 물의 공사감리업（이하＂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 업 범위는 별표 5 와 같다． <br> （2）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 의 기준을 갖 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 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 에 따른 자본금 기 준금액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 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3）～（5）（생 략） <br> （6）「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 면 제1항과 제 2 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 치하여야 한다． |

2）검토의견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 제 1 항에서는 전력시설물 설계업이나 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종류별 등록 기준，영업 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부터 제 5 항까지에서는 전력시설물 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 기준，영업 범위，등록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이에 덧붙여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전력시 설물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2년 12월 11일자「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7800 호）개정시에 도입된 것인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개정 이유에도 도입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떠한 이유로 이 조항이 신설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정부조달 에 관한 협정」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우리 나라에서도 전력시설물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다만，국 가 간의 협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전력 시설물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영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전력

시설물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등록제도의 중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개선방안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법인의 전력시설물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등록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 전력기술관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 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1．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설계 업＂이라 한다） <br> 2．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br> ＜신 설＞ <br> （2）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종 류별 등록 기준，영업 범위，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br> （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 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 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설계 업＂이라 한다） <br> 2．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br> （2）「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 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6）（현행 제 2 항부터 제 5 항까 지와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 |  |
|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 |  |
| 어서는 아니 된다． |  |
| （4）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 |  |
|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
| 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 （5）설계 •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 |  |
|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  |
| 시한다． |  |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br> 기준 등）（1）～（5）（생 략） <br> （6）「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br>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br> 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 <br> 면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등록 기준 <br>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상법」 <br>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 <br> 치하여야 한다． |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br> 기준 등）（1）～（5）（현행과 같음） <br> （6）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정부조달 <br> 에 관한 협정」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

（6）전시산업발전법 휴업 신고 규정 마련
1）관련 법령 및 조문 ：「전시산업발전법」제 10 조 제 3 호

## 전시산업발전법

제 10 조（등록의 취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7 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제 9 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 7 조（전시사업자의 등록）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2）검토의견

－「전시산업발전법」 제 28 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사업 자가（1）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 여 휴업한 경우，（3）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 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산업발전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제7조），전시사업자가 휴업한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행 정청이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영업자와의 사이에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휴업사실에 대

한 확인 등 관리감독을 하기 위하여 휴업 신고 규정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 전시사업자 휴업 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전시산업발전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7 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신 설> | 제 7 조(전시사업자의 등록 등) (1) (현 행 제7조와 같음) <br> (2) 제 1 항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 록한 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7）집단에너지 사업자 휴업 및 폐업 허가 신청방법•절차 등

1）관련 법령 및 조문 ：「집단에너지사업법」제 14 조 제 1 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1）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2）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 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 <br> （3）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 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 시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15 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 <br> 청）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의 휴 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만，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 는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5 호의 서류만 을 첨부할 수 있다． <br> 1．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br> 2．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 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 만분의 1 지 형도 <br> 3．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 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br> 4．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 년간의 사 업연도별 수지개산서 <br> 5．사업허가증 <br> 제 17 조（사업의 재개신고）법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 12 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검토의견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4 조제 1 항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그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도록 하 는 신고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그 휴 업이나 폐업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을 고려하 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어떠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 업 또는 폐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집단에너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 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새 로운 비용을 부담지우는 것인바,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 이 사업의 개시신고시 제출 서식 및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데, 신고의무의 이행과 관련되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 집단에너지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및 재개 업 신고방법 및 절차 규정의 법률적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1）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2）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다． <br> （3）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 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 시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br> 해산）（1） $\qquad$ $\qquad$ <br>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qquad$ $\qquad$ <br> （2）（현행과 같음） <br> （3） $\qquad$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

## 5．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1）엔지니어링 사업자 휴업 시 신고 직권 말소
1）관련 법령 및 조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제 2 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홍법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1）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 • 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제 21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 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제 21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 한 경우

5．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 （危害）를 끼친 경우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3）제 1 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 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 분，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업을 한 경우에 는 사업자에게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휴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신고가 말소 된 사업자는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 으므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만일 이 규정을 근거로 휴업을 한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경우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 개선 방안

- 휴업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직권 신고 말소 규정을 삭제 하거나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어느 정도 객관적 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말소하도록 한다.
-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 상실처분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사항 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 한 효력상실처분 등) (1) (생 략) <br>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제 21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br> (3) 제 1 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br>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 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 한 효력상실처분 등) (1) (현행과 같음) <br> (2) $\qquad$ $\qquad$ $\qquad$ 폐업 $\qquad$ $\qquad$ $\qquad$ <br> (3) - (4) (현행과 같음) |

（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사실 공고
1）관련 법령 및 조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5조 제2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 :---: | :---: |
|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 한 효력상실처분 등）（1）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 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 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br> （2）－（3）（생 략） <br>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 정지처분，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5 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 한 효력상실처분 등）（1）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 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 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검토의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35 조 제 2 항에서는 법률의 명 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 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공고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하여 그 결 과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일 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위반행 위자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간접적으로는 행 정규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입 법례에 따라 이를 '공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공고 또는 공표제도는 형사벌 등과 달리 담당행정청은 간이한 수법을 발하면서 악덕업자에게는 효과가 크다는 것, 신 용을 중시하는 자에게는 효과가 절대적이라는 것(거래나 종업원 의 모집에 악영향이 있다), 처벌 등 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방법 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새로운 실효 성 확보 수단으로 확대 도입되는 경향에 있다.
- 이러한 공고 또는 공표는 그 자체로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 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공고 또는 공표가 행해지면 사실상 상대방의 명예나 프라이버 시, 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인격권•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행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 행규칙에서 공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고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하 기 어려우나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이나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외에 공고라는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는 것을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공고를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 고 공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관련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소관「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에서는 건 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 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을 공고하고，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등록말소 등의 공고）（1）국토교통부장관은 제 81 조， 제 82 조，제 82 조의 2 ，제 83 조 및 제 101 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공 사 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3）개선방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이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신고 말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 토한 뒤，필요하면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공고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 한 효력상실처분 등）（1）（생 략） （2） <br> （3）제 1 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br>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 업정지처분，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1）（현행과 같음） <br> （2）＊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시 신고 직권 말소 사례 참조 <br>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 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br> （4）－ <br> （5）（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5 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 한 효력상실처분 등）（1）법 제24조제 1 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 제 1 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 |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1）（현행과 같음） <br> （2） $\qquad$ $\qquad$ $\qquad$ |

제 3 절 산업 - 자원 관련 법제 분야

| 현 행 | 개정안 |
| :---: | :--- |
| 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 | --------------------------------다음 각 |
| 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
|  | --------------- |
|  | $\underline{1.00}$ |
|  | $\underline{2 . O O}$ |
|  | $=$ |
|  | $=$ |
|  | $=$ |

（3）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1）관련 법령 및 조문 ：「유통산업발전법」 제 52 조 제 2 항 제 2 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과태료）（1）（생 략）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 8 조제 1 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제 12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 니한 자
3．제 1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제 29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제 45 조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3）（생 략）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1）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상거래질서의 확립
2．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매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입점상인（入店商人）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 법」에 따른 법인
나．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라 한다）또는 같은 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사업조합＂이라 한다）
다．입점상인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이 경우 6 개 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 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 상인 2 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이 경우 6 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3）제 2 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 1 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 1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 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같은 법 제 1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는（1）상거래질서의 확립，（2）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 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 불만의 신속한 처리，（3）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이는 업무라기보다는 영업과 관련한 일종의 준수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상거래 질서의 확립，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 불만의 신속한 처리，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 •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어느 경우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고 어느 경우에 이러한 업무를 수 행하지 않았는지,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수행한 경우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에게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하려면 그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때 사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이 해야 할 업무와 국가 등 행정주체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검토하여 후자가 해야 할 임 무를 사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에게 부담지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 불만이 대규모인 경 우 사인이 이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4）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검사 거부 및 안전관리규정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관련 법령 및 조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58 조 제 2 호 및 제 3 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mathbf{5 8}$ 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 20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제 24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제 25 조제 1 항 또는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확인 점검•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 27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안전관리규정）（1）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mathbf{5 0}$ 조（검사）（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 생산자의 영업소 • 사 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검토의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58 조 제 2 호에서는 같은 법 제 50 조 제 1 항 에 따른 행정조사적 성격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고，같은 법 제 58 조 제 3 호에서는 같은 법 제 27 조 제 1 항을 위반

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역시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 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138)}$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실효 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간접적으로는 이를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의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도 갖는다．행정벌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뉜다．즉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 여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개의 형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형벌 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139）및 개별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것이 행정질서벌이다．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행정형벌은 행정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지는 것인 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예컨대，신고•보고•장부비치 의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것으로서， 140 ）행 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목 적 침해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138）김남진 • 김연태，행정 법 I，법문사，2010，498쪽．
139）행정질서벌에 관해서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종래 통칙적 규정이 없어 행정 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 다．이에 따라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규 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적지 않았다．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 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다．
140）대법원 1969．7． 29,69 마 400 결정．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 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바，141）그 에 따라 양자의 구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즉 최근「형사소 송법」에 의한 행정형벌의 부과가 절차상 복잡할 뿐 아니라，형사 소송에 대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해 행정 의 주도권이 검찰에 넘겨지고，형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기 때 문에 행정형벌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근 거로 종래 행정형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대폭 과태료로 전환 하고 있다．이렇게 전환되는 과태료는 예외 없이 먼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종래의 행정형벌에서 전환된 과태료가 통설에 서 말하는 ‘행정목적에 대한 간접적 침해위험성’에만 한정되지 않고，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하는 입법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양자의 구별은 상대화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刑種）과 형량（刑量）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141）다만，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책임의식의 해이와 국민들에 대한 절차상 보호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홍정선，행정법원론 （상），박영사，2012，616쪽 참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42)고 판시하여 종래의 통설의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양자의 구별의 상대화에 무 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최근의 입법례 및 판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행정형 벌은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데 반해, 행정 질서벌은 (1)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 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과태료로써 충분히 그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와 (2)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 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43)}$
-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도 행정목적달성 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처벌을 억제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일하거나 유 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 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표와 같은 의 무위반유형은 가능한 과태료로 처분하도록 하되, 다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관련성이 깊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144)

142) 헌재결 1994. 4. 28 , 91 헌바 14.
14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340 쪽.
144) 법제처, 앞의 책, 509 쪽 이하 참조. 국회법제실에서 발간한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예외의 유형을 열 거하고 있다. 국회법제실, 앞의 책, 1120 쪽 이하 참조.

##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및 예외 유형>

|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유형 | 과태료 처분 대상 예외 유형 |
| :---: | :---: |
|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 -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라도 이와 관 련성이 깊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 요한 사항 <br> - 행정질서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과 안 전의 확보를 크게 저해하는 사항 <br> -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 (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등) <br> - 기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 <br> 드시 형벌로 처벌하여야 할 사항 등 |
|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  |
| 시노 사업 등의 양도 • 양수 • 승계 |  |
| 위반 $\begin{array}{l}\text { 종업원 임면 } \\ \\ \\ \text { (법정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end{array}$ |  |
| 기타 신고 또는 신청 |  |
| 장부의 작성 - 비치 - 보존의무위반 |  |
|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위 반 등 |  |
| 허가증 - 등록증 등의 반납불이행 |  |
|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 등 명령위반, 정기보고 등의 위반 |  |
| $\begin{aligned} & \text {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 \\ & \text { 기피 } \end{aligned}$ |  |
| 유사명칭 사용금지위반 |  |
| 겸직금지위반 |  |
|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에의 출 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  |
|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 인된 요금 외의 요금수수 |  |
| 기타 경미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의 위반 |  |

－이상에 따르면「집단에너지사업법」상 검사 등의 기피행위나 안 전관리규정 신고의무 불이행은 행정목적을 집적 침해하는 행위 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위의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인바，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한 제재 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3）개선방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검사 기피행위，안전관리규정 신고의무 불이 행에 대한 행정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되，과태료의 상한은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여 정한다．현행「집단에너지법」상 과태료의 상한은 200 만원으로 단일하므로 이 하에서는 그에 맞춰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한다．

##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5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br> 1．제 20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회계 를 처리한 자 <br> 2．제 24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제 25조제 1 항 또는 제 50 조제 1 항에 따 른 확인점검•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 27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관 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58조（벌칙）（현행과 같음） <br> 1．（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삭 제＞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6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r> 1. 제 12 조제 3 항 • 제 17 조제 1 항 또는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br> 2. 제 17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공급규 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 지 아니한 자 <br> <신 설> <br> 3. 제 34 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 용한 자 <br> <신 설> <br> (2) (생 략) | 제60조(과태료) (1) (현행과 같음) <br> 1. • 2. (현행과 같음) <br> 2의2. 제 27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br> 3. (현행과 같음) <br> 4.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를 거 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br> (2) (현행과 같음) |

## 6．기 타

（1）고압가스사업자등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의무

1）관련 법령 및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 13 조의 2 （안전성 평가 등）（1）제 11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 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 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이 경우 안전 성향상계획에는 제 28 조에 따른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br> （2）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br> （3）제 1 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br> （4）제 1 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 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br> 제 40 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생 략） | 제 10 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1）법 제 13 조의 2 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공정안전 자료 <br> 2．안전성 평가서 <br> 3．안전운전계획 <br> 4．비상조치계획 <br> 5．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br> （2）법 제 4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 13 조의 2 에 따른 안전성 향상계획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 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 에 대하여 제 11 조제 4 항 또는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제 33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이하＂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 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 께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제 3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begin{aligned} & \text { 5. 제 } 13 \text { 조의 } 2 \text { 제 } 3 \text { 항에 따른 안전성향 } \\ & \text { 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6 . \cdot 7 . \text { (생 략) } \end{aligned}$ |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br> (3) 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br> 제 3 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1)~ (3) (생 략) <br> (4) 법 제 4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 른 허가관청은 법 제 4 조제 1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 여야 한다. <br>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 을 것 <br> 2. 법 제 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 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 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 로 인정될 것 <br>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 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br>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적합할 것 <br> (5) . (6) (생 략) |

2）검토의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에서는 같은 법 제 11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 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에 따 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 11 조 제 4 항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 조의 8 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허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 경우「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상＇안전성향상계획’은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허가를 받은 후，안전성 평가를 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허 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 받은 시설이 없고 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할 수가 없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허가 신청인이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 해서 허가신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 2 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 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더 나아가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 밖에 같은 법 제40조 제5호에서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작성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인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개선방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허가받은 후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 도록 하는 것과 허가신청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 도록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허가 신청시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한다．
－안전성향상계획 제출－비치의무 및 그 이행의무의 성실한 이행 과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출 기한을 법정하 도록 한다．
－더 나아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에서는＂안전성 향상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규 정하고 있는데，안전성향상계획 이행상황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일단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3 조의 2 （안전성 평가 등）（1）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 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 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이 경우 안전 성향상계획에는 제 28 조에 따른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br> （2）～（4）（생 략） |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1）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2）～（4）（현행과 같음）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1）법 | 제 10 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1）（현 |
|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 획에 |  |
| 행과 같음） |  |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
| 한다． |  |
| 1．공정안전 자료 |  |
| 2．안전성 평가서 |  |
| 3．안전운전계획 |  |
| 4．비상조치계획 |  |
| 5．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 |  |
|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하여 고시하는 사항 |  |
| （2）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삭 제＞ |


| 현 행 | 개정안 |
| :---: | :---: |
|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 13 조의 2 에 따른 안전성 향상계획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 49조의 2 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 에 대하여 제 11 조제 4 항 또는「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이하＂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 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 께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제3조제4 항제 2 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br> （3）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은 $\bigcirc \bigcirc$ 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3）（현행 과 같음） |

##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1) 관련 법령 및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 13 조 제 4 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15조(안전관리자) (1) 사업자등과 제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 20 조제 4 항에 따른 특정고압 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 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br>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 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br> 2. 제4조제 3 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 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 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br> (3)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안전관 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 | 제 13 조(안전관리자의 업무) (1) 법 제 15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br>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 설 - 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br>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br> 3. 법 제 10 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 행 확인 <br> 4. 법 제 11 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 보존 <br>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 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지휘 - 감독 <br>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br> (2)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br>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제 1 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 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br> (3)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br>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 의 총괄 <br>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 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 전에 대한 직접 관리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가관청 -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 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 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 부터 30 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br> (4)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안전관 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br> (5) ~ (7) (생 략) <br> (8)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 - 인원 • 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제 9 조(허가 - 등록의 취소 등) (1) 허가 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 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제 3 호 또는 제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 20. (생 략) <br> 21. 제 1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관 |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 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 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 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 휘 - 감독 <br>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 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br> (4) 법 제 15 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 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 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 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br> (5) 법 제 15 조제 4 항 및 이 조 제 4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br>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 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 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br>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 관리원 <br>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 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 사하고 있는 자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 | :---: |
| 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22．～42．（생 략） |  |
| （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  |
|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 |  |
| 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 제4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
| 에 처한다． |  |
| 1．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  |
|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  |
| 2．제 15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 |  |
| 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  |
| 아니한 자 |  |

2）검토의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는「고압가스 안 전관리법」 제 15 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 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 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같은 법 제 15 조 제 3 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 등에 신고하고，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 터 30 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 등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같은 법 제41조 제2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데， 일선 행정에서는 자칫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하고 직무대 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재를 가하는 등 법령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불 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16 조 제 5 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일 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정비 대상 입법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1）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각 호 생략）
（2）삭 제＜2010．7．26＞
（3）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4）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각 호 생략）
（5）법 제 29 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 리자의 해임 신고 또는 퇴직 신고를 한 후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다른 안전 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6）법 제 29 조제 3 항과 이 조 제 5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 6 조（안전관리자의 업무）（1）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각 호 생략）
（2）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제 1 항 각 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 정비 대상 입법례

(3)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 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 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법 제 16 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 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 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5) 법 제 16 조제 3 항과 이 조 제 4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3) 개선 방안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퇴직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 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 록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5조(안전관리자) (1) 사업자등과 제 | 제15조(안전관리자) (1) • (2) (현행과 같음) |
|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 |  |
| 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  |
|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 |  |
| 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  |
|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 20 조제 4 항에 따른 특정고압 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 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 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 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 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는 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br>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 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br> 2. 제4조제 3 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 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 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br> (3)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안전관 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 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를 허가관청 •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다른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 가관청 •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이 경우 <br>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자를 선임한 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br> (4) 제 3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한 자가 그 기간 |


| 현 행 | 개정안 |
| :---: | :---: |
| (4)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안전관 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br> (5) ~ (7) (생 략) <br> (8)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 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 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br>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 <br>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 <br> 장할 수 있다. <br> (5) (현행 제4항과 같음) <br> (6) ~ (8)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 지와 같음) <br> (9) (현행 제 8 항과 같음) |

(3) 석유정제업자의 결격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6조 제6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6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 13 조(등록의 취소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3. (생 략)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15. (생 략)
(2) ~ (5) (생 략)
2) 검토의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 제6호에서는 결격사유 등 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 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 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 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일반국민의 건강.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 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처럼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질서의 유지를 통 해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 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 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직업(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제한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 여야 할 것이다.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이 충족 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 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는바，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 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 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전력기술관리법」 제 15 조 제 5 호，「전시산업발전법」 제9조 제 2 호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0 조 제 3 호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일 괄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 대상 입법례

【전력기술관리법】 제 15 조（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 14 조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 16 조에 따라 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6．임원 중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시산업발전법】 제 9 조（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제 10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대표자가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0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정비 대상 입법례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 15 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법인

3）개선 방안
－석유정제업자의 결격사유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를 삭제한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6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제 $\mathbf{6}$ 조（결격사유）（현행과 같음） |
| 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 |  |
| 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  |
| 1．미성년자 | 1．～5．（현행과 같음） |
|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  |
|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  |
|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br>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 6. 제 13 조제 1 항(제 4 호는 제외한다)---- |
| 6.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  |
|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 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7. 대표자가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7. (현행과 같음) |

（4）석탄광업자•석탄가공업자 품질분석시험시설 설치의무

1）관련 법령 및 조문 ：「석탄산업법」 제 25 조 제 2 항 및 제 45 조 제2항 제2호

## 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1）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1）（생 략）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 25 조제 2 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3）•（4）（생 략）

2）검토의견
－「석탄산업법」 제 25 조 제 2 항에서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 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석탄산업법」에서는 품 질분석시험시설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그 시설로 어떠한 시험을 어떻게 실

시하여야 하는지, 시험 결과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의무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질서벌 구성요건의 불 명확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이 매 우 낮아 상당한 비용이 드는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느니 과 태료를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거의 담보되기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 품질분석시험시설 설치의무를 도입한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시험 시설을 설치하여 석탄이나 석탄가공품의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단지 석 탄광업자나 석탄가공업자에게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도의 의미라 면 석탄광업자나 석탄가공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선방안

-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가 품질기준의 자율적인 유지라는 행정 목적의 실현으로 연결되도록 시험방법,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 등 에 관한 사항, 의무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체 시험결과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석탄 산업법」 제 25 조 제 3 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 검사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품질기준 유지를 유 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 7 조 제 3 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 제 11 조(공급자의 의무) (1)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 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 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 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 도하여야 한다. <br> (2)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 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자는 제1항에 따른 안 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 27 | 제 7 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br> 1. 법 제 12 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 하여 허가관청이 정 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자 <br>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 19 조의2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자 <br>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 11 조에 따른 공 급자 의무의 이행 및 | 제24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1) 법 제 12 조제 6 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 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 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 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 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하여 는 1년에 1회 확인•평 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종합 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확인•평가 의 결과에 따라 5 년의 범위에서 평가의 주기 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 7 조제 3 호에 따라 정 기검사가 면제되는 액 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자는 정기검사가 면제 되는 기간 동안 확인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 액화석유가스의 <br>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 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에 맞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면 그 수요자에게 해 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br> (3)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 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 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 지 아니하면 가스 공 급 차단 등 위해를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 고,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그 수요자가 소 재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br> (4) 삭 제 <2009.3.25> (5) 제 1 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 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 법 제 23 조에 따른 판 매 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안전관리 능 력이 우수하다고 인 정하는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자 | (2) - (3) (생 략)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 제 23 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와 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자가 일반 수요 자에게 액화석유가스 를 판매하거나 액화석 유가스 위탁운송사업 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 화석유가스를 운송하 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공급 방 법에 따라야 한다. <br> 제42조(권한의 위임•위 탁) (1) (생 략) <br> (2) 이 법에 따른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br> 1. 제 12 조제 6 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br> 2.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br> 3. 제 18 조제 2 항에 따른 완성검사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 | :---: | :---: |
| 4. 제 19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 시검사 <br> 5. 제 20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 의 검사 <br> 6.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 의 수집과 검사 <br> 7. 제 27 조제 2 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 <br> 8. 제 28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br> 9.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br> 10. 제 29 조제 2 항에 따 른 시설등의 사용정 지 명령 <br> 11. 검사기관이 실시하 는 검사 업무에 대 한 지도와 확인 |  |  |

2) 검토의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액화 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를 제외한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1) 법 제 12 조에 따른 안 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 사에서 최근 2 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9조의 2 에 따른 정밀안 전진단을 받은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11조에 따른 공 급자 의무의 이행 및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 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 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평가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 3 항 단서).
- 그런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조항을 검토 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같은 법 제 11 조에 따른 공급자 의 무 이행 및 제 23 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공급자 의무 이행 및 판매 방법의 준수 여 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안전관리 능력의 우수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
-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 져올 소지가 있다.

3) 개선 방안

- 만일 공급자 의무 이행 및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정기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가 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6) 전기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 :---: | :---: |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 과-징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금 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 분의 5 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br>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 14 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 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 지하여야 한다. <br> (2) 제 1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 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br>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2）검토의견
－「전기사업법」 제 24 조 제 1 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 업자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 분의 5 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다만，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 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 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5항에서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 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 이다．
－과징금 제도는 본래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 행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 12．31．법률 제 3320 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본래 부당이득금 박탈적 성격의 것으로서 도입된 과징금은 그 뒤 다수 국민이 이 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 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

정지 등 처분을 하게 한다면 국민에게 생활상 불편을 주는 경우 제재적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소위 "변형된 과 징금")로서 활용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본래적 의미에 서의 과징금보다는 변형된 과징금이 더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활 용되고 있다.

- 이처럼 현행법에 과징금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 (1)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일 반 공중에 대한 불편을 일으킴이 없이 행해질 수 있고, (2) 벌금 등 형사벌을 과함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피할 수 있으며, (3) 벌 금과는 달리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직접 쓰이기 때문에 수익증대 내지 특정사업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현행법상 벌금 및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특정 사유가 있 는 경우 분할납부의 근거가 마련되어 일괄 납부에 따른 경제적 인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율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4 조 제 5 항의 경우처럼 과징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제재수단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함으 로써 과징금 일괄 납부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제수 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납부율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 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 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 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5.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 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1.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 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비용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 관한교육 지침」(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9호, 2009.12.30. 제정, 2010.1.1. 시행) 제 4 조 제 1 항

##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제 4 조(교육비) (1)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 비를 받을 수 있다.
(2) 제 1 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 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 액으로 한다.
(3)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 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6)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 :---: | :---: |
|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
| (1)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 |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 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고 |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 :---: | :---: |
|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2）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 1 항 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 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 아야 한다． <br> （3）제 1 항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감 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 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 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 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 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 제 1 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 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산후 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 회 이상 받아야 한다． <br> （2）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교육의 주요내용은 감 염 예방，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 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br> （3）법 제 15 조의 6 제 2 항 단서에 따라 신 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 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 터 3 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br> （4）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 육을 수료한 사람에 게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하고，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 을 2 년간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br> （5）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 개월 이내에 산후조 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하고，매년 1월 31일까지 전 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 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br> （6）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 2）검토의견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 침」 제 4 조 제 1 항에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산후조

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산후조리 감염예방 등에 관 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 은 조 제2항에서 교육수준，교육인원，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교육비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의 적정한 책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산후조리업자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제1항），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면 미리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같은 조 제2항）등 교육이 강제되고 있으며，무엇보다도 이 와 같은 교육비 납부는 피교육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산후조리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비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하도록 하고，「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간，교육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위임 근거를 보다 구체 화한다．

## 【 모자보건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5 조의 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br> （1）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br>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br> （2）． <br> （3）（생 략） | 제 15 조의 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br> （1）산후조리업자는 감염 예방 등에 관 <br>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br> （2）•（3）（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 (4) 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 <br> 한 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과정 $\cdot$ 내 |
| 용 및 교육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br>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br> ~(3) (생 략) <br> <신 설> <br> (4)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 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 을 2 년간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br> (5)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 개월 이내에 산후조 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 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r> (6)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br> ~ (3) (현행과 같음) <br> (4) 산후조리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 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 하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한다. 교육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br> (5) ~ (7) (현행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와 같음) |

（2）세탁물 처리업자의 감염 예방 교육 실시 의무
1）관련 법령 및 조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 8 조

| 의료법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 :---: | :---: |
| 제16조（세탁물처리）（1）의료기관에서 나 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고 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br> （2）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br> （3）제 1 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 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그 밖에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제 8 조（감염 예방 교육）（1）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게 연 4 시간 이상 감염 예방 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br> （2）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 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br> （3）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 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2）검토의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 8 조 제 1 항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의료기관과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 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 도록 의무화하고，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실시 의무 및 교육 결과 기록•유지 의무는 의 료기관과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의무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과 세탁물 처리업자가 감 염 예방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소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단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러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는바，행 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상 단체 및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의료기관과 세 탁물 처리업자는 외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용 을 지출하여야 하는바，그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3）개선 방안
－의료기관과 세탁물 처리업자가 부담하는 감염 예방 교육 실시 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위탁 교육 실시 기관이나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도록 한다．

## 【의료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6조（세탁물처리）（1）•（2）（생 략） | 제16조（세탁물처리）（1）•（2）（현행과 <br> 같음） <br> ＜신 설＞ |
| （3）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br>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3) 제 1 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 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 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에 따라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 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현행 제 3 항과 같음) |

（3）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1）관련 법령 및 조문：「의료법」 제 30 조 제 3 항

|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
| :---: | :---: |
| 제30조（협조 의무）（1）중앙회는 보건복 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 <br> （2）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r> （3）의료인은 제 2 항에 따른 보수교 육을 받아야 한다． | 제 20 조（보수교육）（1）중앙회는 법 제30 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 시하여야 한다． <br> （2）의료인은 제 1 항에 따른 보수교육 을 연간 8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br>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br> （4）각 중앙회장은 제 1 항에 따른 보수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br> （5）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 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 <br> 1．전공의 <br> 2．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br> 3．영 제 8 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 은 신규 면허취득자 <br> 4．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 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br> （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
| :---: | :---: |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br>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 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br> (8)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 <br> 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 10 호의 2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 유예 신 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각 중앙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9) 제 8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 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 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 10 호의 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 유예 확인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br>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 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 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

2) 검토의견

- 「의료법」 제 30 조 제 2 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보수교 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법，교육시간，교육과정－내용 등에 관 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지 아니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도 보수교육의 교 과과정，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사항은 법상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 을 뿐 특정 의료인에게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바，「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 면제 또 는 유예 규정은「의료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제4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수교 육을 면제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수교 육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 예의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때 그 때의 상황이나 대상자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 자의적인 법집행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3）개선방안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두고，가능 한 한 면제 또는 유예의 대상을 법령에서 확정적으로 규정하거 나 그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도록 한다．
－중앙회의 협조 의무와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이질적이므로 조（條）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의료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30조（협조 의무）（1）중앙회는 보건복 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 <br> （2）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br> （3）의료인은 제 2 항에 따른 보수교 육을 받아야 한다． <br> ＜신 설＞ <br> ＜신 설＞ | 제 30 조（협조 의무）（현행 제 30 조제 1 항 과 같음） <br> 제30조의2（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등） <br> （1）（현행 제 30 조제 2 항과 같음） <br> （2）（현행 제 30 조제 3 항과 같음） <br> （3）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 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br> （4）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 여야 한다．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0조(보수교육) (1)~(5) (생 략) <br>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br> 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 <br> 1. 전공의 <br> 2.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br> 3. 영 제 8 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 은 신규 면허취득자 <br>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 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br>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br> 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br> 1. 해당 연도에 6 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br>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 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br> (8) - (9) (생 략) | 제 20 조(보수교육) (1)~ (5) (현행과 같음) <br> (6) 법 제 3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다음 $\qquad$ <br> 1. ~3. (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7) 법 제 3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다음 $\qquad$ $\qquad$ <br> 1. (현행과 같음) <br> 2. $\qquad$ ㅇㅇ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 $\qquad$ <br> (8) - (9) (현행과 같음) |

2.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 장례식영업자의 보고 의무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5 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제 37 조(검사 및 보고) (1) 시장등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 - 사설 봉안 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 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 장시설•사설봉안시설 - 사설자연장 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 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br> (2)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 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1)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 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 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 다)의 설치 - 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 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 의 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 일 이 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 25 호서 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br> (2)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 26 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2) 검토의견

- 현행 입법례를 보면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1) 일반 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과 (2)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제 1 항은＂시장등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cdots$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 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cdots$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 조 제2항에서는 일 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같은 법 제37조 제 1항을 근거로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 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여 장례식장영업자에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 고 있는바，같은 법 제 37 조 제 1 항은 이와 같은 개별•구체적인 보고의무의 근거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인에 대한 반기별 매장，화장，봉안 또는 자연장 상황 보고를 명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1 항 도 마찬가지이다．

3）개선 방안
－장례식장영업질서의 유지，장례식장영업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법률에 그 구체적인 근거를 두도록 한다（장례식장영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 조 제 1 항과 관련한 개선안은 제시하지 아니한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9조(장례식장영업) (1)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 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 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 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 리하여야 한다. <br> (2)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 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 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br> (3)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 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 까지를 1 일로 계산한다. <br> (4)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 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 아서는 아니 된다. <br> <신 설> | 제29조(장례식장영업) <br> (1) * 장례식장 영업 등록제도 사례 참조 <br> (2) ~ (4) $($ 현행과 같음) <br> (5)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 - 운영상황을 매 반 기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0 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1) 장 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 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각 호 생략) <br> (2) 법 제 29 조제 3 항에 따른 장례식 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 20 호서식에 따른다. <br> <신 설> <br>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1) (생 략) <br> (2)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0 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1). <br> (2) (현행과 같음) <br> (3) 법 제 29 조제 5 항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br>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1) (현행과 같음) <삭 제> |

（2）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1）관련 법령 및 조문 ：「모자보건법」제 15 조의 7 제 1 항

## 모자보건 법

제15조의7（보고 • 출입 • 검사 등）（1）ㅌㅡㅡ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출입 • 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3．（생 략）
4．제 15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 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생 략）

2）검토의견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7 제 1 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 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 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특 별자치도지사 등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 고•검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조사란＂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 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조사대상 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제 5 조），원칙적으로 행정조사의 법 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 법령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행정 조사에 관한 개별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국민 또는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 므로 당해 개별법에 규정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와 범위에 한하 여야 하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5）
－그런데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7 제 1 항은 조사의 목적•범위 등 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물론 법률에서 행정조사의 목적이나 범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필요하다고 인정하면＇행정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로 이해하 여야 할 것이나，행정조사의 목적•범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 고 포괄적인 권한행사규정을 두면 행정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권한행사를 가능하게 하고146）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145）국회법제실，앞의 책， 965 쪽 참조．
146）윤장근，출입검사 및 질문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http：／／www．moleg．go．kr／knowledge／ monthlyPublication？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mathrm{ec} \% \mathrm{~b} 6 \% 9 \mathrm{c} \% \mathrm{ec} \% 9 \mathrm{e} \% 85+\% \mathrm{ea}$

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 국민에게 적 지 아니한 부담을 줄 수 있다．${ }^{147)}$
－더 나아가 같은 법 제 27 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 15 조 의7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행정조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조 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보고요 구•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발하도록 하는 것은＂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야 한다＂（제4조 제4항）라고 규정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제 1 항에서는 행정조사의 대상 및 범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입법례

【공중위생관리법】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
$\% \mathrm{~b} 2 \% 80 \% \mathrm{ec} \% 82 \% \mathrm{ac} \& \mathrm{mpbLegPstSeq}=129347>$ 참조．
147）강현철•이세정，앞의 보고서， 61 쪽 이하 참조．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와 유사 한 입장에서 법령상＇필요한 경우＇등 자의적인 사유／내역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2012 규제개혁백서，708쪽 참조．

## 참고 입법례

소•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 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 (3) (생 략)
3) 개선방안

- 특별시장 등이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정조사 대상 •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 3.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1) 세탁물처리업 변경 • 휴업 • 재개업 • 폐업신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제 2 항 및 제 5 항

| 의료법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 :---: | :---: |
| 제 16 조(세탁물처리) (1) 의료기관에서 나 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 의료기관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 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br> (2) 제 1 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br> (3)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제 7 조(처리업의 신고 등) (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1. 별표 4 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 세서 <br> 2.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 치 내용을 포함한다) <br>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 2 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br> (3) 제 1 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 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 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 |


| 의료법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 :---: | :---: |
|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br> 1. 대표자 또는 상호 <br>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 음 각 목의 사항 <br>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br>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br> 다. 소독시설의 변경 <br> 3. 영업장 소재지 <br> (4)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 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 2 호서식의 의료 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 면에 적어야 한다. <br> (5)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의 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검토의견

- 「의료법」 제 16 조 제 1 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 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 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세탁 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의무，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무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각종 의무 부과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의료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세탁물 처리업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변경신고의무，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 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이러한 의무들은 세 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라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의료법」에 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의무，휴업•재개업•폐업신 고의무의 법률적 근거를 두도록 한다．

## 【의료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6조（세탁물처리）（1）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 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신 설＞ | 제16조（세탁물처리） <br> （1） $\qquad$ <br>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 $\qquad$ $\qquad$ <br> （2）제 1 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 오는 세탁물 처리를 신고한 자（이 하＂세탁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br> (2) - (3) (생 략) |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br> (3) 세탁물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 재개업 •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한다. <br> (4) • (5)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7 조(처리업의 신고 등) (1) 의료기 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br> 1. • 2. (생 략) <br> (2) (생 략) <br> (3)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 <br> 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 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br> 1. ~ 3. (생 략) <br> (4) (생 략) | 제 7 조(처리업의 신고 등) (1) 법 제 16 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업을 하려는 자(이하 "세탁물 처리업 자"라 한다) $\qquad$ $\qquad$ <br> 1. - 2. (현행과 같음) <br> (2) (현행과 같음) <br>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세탁물 처리업자가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1. ~ 3. (현행과 같음) <br> (4) (현행과 같음)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5)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법 제16조제3항 |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 조의 6 제 1 항 및 제 2 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제 29 조의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br> (1)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 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 20 조의 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 신고 등)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 20 조의 5 에 따라 신 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3 호의 9 서식의 장례 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 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br>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 23 호의 10 서식의 장례 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br>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폐 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br>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 획서 1 부 <br>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br> (3) 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른 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br>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br>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2）검토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 조의 6 제 1 항에서는 장례지 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교육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장례지 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 항에서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 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의 3 제 1 항에서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변 경신고，휴업•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들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운영자에게 변경신고의무，휴업•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만으로 는 변경신고의무，휴업•폐업신고의무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근 거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3）개선방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청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누 구든지 신고만 하면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청과 교육기관의 관계가 비교적 느슨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청의 실태 파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휴업•폐업신고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한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br> （1）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 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r> ＜신 설＞ <br> ＜신 설＞ <br> （2）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br> （1） $\qquad$ $\qquad$ $\qquad$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qquad$ <br> （2）제 1 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 기관을 설치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br> （3）제 1 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 기관을 설치한 자가 휴업하거나 폐 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 제 26 조의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 경신고）（1）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를 말한다． <br> 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소 재지 <br> 2．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0 조의 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경신고 등）（1）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을 운영하는 자는 제 20 조의 5 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 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3 호의 9 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 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2）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 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 23 호의 10 서식의 장 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 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 제 20 조의 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 경신고 등）（1）법 제 29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 는 자는 영 제 26 조의 2 각 호의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2）법 제 29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장례 지도사 $\qquad$ $\qquad$ $\qquad$ $\qquad$ |


| 현 행 | 개정안 |
| :---: | :---: |
| 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br>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폐업 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br>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 획서 1 부 <br>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 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br> (3)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 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 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 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br> (3) (현행과 같음) |

## 4.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1)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 등 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공중위생관리법」제 1 조제 1 항제 1 호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제 7 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 제 19 조(행정처분기준) 법 제 7 조제 2 항 |
| 등)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용사 | 및 법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행 |
|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 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 |  |
|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  |
|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2 호에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 |  |
| 여야 한다. |  |
|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  |
| 명령에 위반한 때 |  |
| 2. 제6조제 2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  |
| 해당하게 된 때 |  |
|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
|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  |
| 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 |  |
| 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 |  |
|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별표 7]

##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I. 일반기준 (생 략)

ㅍ. 개별기준
3. 이용업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1차 <br> 위반 | 2차 <br> 위반 | 3차 <br> 위반 | 4차 위반 |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및 영업장 면적의 3 분 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br>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br>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br> 마.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 회용 면도날을 2 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 용한 때 <br> 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때 <br> (1)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 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업소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br> (2) 삭 제 <2011.2.10> | $\begin{aligned} & \text { 법 제3조 } \\ & \text { 제1항 } \end{aligned}$ | 경고 <br> 또는 <br> 개선 <br> 명령 | $\begin{aligned} & \text { 영업 } \\ & \text { 정지 } \\ & 15 \text { 일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영업 } \\ & \text { 정지 } \\ & \text { 1월 } \end{aligned}$ | 영업장 <br> 폐쇄 명령 |
|  | 법 제3조 제1항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begin{aligned} & \text { 영업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영업 <br> 정지 |  |
|  | $\begin{aligned} & \text { 법 제 } 3 \text { 조 } \\ & \text { 의 } 2 \text { 제 } 4 \text { 항 } \end{aligned}$ | 개선 <br> 명령 |  |  | 영업장 <br> 폐쇄 |
|  |  |  |  |  |  |
|  |  |  | 10릴 <br> 영업 <br> 정지 <br> 5일 | $\begin{aligned} & \text { 1월 } \\ & \text { 영업 } \end{aligned}$ | 명령 |
|  | $\begin{aligned} & \text { 법 제4조 } \\ & \text { 제3항 } \end{aligned}$ | 경 고 |  |  | 영업장 |
|  |  |  |  | 10일 | 폐쇄 |
|  |  |  |  |  | 명령 |
|  | 법 제4조 <br> 제3항 및 제7항 | 경고 <br> 또는 <br> 개선 <br> 명령 | 영업 <br> 정지 <br> 5일 | 영업 <br> 정지 <br> 10일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 | 법 제8조 | 영업 | 영업 | 영업장 |  |
| 한 때 | 제2항 | 정지 | 정지 | 폐쇄 |  |
|  |  | 1월 | 2월 | 명령 |  |
| 아.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 법 제9조 | 영업 | 영업 | 영업 | 영업장 |
| 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 제1항 | 정지 | 정지 | 정지 | 폐쇄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과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릍 |  | 10일 | 20일 | 1월 | 명령 |
| 자.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 | 법 제 10 조 | 경 고 | 영업 | 영업 | 영업장 |
| 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  | 정지 | 정지 | 폐쇄 |
| 한 때 |  |  | 10일 | 1월 | 명령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1차 <br> 위반 | 2차 <br> 위반 | 3차 <br> 위반 | 4차 <br> 위반 |
| 차．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 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br> 카．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br>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br> 가．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 선 또는 제공한 때 <br> （1）영업소 <br> （2）이용사（업주） <br> 나．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 위를 하게 한 때 <br> 다．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br> 라．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br> 법 제17조 <br> 법 제 11 조 제1항 | 영업 장 <br> 폐쇄 <br> 명령 <br> 경 고 <br> 영업 <br> 정지 <br> 2월 <br> 면허 <br> 정지 <br> 2월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개선 <br> 명령 <br> 영업 <br> 정지 <br> 1월 | 영업 <br> 정지 <br> 5일 <br> 영업 <br> 정지 <br> 3월 <br> 면허 <br> 정지 <br> 3월 <br> 영업 <br> 정지 <br> 2월 <br> 영업 <br> 정지 <br> 15일 <br> 영업 <br> 정지 <br> 2월 | 영업 <br> 정지 <br> 10일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면허 <br> 취소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 <br> 정지 <br> 1월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4．미용업

| 위 반 사 항 | 관련법규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 :---: | :---: | :---: | :---: | :---: |
|  |  | 1차 <br> 위반 | $\begin{aligned} & \text { 2차 } \\ & \text { 위반 } \end{aligned}$ | $3 \text { 차 }$ <br> 위반 | 4차 <br> 위반 |
| 1．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때 | 법 제7조 제1항 |  |  |  |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1 차 위반 | $2 \text { 차 }$ <br> 위반 | 3차 위반 | 4차 <br> 위반 |
| 바．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때 <br> 사．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때 <br> （1）점빼기 • 귓볼뚫기 • 쌍꺼풀수술－ 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 <br> （2）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 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업소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br> （3）삭 제＜2011．2．10＞ <br> 아．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 한 때 <br> 자．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br> 차．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br> 카．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 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br> 타．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br>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 법 제4조 제7항 <br> 법 제4조 <br> 제4항 및 <br> 제7항 <br> 법 제8조 <br> 제2항 <br> 법 제9조 <br> 제1항 <br> 법 제 10 조 <br> 법 제 11 조 제1항 <br> 법 제17조 <br> 법 제 11 조 제1항 | 영업 <br> 정지 <br> 2월 <br> 영업 <br> 정지 <br> 2월 <br> 경고 <br> 또는 <br> 개선 <br> 명령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br> 경고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경고 | 영업 <br> 정지 <br> 3월 <br> 영업 <br> 정지 <br> 3월 <br> 영업 <br> 정지 <br> 5일 <br> 영업 <br> 정지 <br> 2월 <br> 영업 <br> 정지 <br> 20일 <br> 영업 <br> 정지 <br> 10 일 <br> 영업 <br> 정지 <br> 5일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 :---: | :---: | :---: | :---: |
|  |  | 1차 <br> 위반 | 2차 <br> 위반 | 3차 위반 | 4차 <br> 위반 |
|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 선 또는 제공한 때 <br> (1) 영업소 <br> (2) 미용사(업주) <br>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 를 하게 한 때 <br>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br>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  | 영업 <br> 정지 <br> 2월 <br> 면허 <br> 정지 <br> 2월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개선 <br> 명령 <br> 영업 <br> 정지 <br> 1월 | 영업 <br> 정지 <br> 3월 <br> 면허 <br> 정지 <br> 3월 <br> 영업 <br> 정지 <br> 2월 <br> 영업 <br> 정지 <br> 15일 <br> 영업 <br> 정지 <br> 2월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면허 <br> 취소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2) 검토의견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 의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명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 1 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면 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개선방안
－「공중위생관리법」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를 삭제하거나 미용사 또는 이용사의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명령의 대상 사유를 명확하 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 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결부된 별표 ㅍ．개별기준 3．및 4．에서＂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 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이를 참고해서 법률에서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 로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2）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장 폐쇄 등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제 11 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시장－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 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 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 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 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br>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 지，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 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r> （3）～（5）（생 략） | 제 19 조（행정처분기준）법 제 7 조제 2 항 및 법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별표 7]

## 행정처분기준(제 19 조관련)

I. 일반기준 (생 략)

ㅍ. 개별기준

1. 숙박업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1 차 위반 | $\begin{aligned} & \text { 2차 } \\ & \text { 위반 } \end{aligned}$ | 3차 <br> 위반 | 4차 <br> 위반 |
|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br>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br>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 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br>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br>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br> 마.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 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br>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 지하지 아니하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br>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br>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 하지 아니하거나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br> (4) 삭 제 <2011.2.10> | 법 제11조 제 1 항 <br> 법 제3조 제 1 항 <br> 법 제3조 제 1 항 <br> 법 제3조 제 1 항 <br> 법 제3조 의 2 제 4 항 <br> 법 제4조 제7항 | 개선 <br> 명령 <br> 경고 <br> 또는 <br> 개선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개선 <br> 명령 <br> 경 고 <br> 개선 <br> 명령 <br> 경고 <br> 또는 <br> 개선 <br> 명령 | 영업 <br> 정지 <br> 15일 <br> 영업 <br> 정지 <br> 15일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br> 영업 <br> 정지 <br> 5일 <br> 영업 <br> 정지 <br> 5일 <br> 영업 <br> 정지 <br> 5일 |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br> 영업 <br> 정지 <br> 10 일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1차 <br> 위반 | 2차 <br> 위반 | $3 \text { 차 }$ <br> 위반 | 4차 <br> 위반 |
|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를 거부•기피 하거나 방해한 때 <br>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br>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br>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제1항 <br> 법 제10조 <br> 법 제11조 제1항 <br> 법 제17조 | 영업 <br> 정지 <br> 10일 <br> 경고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경고 | 영업 <br> 정지 <br> 20일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br> 영업 <br> 정지 <br> 5일 |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월 <br> 영업 <br> 정지 <br> 10일 |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br> 영업장 <br> 폐쇄 <br> 명령 |

2) 검토의견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 1 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 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데,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영업소폐쇄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 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 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개선 방안
－「공중위생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중＂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부분을 삭제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 정지 또 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영업소 폐쇄 명령의 대상 사유를 명 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영업소 폐쇄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결부된 별표 П． 개별기준 1．，2．및 5．에서＂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한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이를 참고 해서 법률에서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 거할 수 있을 것이다．
(3) 폐쇄명령을 받은 산후조리원과 같은 장소에서의 산후조리업 금지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9 제 4 항

##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산후조리업자가 제 15 조의 8 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 1 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 15 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 15 조의 2 제 7 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 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생 략)
(4)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5) (생 략)

제 15 조의 8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 15 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 15 조의 2 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 15 조의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 15 조의 5 제 2 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 15 조의 14 제 1 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2) 검토의견

-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9 제 4 항에서는 같은 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 여기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산후조리업 폐쇄명령의 사유 를 보면, 제 1 항의 사유는 같은 법 제 15 조의 8 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제2항의 사유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 을 계속한 경우나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인데, 이들 사유는 산후조리원 장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영업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에게 6개월 동안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명령을 받은 산후조리원과 같은 장 소에서 6개월 동안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논리 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3) 개선 방안

-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장소가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모자보건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5 조의 9 (산후조리원의 페쇄 등) <br> (1)~(3) (생 략) <br> (4)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산후조리 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br> (5) (생 략) | 제 15 조의 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br> (1) ~ (3) (현행과 같음) <br> (4) $\qquad$ $\qquad$ $\qquad$ <br>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 고를 $\qquad$ <br> (5) (현행과 같음) |

（4）응급환자이송업자의 영업 허가취소 등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5 조 제 2 항 제 6 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5 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 자격 정지 등）（1）（생 략）
（2）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이하 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 18 조제 2 항，제 28 조제 3 항，제 32 조제 1 항，제 33 조제 1 항，제 35 조의 2 ，제 44 조 제 3 항，제 45 조제 1 항，제 47 조제 1 항，제 48 조，제 49 조제 2 항 • 제 3 항，제 51 조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제 52 조제 1 항，제 53 조，제 54 조제 3 항，제 54 조의 2 또는 제 59조를 위반한 경우
2．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제 50 조에 따른 시정명령 • 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제 2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4）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검토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에서는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명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6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구성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가 명확하게 예측 할 수 없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 제6항을 삭제하거나 응급환자이 송업자의 영업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의 대상 사유를 명확하 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1) 관련 법령 및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 15 조의 9 제 4 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 22 조(자격의 정지) (1) 보건복지부장 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 지시킬 수 있다. <br>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br>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 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 무를 한 경우 <br>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 11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등 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br> 2 의 3 . 제 11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개 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 공소를 개설 - 운영한 때 <br> 2 의 4 . 제 11 조의 3 제 2 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 지 아니한 때 <br> 2의5. 제 11 조의 3 제 3 항을 위반한 때 <br>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br>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품위손상행 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 13 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br> 1. 제 2 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br>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br>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br>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하는 행위 |

2）검토의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자격 정지 사유로＂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품위손상행위로서（1）의 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2）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3）학문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업무를 하는 행위，（4）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행위들을＂의료기사등으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 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대법원 2000．6．9．선고 98 두 16613 판결 참조）으로서＇품위＇손상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인지 의문이다．
－또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품 위를＇현저히＇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과연 어느 정도의 위반이 현저한 위반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법률에 서 규정하는 것처럼 ‘현저히＇손상시키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 는 것인지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저 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인지가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집행상 불필요한 마찰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3）개선방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각 호의 행위 유형은 일반적인 입법례에서 말하는 준수의무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바，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2 조（자격의 정지）（1）보건복지부장 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 지시킬 수 있다． <br> 1．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를 한 경우 <br> 2．～3．（생 략） <br> （2）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품위손상행 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 22 조（자격의 정지）（현행과 같음） <br>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 수하지 아니한 경우 <br> 2．～3．（현행과 같음） <br> ＜삭 제＞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3 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br> 1．제 2 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 제 13 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br> 범위）법 제 22 조제 1 호에서＂대통령 <br>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qquad$ <br> 1. $\qquad$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br>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조의 업무를 하는 행 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br>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br>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하는 행위 | 2. $\qquad$ $\qquad$ 하지 아니 <br> 할 것(현행과 같음) <br> 3. $\qquad$ $\qquad$ $\qquad$ $\qquad$ <br> 4. $\qquad$ 판시 하지 아니할 것 |

（6）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1）관련 법령 및 조문：「의료법」 제 25 조 제 2 항

##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1）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의료인은 제 2 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신고）（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 30 조제 3 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66 조（자격정지 등）（1）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 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3）（생 략）
（4）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 25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생 략）

2）검토의견
－「의료법」 제 30 조 제 2 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 시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실시하

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의료법」상 보수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고, 다만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같은 법 제 25 조에 따른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시 그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같 은 법 제 25 조 제 2 항), 의료인 실태 -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제4항).
-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는 직접적인 관련 성이 없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 고 반려를 결부시키고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 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에 반할 소지가 있다.
- 오히려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하려면 그 미이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수교육 이수 규정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나 행정벌 등 직접적 제재규정을 둔다.


## (7)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의료법」제 66 조 제 1 항 제 10 호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 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 17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 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 20 조를 위반한 경우
5. 제 27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 짓 청구한 때
8. 삭 제 <2011.8.4>
9. 제 23 조의 2 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 25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제 1 항제 2 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1．일반기준（생 략）
2．개별기준
가．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법＂이라 한다）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1）－2）（생 략） <br> 3）법 제 15 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 한 경우 <br> 4）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 급한 경우 <br> 5）법 제 1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진단 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 하여 발급한 경우 <br> 6）법 제 17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 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br> 7）법 제 18 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br> 8）～38）（생 략） | 법 제66조제 1 항제 10 호 <br> 법 제66조제 1 항제 10 호 <br> 법 제66조제 1 항제 3 호 <br> 법 제66조제1 항제 10 호 <br> 법 제66조제1 항제 10 호 | 자격정지 1개월 <br> 자격정지 2개월 <br> 자격정지 3 개월 <br> 자격정지 1개월 <br> －1차 위반 ：자격정지 15 일 <br>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br> ：자격정지 1개월 |

2）검토의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 10 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경우＂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면허자격 정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

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개선 방안
－「의료법」 제66조 제 1 항 제 10 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한다．「의료법」 제 68 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와 결부된 별표 2．개별기준에서는 개개의 조항에서는 금지의무 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 직접 면허자격 정지의 사유로 열거하지 아니하는 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의 근 거를 같은 조 제1항 제10호＂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들고 있는바，오히려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 직접 면허자격 정지의 사유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기 타

（1）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영업의 제한
1）관련 법령 및 조문：「공중위생관리법」제9조의 2

## 공중위생관리법

제 9 조의 2 （영업의 제한）시 •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2）검토의견
－「공중위생관리법」 제 9 조의 2 에서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 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 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업시간과 어떠한 영업행위를 언제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 나 또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범자 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고，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시간이든，어떤 영업행위든 제 한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의적인 법집행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

## 3）개선 방안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고，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제한되는 영업시간•영업행위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정 하거나 하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입법례

【유통산업발전법】제 12 조의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1）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 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다만，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 이 55 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영업시간 제한
2．의무휴업일 지정
（2）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오전 0 시부터 오 전 10 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이 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9 조의 2 (영업의 제한) 시 -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 9 조의 2 (영업의 제한) $\qquad$ $\qquad$ $\qquad$ $\qquad$ <br> 대통령령(또는 조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영업시간 $\qquad$ |

（2）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재교부받은 면허증의 반납

1）관련 법령 및 조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0 조 제 3 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0 조（면허증의 재교부 등）（1）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 이 있는 때，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 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3）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 는 지체없이 재교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2）검토의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0 조 제 3 항에서는 이용사 또는 미 용사로서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이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 다면 1 명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면허증을 2 개 소지하는 셈인 데，그렇다고 하더라도 2 명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 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2 개의 면허증 중 어느 하나를 폐기하고 나머지 하나를 소 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후 찾은

면허증을 관할 행정청에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 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

- 만일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영업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잃어버린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 라면 법률에서 타인에 대한 면허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 에 대하여 제재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3) 개선방안

- 잃어버린 면허증을 관할 행정청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 제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0 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1) • <br> (생 략) <br> (3)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 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 10 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br> (1). <br> (현행과 같음) <br> <삭 제> |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제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 3 조 및 제 8 조부터 제 12 조까지

| 의료법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 :---: | :---: |
| 제 78 조(전문간호사) (1) 보건복지부장관 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제 3 조(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 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 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 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br>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 정을 마친 자 <br>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br> 제 8 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 회 이상 자 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 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 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 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 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


| 의료법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 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 일 전까지 일간신문이 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br> 제 9 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 절차) (1)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 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br>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 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 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 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br> 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 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 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 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 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br> 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 |


| 의료법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br> (3)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 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 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4)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 수료를 내야 한다. <br> (5)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br>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br>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 시수수료의 전부 <br>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 료의 전부 <br> 4. 시험 시행일 2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 료의 전부 <br> 5. 시험 시행일 10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 료의 100 분의 50 <br> 제 10 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자격시험은 1 차시험과 2 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 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 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br> (2) 2 차시험은 1 차시험에 합격한 자 |


| 의료법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가 응시할 수 있고, 1 차시험에 합격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 에 한하여 1 차시험을 면제한다. <br> (3)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 차시험과 <br> 2 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br> (4)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br>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 <br> 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 이 정한다. <br> 제 11 조(합격자 발표 등) (1) 자격시험관 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 표한다. <br> (2) 제 1 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 일 이내 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br> (3)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br> 제 12 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 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 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 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2）검토의견
－「의료법」 제 78 조 제 1 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 호사 면허 외에＇전문간호사＇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자격 기준， 자격증，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 2 조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 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분야로 구분하고 있 고，같은 규칙 제 3 조에서는（1）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 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전문간호사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바，전문간호사 자격시험제도는 전문간호사가 되 기 위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창설하려면 법률（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9조 제4항에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 시하려는 자에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이용의 대가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법률에 근 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라면 결국 수수료를 강제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국민에 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148)}$

148）법제처，앞의 책，411쪽 이하 참조．

3）개선방안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이 때 자 격시험 응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한 다．「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은「의료법」 개선안 에 맞춰 전체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 【의료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78조（전문간호사）（1）보건복지부장 <br> 관은 간호사에 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 <br> 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br> ＜신 설＞ | 제78조（전문간호사）（1）（현행과 같음） |
|  |  |
|  | （2）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 |
| 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

제 4 절 보건 - 복지 관련 법제 분야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의 반환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br>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산후조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

1) 관련 법렁 및 조문 : 「모자보건법 시행렁」 제 17 조의 4 제 4 항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시행령 |
| :---: | :---: |
| 제15조의 11 (과징금)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5 조 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 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br>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 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br>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과징금 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br>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br> 구청장은 법 제 15 조의 11 에 따라 과징 <br> 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 <br> 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br>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br> (2) 제 1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과징 금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 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 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 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4)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br> (5)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검토의견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11 제 1 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 15 조의 9 제 1 항에 따른 산후조리 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의 4 에서는 과징금의 부과•징 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 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 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 이다．
－과징금 제도는 본래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 행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 12．31．법률 제 3320 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본래 부당이득금 박탈적 성격의 것으로서 도입된 과징금은 그 뒤 다수 국민이 이 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 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 정지 등 처분을 하게 한다면 국민에게 생활상 불편을 주는 경우 제재적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소위＂변형된 과

징금＂）로서 활용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본래적 의미에 서의 과징금보다는 변형된 과징금이 더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에 과징금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1）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일 반 공중에 대한 불편을 일으킴이 없이 행해질 수 있고，（2）벌금 등 형사벌을 과함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피할 수 있으며，（3）벌 금과는 달리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직접 쓰이기 때문에 수익증대 내지 특정사업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현행법상 벌금 및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특정 사유가 있 는 경우 분할납부의 근거가 마련되어 일괄 납부에 따른 경제적 인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율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반하여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7 조의 4 제 4 항의 경우처럼 과징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것은 제재수단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3 제 5 항，「의료기기법 시행령」 제 12 조 제 4 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제 5 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일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정비 대상 입법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 $\mathbf{7}$ 조의 $\mathbf{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1）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 11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

## 정비 대상 입법례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6）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 $\mathbf{1 2}$ 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1）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 38 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해당 과징금의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 수증을 교부하고，지체없이 수납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1）시장등이 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 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제 1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과징금 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 정비 대상 입법례

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3) 개선 방안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함으 로써 과징금 일괄 납부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제수 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납부율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 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 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

## 참고 입법례

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5 절 문화-체육 • 관광 관련 법제 분야

1.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1) 시험용 게임물을 이용한 평가 절차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게임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21조(등급분류) (1) 게임물을 유통시 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 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br> 1. - 2. (생 략) <br>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 안전 성 -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 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 른 게임물 <br> 4. (생 략) <br> (2) ~ (12) (생 략) |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 (1) 법 제21조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br> 1. 법 제 2 조제 1 호의 2 가목부터 바목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 물이 아닐 것 <br> 2. 별표 1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br> (2)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 <br> 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 <br> 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 <br> 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 <br> 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3)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br>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br> 제 1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br> 확인 ( 1 인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br>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 <br> 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br> (4)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 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 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 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제 3 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는 2 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 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

2) 검토의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 본문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는 등급분 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따르면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 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서는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 려는, 게임물제작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 항에서는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시험용 게임물 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용 게임물 또는 그 확인에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한 것으로 이해하여 평가방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게임물의 성능•안전성 •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한 확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으 로서 이를 곧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 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 회에 한하 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시험기간 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 어디서도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데 시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연장 신청의 근거 역시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1 조의 3 에서는 모법의 위 임 취지에 맞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험용 게임

물의 대상이나 기준에 관해서 규정하고, 시험용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 •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관련 의무 사항, 시험기간 및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규 정하도록 한다.
（2）게임물의 기술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1）관련 법령 및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8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

| 게임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21조（등급분류）（1）～（7）（생 략） <br> （8）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br> （9）～（12）（생 략） | 제 12 조（게임물의 기술심의）（1）법 제 21 조제 8 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 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게임제공업소 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 1 호의 2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 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br> 1．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br> 2．삭 제＜2007．5．16＞ <br> 3．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br> 4．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 동 기능 <br> （2）제 1 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 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2）검토의견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8 항에서는 등급위원회 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에서는 등급위원회는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같은 법 제 2 조 제 1 호의 2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1) 게임물 운영 소프 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 별 기능, (3)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기능을 갖추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이하 "기술심의"라 한다)를 받 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심의 대상 게임물 및 심의 내용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 비록 같은 법 제 21 조 제 8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의 문구상 기술심의는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술심의를 받게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임물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심의를 받게 되는가가 중요하고, 기술심의 대상 게임물 및 심의 의 기본적인 내용은 기술심의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등급분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기술심의 대상 게임물 및 심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 제 2 항에서는 기술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법령 차원에서는 기술 심의가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 다. 기술심의의 실시방법이나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사항은 「행 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전문

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기술심의의 실시방법이나 그 밖에 심의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은 법령 차원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개선방안

- 기술심의 대상 게임물 및 심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 고, 기술심의의 실시방법이나 그 밖에 심의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은 법률에 그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하의 법률 개선안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기술심의 실시방법이나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 여 규정하면 될 것이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1조(등급분류) (1)~(7) (생 략) <br> (8)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 제21조(등급분류) (1)~ (7) (현행과 같음) <br> (8) $\qquad$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 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 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제2조제1 호의 2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심의 를 할 수 있다. <br>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br> 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

제5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underline{(9)} \sim \underline{(12)} \text { (생 략) }$ | 3.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 동 기능 <br> (9) 제8항에 따른 기술심의의 실시방 법이나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10) ~ (13) (현행 제9항부터 제 12 항까 지와 같음) |

(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지정 방법 및 성능 등 인정심사 경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결부된 별표 3 3. 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3 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 :---: | :---: | :---: |
| 법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 :---: |
| 법률 시행령 |$\qua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 :---: |
| 법률 시행규칙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 으로 정한다. |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 시와 운영정보표시장 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 표 3 과 같다. 다만, 제 11 조의4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 보를 표시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 있다. <br> (4) 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br>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 <br> 원회가 정한다. |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제19조 관련)

1. • 2. (생 략)
2.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가. - 나. (생 략)
다.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
(1)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표준모델의 것으로서 게임물등 급위원회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것을 부착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성능 등의 인정 신청 및 심사절차, 비 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게임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2 항에서는 게임물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렁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운영정보표시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운영정보표시장 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결부 된 별표 3 에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 런데 별표 3 3. 다. (1) 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표준모델의 것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것을 부착하도록 하여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 및 성능 등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작하는 장치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운영정보표시장치로 지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지정방법•절차나 성능 등 인정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별표 3. 다. (2)에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성능 등의 인 정 신청 및 심사절차,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25 조 제 3 항에서는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 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 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 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이용의 대가 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결국 수수료를 강

제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국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운영정보표시장치의 성능 등 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이용이 강제되므로 경비 부과 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 방법 및 절차，그 성능 등의 인정 신청 및 심사절차，비용 부담의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한다．이하에서 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만 제시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33조（표시의무）（1）（생 략） <br> （2）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 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 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br> ＜신 설＞ <br> ＜신 설＞ | 제 33 조（표시의무）（1）（현행과 같음） <br> （2） $\qquad$ $\qquad$ $\qquad$ $\qquad$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 하여야 한다． <br> （3）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운 영정보표시장치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그 성능 등을 인정할 수 있다． <br> （4）등급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br>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br>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픾에 요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br>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br>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
1）관련 법령 및 조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5 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제50조（등급분류）（1）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이하 같 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 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 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 류를 받아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 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br> 2．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 공하는 비디오물．다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8 호부 터 제 11 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 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 은 제외한다． <br> 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 물 대회，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br> 4．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 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 | 제15조（등급분류신청）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디 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 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 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 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br>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 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 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 하여야 한다. <br> (3) ~ (6) (생 략) <br> (7) 제 1 항•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필증 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

## 2) 검토의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50 조 제 1 항 본문에서 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 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도록 하여 비교적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 조에서는 법률의 명 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비 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 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예외를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도서의 출판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개선 방안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해서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 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으로 규정하 도록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mathbf{5 0}$ 조（등급분류）（1）비디오물을 제작 <br>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이하 같 | 제50조（등급분류）（1）（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 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 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 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신 설> <br> (2) ~ (6) (생 략) <br> (7) 제 1 항•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필증 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 한다. |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비 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 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br> (3) ~ (7)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 지와 같음) <br> (8) 제 1 항, 제 3 항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

（5）최초 간행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1）관련 법령 및 조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2 항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 조（최초 간행물의 제출）（1）제 15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 부를 즉시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자에게 등록•신고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등록•신고관청은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검토의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에서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 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 부를 즉시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최초 정기간행물 제출제도는 문헌 정보를 보관하고 관할 행정청이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록 또 는 신고 후 간행물이 실제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것으로 생각되고，그러한 의미에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 정청의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최초 정기간행물 제 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을 뿐 보상 기준이나 절차 등을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3）개선방안
－정기간행물 최초 제출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나 절차 등을 법률 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적어도 하위법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 을 마련한다．

## 참고 입법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영화필름등의 제출）（1）영화 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 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영화필름등＂이 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외국영화 또는 제 29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 가 당해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 원에 제출할 수 있다．
（3）한국영상자료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 12 조（영화필름등의 제출）（1）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 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 제 35 조제 2 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영화를 수입하 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 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 35 조제 3 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 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전자문서 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3 조(최초 간행물의 제출) (1) (생 략) <br> (2)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자에게 등 록•신고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 여야 한다. <br> (3) 등록-신고관청은 최초 간행물 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 제 23 조(최초 간행물의 제출) (1) (현행과 같음) <br> (2) $\qquad$ $\qquad$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br> 바에 따라 정당한 $\qquad$ <br> (3) (현행과 같음) |

## (6)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quad$|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시행령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br> 시행령 |
| :---: | :---: |
|  | 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 <br> 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br>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 <br> 출하여야 한다. |

2) 검토의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제 1 항에서는 영 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밖에 영 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에서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최초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및 절차 외에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 거 없이 변경재해대처계획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변경재해대처계획 신고(제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새로 운 의무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자에 대하여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변경재해 대처계획 신고(제출)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부과시 이해관계자와의 마찰 회피를 위해 서도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 영화상영관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재 해대처계획 변경 시 관할 행정청에 이를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변경재해대처계획 신고(제출)에 관한 사항 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을 그에 맞춰 정비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7 조(재해예방조치) (1) 제 36 조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 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 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 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신 설> | 제 37 조(재해예방조치) (1)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재해대처계 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br>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신고를 받으면 즉 시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br> (3) 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 |


| 현 행 | 개정안 |
| :---: | :---: |
| (2)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고를 받은 시장•군수 • 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 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신 고하여야 한다. <br>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qquad$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6 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1) 법 제 37조제 1 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 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 <br>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영화상 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 에 제 1 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 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 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 | 제 16 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1) (현행 과 같음) <br> (2) (현행 과 같음) <삭 제>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 |  |
| 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  |
|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 |  |
| 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 |  |
| $\frac{\text { 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text { 닐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 }}$ |  |
| $\frac{\text { 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7）인쇄사 변경신고 기간

1）관련 법령 및 조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 15 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 | :---: |
| 제12조（신고）（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2 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 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br> 1．인쇄사의 명칭－소재지 <br> 2．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br> （2）－（3）（생 략） <br> 제 15 조（과태료）（1）제 12 조제 1 항을 위반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 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r> （2）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 제 3 조（변경신고）법 제 1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쇄사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 1 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필 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 2）검토의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 12 조 제 1 항 전단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1）인쇄사의 이름 및 소재지，（2） 경영자의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고，같은 항 후단에서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신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같은 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르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무엇보다도 같은 법 제 12 조 제 1 항 후단에서는 변경신고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변경신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변경신고의무를 언제 또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변경신고기간을 변경 일부터 20 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이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개선 방안
－인쇄사 변경신고 기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2조（신고）（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 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 제12조（신고）（1）－－－－－－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br> 1. 인쇄사의 명칭 - 소재지 <br>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br> (2) - (3) (생 략) | $\qquad$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br> 1. - 2. (현행과 같음) <br> (2) - (3) (현행과 같음) |

（8）출판사 변경신고 기간

1）관련 법령 및 조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 3 조

| 출판문화산업 진훙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 | :---: |
| 제 9 조（신고）（1）출판사를 경영하려는 <br>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 <br> 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br>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br> 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br> 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br> 1．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br> 2．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br> （2）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이하＂신 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 증을 내주어야 한다． <br> （3）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 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 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 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조（변경신고）법 제9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 1 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 1 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 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검토의견

－「출판문화산업 진훙법」 제9조 제 1 항에서는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1）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2）경영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에도＇미리＇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출판사 변경신고 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법률에서는 미리 신고하도록 한 것에 반한다．

## 3）개선방안

－출판사 변경신고를 미리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신고 사항이 변 경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출판사 경영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된다．이하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 흥법」 제 9 조 제 1 항 후단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한다．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9 조（신고）（1）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 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br> 1．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br> 2．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br> （2）•（3）（생 략） | 제 9 조（신고） <br> （1）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br> 1．－2．（현행과 같음） <br> （2）．（3）（현행과 같음） |

## 2．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1）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관련 제재

1）관련 법령 및 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38 조 제 3 항 제5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8 조（폐쇄 및 수거 등）（1）•（2）（생 략）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다만，제 2 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1．～4．（생 략）
5．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렘
（4）～（10）（생 략）

2）검토의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38 조 제 3 항 제 5 호에 따르면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기기•장 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그런데 같은 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게임물의 기술 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게임물의 기 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한 것인지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 행을 초래할 수 있다．

3）개선 방안
－게임물 산업 진흥，건전한 유통질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게임물 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또는 적어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 때「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38조 제3항 제5호에서 단 한번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규정은 둘 필요가 없고，해당 조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알 수 있 도록 풀어서 규정하면 될 것이다．

## 참고 입법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mathbf{2}$ 조（정의）（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6．（생 략）
7．＂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 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2）（생 략）
제37조（금지행위 등）（1）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 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 작연월일，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 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콘텐츠를 최초로 제작 한 날부터 5 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입법례

(2)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제 1 항 본문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 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 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콘텐츠제작자가 제 1 항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변경하여 복제• 배포 - 방송 또는 전송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모범 게입제공업소 지정 취소

1）관련 법령 및 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제 9 조（유통질서의 확립）（1）정부는 게 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br> （2）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br> （3）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게임 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 으로 연 3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br> （4）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 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 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6 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br>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 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 하여야 한다． <br> 1．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br> 2．영업소의 쾌적성 <br> 3．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br> 4．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br> 5．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br> 6．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 다．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br> （2）시장 $\cdot$ 군수 $\cdot$ 구청장은 제 1 항에 따 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 의 모범영 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 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br> （3）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 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 지 1 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
|  | 한다. |

2) 검토의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 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 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 취소 처분은 모범 게 임제공영업소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 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그 절차적 권 리 보호 차원에서 청문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평가사항(1) 영업 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 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군•구의 특색을 고려 하여 정하는 평가기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평가기준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취소 처분의 법률적 근거 및 지정취소 시 청문 조항을 마련하고, 지정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9 조(유통질서의 확립) (1)~(3) (생 략) <br> (4)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 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 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br> <신 설> <br> 제40조(청문)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3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9 조(유통질서의 확립) (1)~(3) (생 략) <br> (4)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 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 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br> (5) 제4항에 따른 모범영업소 지정 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령(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제40조(청문) $\qquad$ $\qquad$ $\qquad$ $\qquad$ 따라 모범영업소 지정취소를 하려는 $\qquad$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 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 하여야 한다． <br> 1．～6．（생 략） <br> （2）（생 략） <br> （3）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 정지 1 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 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 제 6 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br> （1） $\qquad$ $\qquad$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qquad$ $\qquad$ $\qquad$ $\qquad$ <br> 1．～6．（현행과 같음） <br> （2）（현행과 같음） <br> （3）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그 지정- $\qquad$ |

（3）정기간행물 발행정지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4 조（등록 • 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1）등록 • 신고관청은 제 15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3 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 회 이하）의 기간（횟수） 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 15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4）（생 략）
제 20 조（결격사유 등）（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 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 15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생 략)
2) 검토의견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르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 20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등록•신고관청은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 20 조 제 1 항에서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개 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이러한 변경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입법자는 정 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 개 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면 해당 정기간 행물을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같은 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는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 조항 간에 모순•상충이 나타나고 있다.

3）개선방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2 항에서 정 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제도를 둔 취지를 고 려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 을 한 경우에는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는 것으로 바꾼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훙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4 조（등록 • 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br> （1）등록 • 신고관청은 제 15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3 개월 이하（격월 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 회 이 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 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br> 1．제 15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등록 또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 의로 변경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 한 때 <br> 2．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 20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 ~ (4) (생 략) | 제 24 조（등록 • 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br> （1）（현행과 같음） <br> 1．（현행과 같음） <br> 2．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 20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제20 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편집 인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 한다） <br> （2）～（4）（현행과 같음） |

## 3．기 타

（1）영화상영관에서 영사 자격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관련 법령 및 조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 조 제 2 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44조（영사 자격자）영화상영관 경영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사（映寫）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 야 한다．다만，소형영화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제 $\mathbf{2}$ 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 1．～5．（생 략） <br> 6．＂소형영화＂라 함은 16 밀리미터 이 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 하는 영화를 말한다． <br> 7．～20．（생 략） | 제 21 조（영사 자격자）（1）법 제 44 조 본문 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 자격으로 한다． <br> （2）법 제44조 단서에서＂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 한다． |

2）검토의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44 조에서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관련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하＂영사 자격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되，다만，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 화의 경우에는 영사 자격자가 아닌 자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 형영화 외에 영사 자격자가 아닌 자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를 규정하면 될 것이다．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서는＂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화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결 국 ‘소형영화’만 영사 자격자가 아닌 자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 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개선방안
－현재로서는 소형영화 외에 영사 자격자가 아닌 자가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없다면 굳이 이를 시행령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다만，향후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소형영화 외에 영사 자격자가 아닌 자가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등장할 가능성 을 고려하여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남겨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44조（영사 자격자）영화상영관 경영 | 제44조（영사 자격자）영화상영관 경영 |
|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
| 사（映寫）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 사（映寫）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
| 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 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
| 하여야 한다．다만，소형영화 등 대통 | 하여야 한다．다만，소형영화나 그 박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  <br> 하지 아니하다．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 <br>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1조（영사 자격자）（1）법 제44조 본문 | 제21조（영사 자격자）（1）（현행과 같음） |
| 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 |  |
| 기술자격법」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 |  |
| 자격으로 한다． |  |
| （2）법 제44조 단서에서＂소형영화 등 | ＜삭 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  |
|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 |  |
| 한다． |  |

## 제 6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 1.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 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재교육 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 조 제 2 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제 38 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 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br> 1.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 시설설치자등 <br> 2.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br> 3.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 공업자 <br>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 용한 자로부터 제 1 항의 규정에 따 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br> (3)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 40 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1)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 을 받아야 한다. <br> 1. 신규교육 : 제 41 조 각 호에 해당하 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 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br> 2. 재교육 : 법 제 32 조나 법 제 35 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 용한 제 41 조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 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 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br> (2) 법 제 38 조제 2 항에 따라 가축분뇨 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r> 시행규칙 |
| :--- | :--- |
|  | 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 <br> 한다. |

2) 검토의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8 조 제 1 항에서는 가 축분뇨관련영업자(제2호) 및 설계•시공업자(제3호)는 그가 고용 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 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 조 제 1 항에서는 해당 교육을 신규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교육 대상을 "법 제32조나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생각건대, 같은 법 제 32 조나 제 35 조에 따른 영업정지사유는 거의 대부분 영업자 본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그러 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영업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데, 직접적인 법령 위반자가 아닌 기술요원에게 일종의 제재로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헌법상 자 기책임의 원칙이나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3) 개선 방안

- 영업자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나 제 35 조 위반에 대해서는 가급적 영업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 벌 칙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제재수 단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고, 영업자 본인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에게 제재로서의 재교육을 받도록 의 무를 부담지우는 규정은 삭제한다.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의무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5 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 제 38 조(가축분뇨업무담당 <br> 자의 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 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 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실시 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 야 한다. <br> 1. 제 25 조의 규정에 따 른 공공처리시설설치 자등 <br> 2. 제 28 조의 규정에 따 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br> 3. 제 34 조의 규정에 따 른 설계•시공업자 <br> (2) 환경부장관은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 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 | 제25조(권한의 위임) (1)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 1 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 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 흥청장에게 위임한다. <br> (2) 환경부장관은 법 제 47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 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한다. <br> 1. 법 제 41 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br> 2. 법 제 53 조제 3 항제 16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br>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 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 |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br> 법 제 38 조에 따른 교육 <br>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br> 기 위하여 가축분뇨업 <br> 무담당자를 고용하고 <br> 있는 자는 시•도지사 <br> 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 <br> 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br>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br>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br> 2. 교육이수자의 실태 <br> 3. 그 밖에 교육에 필 <br> 요한 자료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br>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br>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br>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 1 항의 규정에 따른 교 <br> 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br> 징수할 수 있다. | 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 <br> 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 <br> 에 대한 교육업무를 다 |  |
| (3) 가축분뇨업무담당자 |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 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 해당기관에 위탁한다. |  |

2）검토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5 조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 는 자는 시•도지사가（1）소속 기술요원의 명단，（2）교육이수자 의 실태，（3）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에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 의무（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 }^{149}$ ））는 가축 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이므로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상 명시 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해당 교육의 실시 주체는 환경부장관이고 법령에서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바 없다．즉 시 • 도지사는 교육과 관련한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 지지 아니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상 권한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3）개선 방안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법률에서 직 접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위임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으로 정하도 록 한다．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 실시 권한을 가 진 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한다．

149）정보제공의무는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의 수집•보관•제출을 요구받는 의무를 말한다．한국은행，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유럽의 행정개혁 동향，제2006－10호， 2006. 3． 5,28 쪽 참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게정ㅇㄴㄴ |
| :---: | :---: |
|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br>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 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 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 다. (각 호 생략) <br>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 용한 자로부터 제 1 항의 규정에 따 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br> (3)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 38 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br> (1) - (2) (현행과 같음) <br> (3)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교육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 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 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br>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br> 2. 교육이수자의 실태 <br> 3. 그 밖에 대통령령(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자료 (4) (현행 제 3 항과 같음)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 | <삭 제> |
| 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br> 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br>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br>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 <br> 조하여야 한다. <br>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br> 2. 교육이수자의 실태 <br>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

(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저수조청소업자의 재교육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도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 :---: | :---: |
| 제 36 조(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 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br> 1. 제 33 조제 2 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br> 2. 저수조청소업자 <br> 3. 일반수도사업자 <br> (2)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 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 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br> (3) 환경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 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52 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br> (1) (생 략) <br> (2) 법 제 3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 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 년 이 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br> 1.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 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자 가 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8 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 터넷을 이용한 교육 <br> 2. 제 1 호 외의 교육대상자: 3 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br> (3) 제 2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 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 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 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 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 한다. |

2) 검토의견

- 「수도법」 제 36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르면 저수조청소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 년 이 내에 재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생각건대,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시간 등에 관한 것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경우처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의 재교육 이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까 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 문이다.

3) 개선 방안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 이수 의무는 새로운 의 무라 할 것이고, 수범자가 해당 법률 조항 및 관련 법률 조항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바(즉 법률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추가적 제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바), 만일 영업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하여 행정측과 수범자측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 영업정지처분과 제재로서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동시에 병과할 경우 제재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헌법 제 13 조 제 1 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중 제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업정지처분 을 받은 자에게 영업정지를 통한 경제적 손실과 재교육 비용 지 급에 따른 부담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자의 동시 병과의 정책적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저수조청소업 현장 감독자에 대한 교육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도법 시행령」 제 52 조 제 2 항 제 1 호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 :---: | :---: |
| 제 36 조(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 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br> 1. 제 33 조제 2 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br> 2. 저수조청소업자 <br> 3. 일 반수도사업자 <br> (2)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 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 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 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1) (생 략) <br> (2) 법 제 3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 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 33 조제 2 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 35 조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 년 이 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br> 1.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 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 자가 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8 시간 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br> 2. 제 1 호 외의 교육대상자 : 3 년마 다 35 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br> (3) 제 2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 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 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 담한다. |

2）검토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는 교육대상 자가 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8 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그 모법（母法）인 「수도법」 제36조 제2항에 서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만 교육 이 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이 하＂감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 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교육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이는 피교육자 또는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지우는 사 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위임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더 나아가（저수 조청소업자의 부담 완화와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감독자는 종 국적으로 조수조청소업자에게 고용되어 그의 이윤창출에 기여하 는 자이므로 관련 경비를 조수조청소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개선 방안
－이상에 따르면 감독자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교육 이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하는바 감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정책적인 필 요가 있다면 그 법률적인 근거를 두도록 한다.

## 【 수도법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6 조(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 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br> (2)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 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 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 설> <br> (3) 환경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 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mathbf{3 6}$ 조(교육) (1) (현행과 같음) <br> (2)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 영요원에게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 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에게 <br> (3) 제 1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 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br> (3) (현행과 같음) |

## 【수도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52 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1) (생 략) <br>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 33 조제 2 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 35 조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br> 1.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 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 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 시간 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br> 2. 제 1 호 외의 교육대상자 : 3 년마 다 35 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br> (3) 제 2 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 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 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 담한다. | 제 52 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1) • (2) (현행과 같음) |

## (5)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하수도법 시행령」제 38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 :---: | :---: |
| 제67조(교육)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자 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 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br> (2) 분뇨수집 - 운반업자, 처리시설설 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 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 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 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br>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 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br>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교육 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교육) (1)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 <br> 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 설의 운영요원 <br>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 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br> 3. 분뇨수집 - 운반업자, 처리시설설 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 함한다) <br> 4. 법 제 66 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br> (2) 제 1 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 야 한다. <br> 1. 최초교육 <br>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1회 실시 <br> 2. 재교육 <br> 가.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운 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 을 받은 날부터 5 년마다 1 회 이상 실시 <br> 나. 법 제 19 조의 4 • 제 49 조 • 제 54 조 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가 고용한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 :---: | :---: |
|  |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br>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br> 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br> 부터 3 년 이내에 1 회 실시 <br> (3) 법 제 67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대상 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 일 이내로 하 고, 법 제67조제 2 항에 따른 교육대상 자의 교육기간은 3 일 이내로 한다. <br> (4) 법 제 67 조제 4 항에 따른 교육과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 설의 운영요원과정 <br>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br> 3. 분뇨수집 - 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br>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 시공업, 개 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 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br>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

2) 검토의견

- 「하수도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분뇨수집 - 운반업자, 처리시설설 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 자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 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해당 교육을 최 초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교육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2호 나목에서는 "법 제19조의4•제49조•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생각건대, 같은 법 제 19 조의 4 , 제 49 조, 제 54 조에 따른 영업정지사 유는 거의 대부분 영업자 본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 이고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영업자 본인이 부담하여 야 할 것인데, 직접적인 법령 위반자가 아닌 기술인력에게 일종 의 제재로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 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는 헌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에 비추어 문제 가 있다.

3) 개선 방안

- 영업자의 「하수도법」 제 19 조의 4 , 제 49 조나 제 54 조 위반에 대해서 는 영업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고, 영 업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3 년 이내에 1 회 재교 육을 받는 것이므로 제재로서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영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에게 제재로서의 재교육을 받 도록 의무를 부담지우는 규정은 삭제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8 조(교육) (1) (생 략) <br> (2) 제 1 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 야 한다. <br> 1. 최초교육 <br>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1회 실시 <br> 2. 재교육 <br> 가.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운 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 을 받은 날부터 5 년마다 1 회 이상 실시 <br> 나. 법 제 19 조의 4 - 제 49 조 • 제 54 조 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가 고용한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 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 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1 회 실시 <br> (3) • (4) (생 략) | 제38조(교육) (1) (현행과 같음) <br> (2) (현행과 같음) <br> 1. (현행과 같음) <br>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br> <삭 제> <br> (3) - (4) (현행과 같음) |

## (6)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교육 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제 24 조(시험 • 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1)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 인력의 확보 •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r> (2)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 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br> (3) 측정대행업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당해 전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br> (4)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 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br> 제 35 조(과태료) (1) 제 23 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br> 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br> 1. ~4. (생 략) <br> 5. 제 24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을 위반 | 제 25 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1)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교육 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으로 한다. <br> (2)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대행 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 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 일까지의 기간 중 제 1 호에 해당하 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br> 1.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br>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 1 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 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5 일 이내로 한다.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
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 7. (생 략)
(3) (생 략)
2) 검토의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2 항에서는 측 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측정대 행업자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당해 전문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 화 하고 있다.
- 그리고 교육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1 항에서는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1) 기술 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 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여기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일종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 어느 경우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

태료 부과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

- 더 나아가 행정청이 아닌 측정대행업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자를 확인하여 그 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개선방안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 다만, 법률에서 제재적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행규칙 차 원에서 제재적 성격의 교육의무 부과 규정을 창설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 측면에서 지양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1)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교 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 원으로 한다. <br> (2)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대행 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 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br> 교육) (1) (현행과 같음) <br> (2) $\qquad$ $\qquad$ $\qquad$ |


| 현 행 | 개정안 |
| :---: | :---: |
|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 일까지의 기간 중 제 1 호에 해당하 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br> 1.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br>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br> (3) 제 1 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 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5 일 이내로 한다. | $\qquad$ <br> 1. . 2. <삭 제> <br> (3) (현행과 같음) |

2.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보고•검사) (1)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 1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2.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 - 시공업자
(2) - (3) (생 략)

제 32 조(허가의 취소 등)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 제 3 호 또 는 제 1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2. 제 4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 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 검사 등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 (생 략)

제 35 조 (등록의 취소 등)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설계 •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 제 2 호 또는 제 8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제 4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 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 •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생 략）

제53조（과태료）（1）•（2）（생 략）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5．（생 략）
16．제 4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4）～（7）（생 략）

2）검토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부장관 등의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행 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조사란＂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 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 1 호）．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제5조），원칙적으로 행정조사

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 의 개별법령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 나 행정조사에 관한 개별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등 일반국민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국민 또는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 려가 있으므로 당해 개별법에 규정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와 범 위에 한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150 \text { ）}}$
－그런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1 항은 조사의 대상•범위 등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151）행정조사의 대상이 되 는 가축분뇨영업자 등에게 적지 아니한 부담을 주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16 호 및 제 35 조 제 1 항 제 10 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 141 조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 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허가•등록 등의 정지•취소처분이 발 해질 수 있고，같은 법 제53조 제3항 제 16 호에 따르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 거나 허위로 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을 발하도록 하는 것은＂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 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제4항）라고 규정하는「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150）국회법제실，앞의 책， 965 쪽 참조．
151）강현철•이세정，앞의 보고서，61쪽 이하 참조．
－참고로 환경부 소관「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1 조 제 1 항에서는 행정조사의 대상 및 범위를 비교 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입법례

【대기환경보전법】 제 82 조（보고와검사등）（1）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 16 조나 제 46 조제 3 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 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 32 조제 7 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제 38 조의 2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제 48 조의 2 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 62 조에 따른 검사 업무，제 74 조에 따른 검사，제 74 조의 2 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사업자
1의2．제 38 조의 2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8．（생 략）
9．전문정비사업자
10．～13．（생 략）
（2）•（3）（생 략）

제131조（출입•검사 등）（1）법 제82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 • 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 참고 입법례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 32 조제 5 항, 법 제 33 조, 법 제 43 조제 2 항, 법 제 44 조제 7 항 또는 법 제 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 16 조, 법 제 29 조제 3 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 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 설 • 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 제 <2013.2.1>
10. 법 제 74 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 (3) (생 략)

## 3) 개선 방안

- 환경부장관 등이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 는 행정조사 대상•범위 등을 법률에서 직접 또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3．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1）저수조청소업자의 영업정지처분 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수도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

## 수도법

제 35 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1）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 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제 34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제 1 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검토의견
－「수도법」 제 35 조 제 1 항에서는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그 중 제3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구성요건 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의 대상이 되는지를 수범자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3）개선 방안
－「수도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를 삭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의 대상 사유를 명확하게 열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외 사유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0 조 제 9 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제66조(과징금 처분) (1) 환경부장관은 제 6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 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제 64 조제 2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 과 -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 3 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br>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1) (생 략) (2)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 제9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 6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생략) <b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br>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br> 2.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 게 위탁처리한 경우 <br>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 관을 설치한 경우 <br> (3) (생 략)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br> 시행규칙 |
| :--- | :--- |
| 할 수 있다. |  |
| 1. 다른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2. 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 |  |
| 은 경우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 |  |
| 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  |
| 4.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 |  |
| 를 한 경우 |  |
| (3) (생 략) |  |

2) 검토의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 본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 을 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 분에 갈음하여 2 억원 이하의 과징금(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한 수단 이외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소위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제2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 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에서는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변경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한 경

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생각건대, 법률규정에 대한 예외는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반하는 것이고, 영업자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다.

3) 개선방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이 아니라 반드시 영업정지로 제재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정도로 중한 법 위반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4．기 타

（1）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결격사유

1）관련 법령 및 조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1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2조（허가의 취소 등）（1）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제 3 호 또 는 제 1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7．제 2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8．제 2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을 한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제 2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제 28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1.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2. 제 30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13. 제 31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 31 조제 5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4. 제 38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 우
15. 제 3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 한 경우
16. 제 4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 • 검사 등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 2) 검토의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4 호에서는 결 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 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 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 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 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질서의 유지를 통 해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 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 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직업（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제한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결격사유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 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이 충족 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 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는바，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 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 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에서 는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는바，이 경우에도 2 년 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지나치 다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 제3호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일괄정 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정비 대상 입법례

【환경영향평가】제 $\mathbf{5 5}$ 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 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 58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법인

3）개선방안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결격사유 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2 호 및 제 13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로 서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를 삭제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제31조（결격사유）（현행과 같음） |
|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  |
|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 |  |
| 을 수 없다． |  |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3．（현행과 같음） |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3．이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  |
| 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4.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 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 32 조(제 2 호 및 제 13 호는 제외한다) $\qquad$ |
| 5. 임원 중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5. (현행과 같음) |

（2）먹는물관련영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
1）관련 법령 및 조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 18 조 제 5 항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 51 조（과징금 처분）（1）환경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자가 제 48 조제 1 항에 해당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 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 <br> 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 <br> 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3）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 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 18 조（과징금의 납부）（1）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 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 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 납 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r> （2）제 1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 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 에 내야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 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br> （3）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 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br> （4）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5）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 2）검토의견

－「먹는물관리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같은 법 제 48 조 제 1 항에 해당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 여 5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에서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5항에서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 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 이다.
- 과징금 제도는 본래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 행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 3320 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본래 부당이득금 박탈적 성격의 것으로서 도입된 과징금은 그 뒤 다수 국민이 이 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 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 정지 등 처분을 하게 한다면 국민에게 생활상 불편을 주는 경우 제재적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소위 "변형된 과 징금")로서 활용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본래적 의미에 서의 과징금보다는 변형된 과징금이 더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에 과징금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1）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일 반 공중에 대한 불편을 일으킴이 없이 행해질 수 있고，（2）벌금 등 형사벌을 과함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피할 수 있으며，（3）벌 금과는 달리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직접 쓰이기 때문에 수익증대 내지 특정사업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현행법상 벌금 및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특정 사유가 있 는 경우 분할납부의 근거가 마련되어 일괄 납부에 따른 경제적 인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율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반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 령」 제 18 조 제 5 항의 경우처럼 과징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것은 제재수단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4 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일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정비 대상 입법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1）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법 제 28 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 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4）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3) 개선방안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 써 과징금 일괄 납부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제수 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납부율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 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 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 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5.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1）관련 법령 및 조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4 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제 13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 • 시공할 것
3．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 년 이상 보관할 것

2）검토의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서는 하•폐 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데，그 중 제4호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 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 무화 하고 있다．
－해당 영업자가 이러한 도면 및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행정비용 및 노력이 들 것인바，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 19 조 제4호에서는 그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함 으로써 과연 언제까지 관련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하여야 의무 이 행이 종결되는지를 알 수 없어 해당 영업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 시공업자의 도면 및 서류 보 존 의무의 이행기간을 한정하도록 한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 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r> 1.~3. (생 략) <br> 4.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 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 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br> 1. ~3. (현행과 같음) <br> 4. $\qquad$ $\qquad$ $\qquad$ $\qquad$ |

##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산업통상자 원부 소관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로 나누어 총 365 개의 법률(해 당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영업규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를 기초로 해당 법제 분야별로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 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2)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 육•훈련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 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4)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각종 보고•신고 의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5) 영업 관 련 의무 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는 경우, (6)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사례 96건을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 <개선 대상 사례 발굴 현황>

| 분 야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ㅌ. | -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 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우 는 경우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 항 신고" 등 2 건 발굴 |
| 교통 | -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자 교육" 등 2건 발굴 |


| 분 야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 -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 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 를 부담지우는 경우 |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사전 고지 예외 사항" 등 4건 발굴 |
|  | -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 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법인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등 2건 발굴 |
|  | -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사유" 등 19건 발굴 |
|  | - 기타(영업과 관련하여 불합리 하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 는 경우) | "골재채취 능력 평가 및 시공 수수 료" 등 2건 발굴 |
|  | 소 계 | 31건 |
| 산업 • <br> 통상 <br> 자원 | -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 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우 는 경우 | "고압가스 제조업 허가 신청 시 제 출 서류" 등 3 건 발굴 |
|  | -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 1 건 발굴 |
|  | -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 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 를 부담지우는 경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중복 보고의무 부과" 등 2건 발굴 |
|  | -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 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등 7건 발굴 |
|  | -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 사업자 휴업 시 신고 직권 말소" 등 4건 발굴 |


| 분 야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 - 기타(영업과 관련하여 불합리 하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 는 경우) | "고압가스사업자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계획 작성의무" 등 11 건 발굴 |
|  | 소 계 | 28건 |
| 보건 • 복지 | -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비용" 등 3 건 발굴 |
|  | -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 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 를 부담지우는 경우 | "장례식영업자의 보고 의무" 등 2건 발굴 |
|  | -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 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세탁물처리업 변경•휴업•재개업• 폐업신고" 등 2건 발굴 |
|  | -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 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 등 사유" 등 7건 발굴 |
|  | - 기타(영업과 관련하여 불합리 하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는 경우) |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 한 영업의 제한" 등 7건 발굴 |
|  | 소 계 | 21건 |
| 문화 • <br> 체육 • <br> 관광 | -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 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시험용 게임물을 이용한 평가 절 차 등" 등 9건 발굴 |
|  | -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 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 관련 제재" 등 3건 발굴 |


| 분 야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 - 기타(영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하 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는 경우) | "영화상영관에서 영사 자격자를 두 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 건 발굴 |
|  | 소 계 | 13건 |
| 환 경 | -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의무" 등 6건 발굴 |
|  | -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 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1 건 발굴 |
|  | -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 "저수조청소업자의 영업정지처분 사유" 등 2건 발굴 |
|  | - 기타(영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하 거나 부당하여 정비를 요하는 경우)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결격사유" 등 4건 발굴 |
|  | 소 계 | 13건 |
|  | 총 계 | 96건 |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업규제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내지 방 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대 국가는 단지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역무 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 할은 경제계획, 조장, 조정, 통제 및 규제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이루 어지고 있고, 특히 국가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행위는 미시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침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 동시에 거시적으

로는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152）

영업활동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할 때，영업활동 규제의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영업자 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영업활 동이 위축되고 영업자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은 결국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결국，영업활 동 규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53）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 항들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입법위임하는 경향이 농후하다．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국 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직접 규율되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에 집행권에 의해 규율되는 현상은 곧 법치국가의 원리가 그만큼 퇴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이다．${ }^{154)}$ 의회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입법의 내 용에 좌우된다는 것은，다시 말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활동의 자유 가 실질적으로는 행정입법（예를 들어 인허가기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영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국민의 권리의 제한은 의회 입법에 의함이 기본이고155）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가장 중 요한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칙에의 부합함을 고려할 때 영업활동 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

152）김해륭，앞의 논문， 347 쪽．
153）이진석，기업활동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규제연구 제22권 제1호，한국 경제연구원，2013．6，88쪽 참조．
154）김해룡，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확립의 과제，김해룡 외，법치가 선진화의 길 이다，한반도선진화재단，2008．1，88쪽．
155）佐藤英善／권기법 역，경제행정법의 구상，경제규제와 법 제 5 권 제 1 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2．5，141쪽 참조．

의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규율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거나 하위법령에서 모법의 위임내용이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새로 규정하거나 법률 의 예외를 둠으로써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여 진입규제를 하는 등 영업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초의 인•허가•등록•신고나 변경인•허가•등록•신고 외에 영 업 수행 상 각종 보고•신고•자료(계획)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는 해당 의무의 부과가 행정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영업 자에게 중복 또는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여 영 업자에게 중복 또는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움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 용을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의무의 내용이나 그 이행기간 을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수행 능력 제고나 공중위생 등 국민보건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 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민간 부문의 자율 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서 강제적인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도 중복교육 해당 여부, 교육 대상자나 교 육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고 교육•훈련 이수가 영업자나 그가 고용한 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외의) 중복 제재적 성격을 띠지 않도록 하여 교육•훈련제도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현황•실태 파악이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의 목 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공무원의 현 장 출입•검사 등의 경우에는 중복•수시 행정조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검토하고 행정조사의 목적, 범위나 대상 등을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자의적•편의적인 행정조사를 통하여 영업자에게 불 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행정조사의 기피•거부• 방해 등과 관련한 제재수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법자 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행정형벌을 예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예정 하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 아무런 제재 도 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률마다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 인데, 제재수단을 두는 경우에도 그 수단이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목 적 달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늘날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범을 탈범죄화 (Entkriminalisierung)함으로써 행정형벌의 비중을 높이고 행정질서벌로 대치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156) 행정형벌 부과를 통한 영업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영업규제 관련 법령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법상 의무 이행 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재적 행정처분, 행정형벌, 과징금•과태료 규정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재수단은 영업규제를 통한 영업질서유지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의 보호, 소비자 보호 등 행정목적 달성 을 위하여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해당 영업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제재의 구성요건을 명 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필요 가 있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수단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적정 하며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과의 균형을 갖추도록 함으로 써 영업자의 불이익 방지, 행정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법적 분 쟁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헌법상 이중제재의 문 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제재적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병과할 경우 156)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755쪽.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중제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 므로 양자의 병과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 하여 가급적 하나의 제재수단만을 예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영업의 (변경)인•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법률에서도 영업별로 수수료를 부과하 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형평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일정한 행정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요구 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 여부,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 영업간 규제형 평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막아 영업자의 부담 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법령 정비 등을 통하여 수수 료 부과의 법률적 근거가 대체로 잘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법령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이용이 강제되 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의 법률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나 혜택을 주지 아니 하고 행정 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로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아 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는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과징금 일괄 납부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 을 완화하고 과징금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과징금 분할납부를 금지하 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강현철 - 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31.

국무총리실,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계획, 2011. 9.
국 회,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 200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규제개혁위원회,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3.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3.
김도형, 영업규제제도에 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김명길, 신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2. 김세규,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 동아법학 제3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김용섭,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판례월보 제352호, 판례월보사, 2000. 1. 김재규, 신고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검토, 법제처, 2001.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002. 2.

김중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 연구 VIII, 박영사, 2013.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김해룡, 경제행정법상 국가에 의한 경제규제조치의 범위와 한계, 공법 연구 제 30 집 제 4 호, 한국공법학회, 2002.
$\qquad$ ,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확립의 과제, 김해룡 외, 법치가 선진화의 길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 1.

박영도 외, 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기법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2. 6. 29.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방기호, 인허가제도설정의 기준,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2012. 12.
서원우, 영업규제의 유형과 문제점, 고시계 제 25 권 제 10 호, 1980. 9.
윤장근, 출입검사 및 질문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 법제 1994년 12월 호, 법제처, 1994. 12.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 Publication?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b6\%9c\%ec \%9e\%85+\%ea\%b2\%80\%ec\%82\%ac\&mpbLegPstSeq=129347>>

이세정,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 연구원, 2012. 10. 31.

이세정 외, 소규모영업자의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법 제처, 2008.

이 원, 영업 인•허가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개선연구 제2집, 법제처, 1996.

이진석，기업활동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규제연구 제22권 제 1 호，한국경제연구원，2013． 6.

정태용，사업규제의 유형，법제연구 제 18 호，한국법제연구원， 2000.
조성규，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고시연구 2005． 1.

조정찬，기업규제 완화의 법적 쟁점，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1 호，서강 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2.

佐藤英善／권기법 역，경제행정법의 구상，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5.

천병태•김명길，행정법총론，삼영사， 2005.
최병선，정부규제론，법문사， 2006.
최영규，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규제행정론적 관 점에서－，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 2.

한국은행，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유럽의 행정개혁 동향，해외경제 포 커스 제2006－10호，2006．3．5～3． 11.

홍정선，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법리 재검토，월간고시，고시계， 2001．4，

홍정선，행정법원론（상），박영사， 2013.
홍준형，행정법총론，한울아카데미， 2001.
福家 俊朗，現代行政の公共性と法—行政の法的存在理由，日本評論社， 2010.

宇賀克也，行政手續法の解說，學陽書房，2006．
H. Wüstenbecker, Besonderes Ordnungsrecht: Versammlungsrecht, Straßenund Straßenverkehrsrecht, Gewerbe- und Gaststättenrecht, Ausländerrecht, 6. Aufl., 2012.
K. Weber, Praxis des Gewerbe- und Gaststättenrechts: Eingriggsverwaltung, Verwaltungsvollstreckung und Ordnungswidrigkeiten, 2012.
P. J. Tettinger/R. Wank/J. Ennuschat, Gewerbeordnung Kommentar, 8. Aufl. München, 2011.
R. Stober, Besonder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Gewerbe- und Regulierungsrecht, Produkt- und Subventionsrecht, 15. Aufl., 2011.
W. Frotscher, Wirtschaftsverfassungs-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 Eine systematische Einführung anhand von Grundfällen, München, 1994.

## 明 0 <br> 『J



## \#II <br> O <br> 마

I．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I．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stackrel{\text { 낭 }}{0}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叫 $4 \%$ |
|  |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 } ⿲ 二 丨 匕 刂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2．건설기술관리법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stackrel{\dot{x}}{K} \\ & \stackrel{1}{K} \\ & \dot{H} \\ & \dot{\bar{x}} \end{aligned}$ |
|  |  |
|  | $\begin{aligned} & \text { 哳 } \\ & \mu \mathrm{O} \end{aligned}$ |
|  |  |
| $\begin{aligned} & \text { 乵 } \\ & \text { ( } \mid=1 \end{aligned}$ | － |



## 건설산업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0 ${ }^{\text {® }}$ |  <br>  <br>  |
| \％o | 研原砍肌灼㣉现 <br>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 } 1 人)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br>  <br>  |
| $\begin{aligned} & \text { 玔 } \\ & \text { ( } \forall \boldsymbol{y} \end{aligned}$ |  |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frac{\text { 蓶 }}{}$ |  <br>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代 } \end{aligned}$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br>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代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상 } \\ & \text { 㖠 } \\ & \text { of of o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玉 } \\ & \text { ( } \mid=1 \end{aligned}$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등록 <br> 신고 유형 | 인 - 허가 등록•신고 의무자 | 인•허가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건축사업 <br> (법 제2조제5호, <br> 재18조) | 건 축사사 <br> 무소 개설 <br> 신고(법 제 <br> 23조제 1 항) | 건 축사 업 을 하려는 건축사 | 국토 교 통 부 장관 | -신고사항 변경 신고/휴업•폐업 신고(법 제27조) |  | 갱신등록 전 실 무 교 육 (법 제30조 의2제1항) |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검사 (법 제 30 조제 1 항) | -법인인 경우의 예 외(시행령 제23조) : 법률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 <br> -손해배상책임보장 보험•공제가입(법 제 20 조제 3 항) |

5．골재채취법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stackrel{\text { 낭 }}{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f } \\ & \text { Ha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刑 } \\ & \text { ( } \mid \boldsymbol{r}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시설•장비• 서류 등 검사(법 제21조제3항) |  |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인중개업 <br> (법 제9조) | 중개사무소 <br> 의 개설등록 <br> (법 제9조 <br> 제 1 항) | 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소속공인중개 사/중개보조원 고용 - 해고신고 (법 제15조제1항) -인장(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중개사무소 이전 |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확 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 출(법 제27조 의2) | - 개 설 등 록 신청시 실무 교육(법 제 34조제1항) -자질, 업 무수행능 력향 상 을 |  | -연수교육기간, 방 법, 비용, 횟수 제 한 규정 미비(시 행령 제28조) |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인 - 허가 -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등록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법 제20조 제 1 항) <br> -휴업•폐업신고 <br> (법 제21조제1항) |  | 위한 연수 교육(법 제 34조제 3 항)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left\lvert\, \begin{array}{\|l\|} \text { 인•헉가• } \\ \text { 등록• } \\ \text { 윤 흉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검•검사 • 질 } \\ & \text { 문(법 제47 } \\ & \text { 제1항) } \end{aligned}$ |  |  |  |

8. 국가통합고통체계효율화법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허가 • 등록 •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 - 등록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공교통시설 <br> 개발사업 <br> 타당성 평가 <br> 대행업 <br> (법 제21조) | 공 공 교통 시설 개발 사업 타당 성 평가대 행자 등록 (법 제21조 제2항)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 성 평가를 대 행하려는 자 | 국 토교통 부 장관 | -중요 사항 변경 등록(법 제21조 제3항) <br> -폐업신고(법 제 24조) |  |  |  | -벌칙 부과 사유 과다함(법 제116조 제6호) |

9. 궤도운송법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궤도사업 <br> (법 제4조) | 허 가 <br> (법 제4조 제1항) | 궤도사 업을 경영하려는 자 | 특 별자 치 도 <br> 지사 - 시장 <br> 군수 - 구청장 | -허가사항 변경 허가/변경신고 (법 제4조제4항) -휴지 • 폐지신고 (법 제11조제1항) -영업양도 등 신 고(법 제9조 제 1항 및 제2항) |  |  |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한 검사(법 제30조제 1항) | -보험가입의무(법 제26조)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F }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1-}{0} \\ &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तन } \end{aligned}$ |  |
|  |  |
|  |  |
|  | 파 <br> who <br> F <br> 빼 덩 <br> 就芸 |
|  |  |
|  |  |
|  | $\text { 用六霍 } \frac{N}{\widetilde{K}}$ |
|  | － |

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dot{x}}{K} \\ & \underset{N}{\mu} \\ & \dot{\bar{x}}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㺫 } \\ & \text { ( } \mid \boldsymbol{y}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12. 도시철도법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br> 신고 •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도시철도사업 <br> (법 제4조) | 면 허 <br> (법 제4조 <br> 제 1 항) | 도시철도사업 <br> 을 하려는 자 | 국토 교 통 부 장관 | -휴업•폐업허가 <br> (법 제4조제4항) -운임(변경)신고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 | - 도시 철도운 영 인력수급 계획 제출 (법 제21조) |  |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도시철도 건설자의 사무 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 하여 업무 상황, 장부 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 건 검사(법 제25 조제 1 항) | -출입•검사 목적 명확화 <br> -출입•검사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필요 -인력수급계획 미 제출 관련 제재조 항 필요 <br> -위탁법인 무상사 용 관련 규정 등 법률화(시행령 제 16조~제19조) -운임신고 관련 절 차 규정 법률화(시 행령 제19조의2) |



##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begin{aligned} & \text { 순 } \\ & \text { 번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 인 - 허가등록 - <br> 신고 유형 | 인-허가- <br> 등록•신고 <br> 의무자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물류 <br> 터미널 <br> 사업 | 복합물류 <br> 터미널 사업 <br> (법 제7조) | 등 록 <br> (법 제7조 <br> 제 1 항) |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을 경 영하려는 자 | 국 토 교 통 부 장관 | -등록사항 변경 등록(법 제7조 제 3 항) <br> -휴업 - 폐업신고 (법 제 15 조제 1 항) -합병 외 사유 해산신고(법 제 15조제2항) |  |  | -복합물류터미널 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복합 물류터미널 건 설에 관한 업무 검사(법 제61조 제 1 항) | -등록의무 위반 과 변경등록의 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정비 필요(법 제65조 제 1 호, 제 2 호/ 제 4 의 2 호, 제 4 의 3호) |
|  |  | 일반물류 <br> 터미널 사업 <br> (법 제2조 제5호) |  |  |  |  |  |  |  |  |
| 2 | 물류창고업 <br> (법 제21조의2) |  | 등 록 <br> (법 제21조 <br> 의 2 제 1 항) | 물 류 창 고를 소유 또는 임 차하여 물류 | 국 토 교 통 부 장관 | -등록사항 변경 등록(법 제21조 의 2 제 2 항) |  |  | -물류창고의 운영 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물류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순 } \\ & \text { 번 } \end{aligned}$ | 영업명 <br>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창고업을 경 } \\ & \text { 영하려는 자 } \end{aligned}$ |  |  |  |  | 창고의 운영에 관한 업무 검사 (법 제61조제2항 본문)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허가 - <br> 등록 <br> 신고 유형 | 인•허가등록•신고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국제물류주선업( <br> 법 제43조) | $\begin{aligned} & \text { 등 록 } \\ & \text { (법 제43조 } \\ & \text { 제1항) } \end{aligned}$ | 국제물류주선 업을 경영하 려는 자 | 국토교통 부 장관 | $\begin{aligned} & \text {-중요사항 변격 } \\ & \text { 등록(법 제 } 43 \text { 조 } \\ & \text { 제 } 2 \text { 항) } \\ & \text {-등록기준에 관 } \\ & \text { 한 사항 신고(법 } \\ & \text { 제43조제 } 4 \text { 항 } \\ & \text {-휴업신고(법 제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변경등록과 등록 } \\ & \text { 기준 신고 중복 } \\ & \text { 행정우려 } \\ & \text {-폐업신고 근거 불 } \\ & \text { 명홥 (ㅓㅓㅂ 제46ㅈㅈㅈㅔ } \\ & 1 \text { 1항, 제 } 4 \text { 항) - 법 } \\ & \text { 제 } 73 \text { 조제 } 1 \text { 항제 } 2 \text { 호 } \end{aligned}$ |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인 • 허가•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등록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조제 1항) <br> -합병 외 사유 해산신고)법 제 46조제2항) |  |  |  | 와의 관계 <br> -법 제43조제4항 <br> 등록기준 미신고 <br> 제재규정 없음(골 <br> 재채취법 제52조 <br> 제1항제2호 비교) |

1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등록 •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감정평가업 <br> (법 제27조) | 감 정 평 가 사사 무소 개 설 신 고 (법 제27조 제1항 전단) | 감정평가업을 영 위 하 려 는 감정평가사 | 국 토교 통 부 장관 | -신고사항 변경 신고/휴업 - 폐 업신고(법 제27 조제1항 후단) | - | - | -감독상 필요한 때 업무에 관한 사 항 보고, 자료 제출/ 사무소 출 입 장부•서류 등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검사(법 제42조 } \\ & \text { 제1항) } \end{aligned}$ |  |

16．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순 번 | 영업명 （조문） | $\left\|\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부동산개발업 <br> （법 제4조） |  | 연면적（「건축 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 을 말한다）이 2 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 천 제 곱미터 이 상 이 거나 | 국 토교통 부 장관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 항 변경신고 （법 제7조제2항） －부동산개발업 폐 업 신고（법 제 15 조제 1 항） | －사 업 실 적， 자본금 변 경，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 문 인 력 변 경보 고 （법 제17조） | －부동산 개 발 전문 인 력 의 부 동 산 개 발에 필요 한 사전교 육（법 제5 조제2항） | －등 록 요 건 에 의 적합 여부 확인， 부 동 산 개 발 의 적정성 등을 판 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업무 나 재무관리상 태 등에 관하여 보고，등록사업 | －시정조치 받은 사 실 공표의 법률 적 근거 둠（법 제 22조제 2 항제 3 호） －등록취소 등 내용 공고의 법률적 근 거 둠（법 제28조） |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游吹 <br> of 㓯交 <br>  <br> 넞다 |  |
| $\begin{aligned} & \stackrel{y}{0} \\ & \text { 마 } \\ & \text { of 항 } \\ & \text { ra } \end{aligned}$ |  |
|  |  |
|  |  |
|  |  |
|  |  <br>  <br>  <br>  <br>  |
|  |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cdot \text { 허가 } \cdot \\ \text { 등록 } \cdot \\ \text { 신고권자 }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안전전문진단업 <br> (법 제9조) | 등 록 <br> (법 제9조 <br> 제1항) |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업무 를 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신고사항 변경 신고(법 제9조 제3항) <br> -휴업•재개업• 폐업신고(법 제 9조제5항) |  |  | -업무에 관한 사 항 파악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관련 서류 등 조사(법 제9조의 6제3항) |  |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순 번 | 영업명 (조문) | $\left\|\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br> (법 제3조) | 면 허 <br> (법 제4조 <br> 제 1 항) | 여객자동차운 <br> 송사업을 경 <br> 영하려는 자 | 국토교통 부 장관 |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고)(법 제 10 조제 1 항) - 여객자 동차 운 송사업 관리 위 탁 신 고) 법 제 13 조제 1 항) -휴업 • 폐업신고 (법 제15조제1항) |  | -운수종사 자의 좌석 안 전 띠 착용교육 (법 제21 조제6항) -운수종사자 교 육 (법 제 25 조제 1항) |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사업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 에 관한 사항 보 고, 서류 제출/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 검사, 관계인에게 질문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 -면허시 제출하는 사업계획 내용 불명확 <br> - 여 객자 동차운 송 사업 관리 위틱 신고 방법•절차 위임 근거 미비 (시행규칙 제34조) -행정조사 목적 명확화 필요 |
| 2 | 자동차대여사업 <br> (법 제28조) |  | 자 동차 대 여 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 |  |  | " | -자동차 대여사엽 관리 위탁 허가 신청 방법, 절차 등 위임 근거 필 요(시행규칙 제 70조)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䂭吹 <br> of 泚交 <br>  <br> 宸皃动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dot{\bar{x}} \\ & \bar{K} \\ & \dot{H} \\ & \dot{\bar{x}}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聖嗎 } \\ & \text { 砍些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仿 } \end{aligned}$ | m | $\dagger$ |

19．자동차관리법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낭 } \\ & 0 \text { 마 } \\ & \text { of of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등록 } \\ \text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등록 <br> -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신 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기 <br> 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 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begin{gathered} \text { 카지노업 } \\ \text { (법 제171조의6) } \end{gathered}$ | 허 가 <br> (법 제171조 <br> 의 6 제 1 항) | 카 지 노업 의 <br> 허가를 받으 려는 자 | 도지사 |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 는 서류 |  |  |  |  |
| 2 | 휴양펜션업 <br> (법 제174조) | 등 록 <br> (법 제 174 조 제 1 항 전단) |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 | 도지사 | -등록사항 변경 등록(법 제174조 제 1 항 후단) |  |  |  | -등록 전에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 174조제2항) <br> -등록/승인 취소 사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 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법 제 174 조제 7 항) |

21. 지하수법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left\lvert\,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br> 신고권자 | 인•허가 - 등록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지하수개발 <br> 이용시공업 <br> (법 제22조) |  | 지하수개발 - <br> 이 용시공업 <br> 을 하려는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begin{aligned} & \hline \text {-등록사항 변경 } \\ & \text { 등록)법 제22조 } \\ & \text { 제1항 후단) } \end{aligned}$ |  | -지 하수개 발 - 이용 관련 기술 인력 교 육(법 제 34조의 2 ) | -등록요건 및 법 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 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자 료 제출•보고(법 제 34 조 제 1 항)/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 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 당 사업장 등을 출입 - 조사(같은 조 제2항)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1-}{0} \\ & \text { 叶 } \\ & \text { or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 } \mid=1 \end{aligned}$ | $\sim$ | m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허가 등록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철도사업 (법 제5조) | 면 허 <br> (법 제5조 <br> 제1항) | 철도사 업을 경영하려는 자 | 국 토교통 부 장관 | -운임 • 요금(변궁) 신고(법 제9조제 1항) <br> -사업계획변경 신고(법 제12조 제 1 항 본문) -사업계 획중요 사항 변경인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 -휴업 - 폐업허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 <br> -선로 또는 교량 의 파괴, 철도 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  |  | -철도사업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 한 사항 보고. 서류 제출(법 제 47조제 1 항)/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철 도사 업 자 의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 검사(법 제 47조제2항) | -사업정지처 분을 갈음하여 1 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 과 - 징 수 (법 제17조제1항)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left\lvert\,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잉•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유로 휴업하 는 경우는 신고 (법 제15조제1항 단서) |  |  |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 \text { 등록• } \end{aligned}$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측량업 <br> (측지측량업/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 등 록 | 측량업을 하 려는 자 | 국토교통 부 장 관(측지 측 량업, 연안조 사측량업, 항 공촬영업, 공 간영상도화업, |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 제44조 제4항) <br> -휴업 • 폐업 • 재개업신고(법 제48조) |  |  |  | $\begin{aligned} & \text {-측량기술자, 수로 } \\ & \text { 기술자, 그 밖에 } \\ & \text { 측량 또는 수로 } \\ & \text { 분야에 관련되 } \\ & \text { 업무에 종사하는 } \\ & \text { 자에 대한 교육훈 } \end{aligned}$ |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허가 • <br> 등록 • <br> 신고 유형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 34 조) |  |  | 영상처리업, 수치 지 도 제 작업, 지도제 작업, 지하시 설물측량업) <br> 시 - 도지사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  |  |  |  | $\begin{aligned} & \text { 련 실시 근거 조 } \\ & \text { 항만 있음(법 제 } \\ & \text { 98조) } \end{aligned}$ |
| 2 | 수로사업 <br>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45조) | 등 록 | 수로사 업을 하려는 자 | 해 양수산 부 장관 |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 제54조 제4항) -휴업•폐업• 재개업신고(법 제54조제6항) |  |  | " |  |
| 3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 (법 제93조) | $\begin{aligned} & \text { 등 록 } \\ & \text { (법 } \\ & \text { 제93 } \\ & \text { 조제 } 1 \text { 항) } \end{aligned}$ | 측량기기의 성 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 제93조 제1항) |  |  | " |  |


| 순 번 |  |  | 인 - 허가 등록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 | 항공 <br> 운송 <br> 사업 | 국내 항공 <br> 운송 <br> 사업/ <br> 국제 <br> 항공 <br> 운송 <br> 사업 <br> (법 <br> 제112조) | 면 허 <br> (법 제112조 제1항 본문) | 국 내 항 공 운 송사업 또는 국 제 항 공 운 송사업을 경 영하려는 자 | 국토 교통 부 장관 | -정기편 운항 <br> 허가(법 제112 조제2항) <br> -부정기편 운항 <br> 허가(법 제112 <br> 조제4항) <br> -면허사항 변경 면허 또는 허 가사항 변경허 <br> 가(법 제112조 제5항) <br> -운항규정 및 정비 규정 신고(법 제 116조제1항 본문)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 로그램 등 인 | -운항증명 (법 제 115 조의 2 제 1항) |  | -업무에 관한 보 고, 서류 제출(법 제 153 조제 1 항 제 4호)/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 우 사무소, 공장 이나 그 밖의 사업장 등에 출 입 서류, 물건 검사, 관계인 질 문 등(법 제 153 조제2항) | -운항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 억 원 이하의 과징 금 부과(법 제 115 조의 4 제 1 항)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 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법 제 131 조제 1 항) |

I.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H }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text { 值 }}{0} \text { 叶 } \\ & \text { of o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br>  | $=$ |
|  |  | 파 <br> who <br> तन <br> 빼 就 <br> 的 |
|  |  |  |
|  |  |  |
|  |  |  |
|  |  | N |



| $\begin{aligned} & F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 <br> 빼앙 <br> 下 <br> 岖㲾动笑 | $=$ | $=$ |
|  |  |  |  |  |
|  |  |  | 此迅苛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페 } \\ & \text { 㨁 } \end{aligned}$ | m | $\checkmark$ | in | $\bigcirc$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br>  <br>  <br>  <br>  <br>  |  |
| $\begin{aligned} & \frac{15}{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v } \\ & \text { 뎍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 } ⿲ 二 丨 匕 刂 \end{aligned}$ |  |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end{gathered}$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해외건설업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br>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법 제6조 및 <br> 시행령 제 5 항제 1 호와 결부된 별표1) |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 국토교통 부 장관 | -신고사항 변경 신고(법 제6조 제1항 후단) -현지법인 설립• 인수 신고(법 제 10조) | -해외공사 수 주활동 및 시 공 상황 보고 (법 제13조)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碗吹 <br> of 些交 <br>  <br> 震空动 |  |
|  |  |
|  |  |
|  |  |
|  | 파 <br> W <br>  <br> 峅成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干 } \\ & \text { ( } k=1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湤砍 <br> of 些京 <br> 础舀苃 <br>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text { o 마 } \\ & \text { of or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br>  <br>  <br>  <br>  |  |
|  |  |  |  |
|  |  |  |  |
|  |  |  | $\frac{i}{\pi}$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 } k=1 \end{aligned}$ |  |  |  |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0 \\ & \text { 마 } \\ & \text { of 항 } \\ & \text { RA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磁哬 | $\text { 迅 } \frac{\text { N- }}{\frac{\lambda}{K}}$ |
| $\begin{aligned} & \text { 玔 } \\ & \text { 何 } \end{aligned}$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 <br> 등록. <br> 신고 유형 | 인•허가. <br> 등록 - 신고 <br>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계량기 제작업 (법 제6조) | 등 록 <br> (법 제6조제 1항제1호) | 계량기 제작업 을 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begin{aligned} & \text {-등록사항 변경 } \\ & \text { 등롱(법 제6조 } \\ & \text { 제1항후단) } \end{aligned}$ |  | - 안 전 교육 <br> (법 제23 <br> 조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필요한 보 고 또는 자료제 출 요구/ 사업자 의 사업장 등 출 입, 계량기나 장 부, 그 밖의 물 건의 검사, 관계 인에게 질문(법 제34조제1항) |  |
| 2 | 계량기 수리업 (법 제6조) | $\begin{aligned} & \text { 등 록 } \\ & \text { (법 제6조제 } \\ & \text { 1항제2호) } \end{aligned}$ | 계량기 수리업 을 하려는 자 | " |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rray}{\|c} \text { 인•헉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계량증명업 <br> (법 제6조) |  |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 | " |  |  | " | " |  |
| 3 | 계량기수입업 (법 제8조제1항) |  |  |  |  |  |  | " | -계량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등록 등 을 통하여 영업을 규제하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법 제 38 조제 1 항에서는 수입업 자의 등록취소, 사업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리업의 오타일 가능성 있음) |
| 4 | 계량기판매업 (법 제9조제1항) |  |  |  |  |  |  | " | -계량기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등록 등 을 통하여 영업을 규제하지 아니함 |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स्ग } \\ & \text { ( } k=1 \end{aligned}$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end{gathered}$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 - 해임 - 퇴직 신고(법 제154조 제3항) |  |  |  |  |
| 2 | $\begin{gathered} \text { 고압가스 } \\ \text { 판매업 } \\ \text { (법 제4조제3항) } \end{gathered}$ | 허 가 | 고 압 가 스를 판매하려는 자 | " | -허가사항 변경 허가(법 제4조 제3항 후단) -사업 개시•중 단 - 폐지 • 재 개신고(법 제7조) -안전관리자 선 임 - 해임 - 퇴직 신고(법 제154조 제3항) |  | " |  |  |
| 3 | $\begin{aligned} & \text { 고압가스 용기 } \\ & \text { 등 제조업 } \\ & \text { (법 제5조) } \end{aligned}$ |  | 용기 등을 제 조하려는 자 | " | -중요사항 변경 허가(법 제5조 제1항 후단) -사업 개시•중 단 - 폐지 - 재개 신고(법 제7조) -안전관리자 선 |  | " |  |  |


| $\begin{aligned} & \mathrm{H}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text { 佫 }}{0} \text { 叶 } \\ & \text { of of } \\ & \text { ra } \end{aligned}$ |  | ＝ | ＝ |
|  |  |  |  |
|  |  |  <br>  <br>  <br>  <br>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페 } \\ & \text { 陇 } \end{aligned}$ |  | $\checkmark$ | n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1 \\ & I \end{aligned}$ |  |  |
| :---: | :---: | :---: |
| 永吹 <br> or 留交交 <br>  <br> 零皃动 |  |  |
| $\begin{aligned} & \frac{1-1}{0} \text { 마 } \\ & \text { off } \\ & \text { of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 }=\boldsymbol{y} \end{aligned}$ |  | $\bigcirc$ |


| $\begin{aligned} & \text { 거 } \\ & \text { II } \end{aligned}$ |  <br>  <br>  <br>  <br>  <br>  |
| :---: | :---: |
|  |  |
| $\begin{aligned} & \frac{k-1}{0} \text { 叫 } \\ & \text { of 두 } \\ & \text { FA } \end{aligned}$ |  |
|  |  |
|  |  |
|  |  |
|  | 荘六 <br> 需衣六 <br> 兩 <br> 啊安市 <br> 跃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形 } \\ & \text { 陌 }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등록. 신고 유형 | 인•허가- <br> 등록 - 신고 <br> 의무자 | 인•허가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기술신탁관리업( 법 제35조의2) | 허 가 <br> (법 제35조 <br> 의 2 제 1 항) | 기 술 신 탁 관 리업을 하려 는 자 | 산 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승인 (법 제35조의 2 제7항) |  |  |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 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전 년도 사업 실적, 해당 연도의 사 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 등(법 제35조의6) | -변형 과징금(법 제35조의8) -허가사항에 대한 번경허가 및 변 경사항 통보, 휴 업•폐업 통보 법률적 근거 미비 (시행령 제 35 조제 1항부터 제3항까 지) |

5．도시가스사업법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text { 估 }}{0} \text { 叶 } \\ & \text { of } \\ & \text { Fif } \end{aligned}$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dot{x}}{\bar{k}} \\ & \dot{H} \\ & \dot{\alpha}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text { \| 인•허가• } \begin{gathered} \text { 등록• } \end{gathered}$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일반 } \\ & \text { 도시 } \\ & \text { 가스 } \\ & \text { 사업 } \\ & \text { (법 } \\ & \text { 제3조 } \\ & \text { 제2항) } \end{aligned}$ | 제2항 전단) | 는 자 |  | 제2항후단) <br> -사 업 개시 - 휴 업 • 폐업신고 (법 제8조) -도시가스요금 • 공급규정 (변경) 승인(법 제20조 제1항) -안전관리자 선 입 - 해입 - 퇴직 신고(법 제29조 제2항) | 제18조제1항) -가스공급계 획변경보고 (법 제18조 제3항) -사업 개시 전 안전관리규정 제출(법 제 26조제1항) |  | 1. 가스공급업무 의 운영에 관 한 사항 <br> 2. 가스공급시설 의 공사•유지 및 운용상 안전 에 관한 사항 <br>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br> 4. 가스사용시설 에 대한 안전조 치업무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사실 통보(법 제41조 제3항) |  |
|  | $\begin{aligned} & \text { 도시 } \\ & \text { 가스 } \\ & \text { 충전 } \\ & \text { 사업 } \end{aligned}$ | 허 가 <br> (법 제3조 제3항 전단) | $\begin{aligned} & \text { 도 시 가 스 충 } \\ & \text { 전사업을 하 } \\ & \text { 려는 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시 장 • 군 } \\ & \text { 수•구청장 } \end{aligned}$ | -허가사항 변경 허가(법 제3조 제3항 후단) -사업개시 - 휴 | -사업 개시 전 안전관리 규정 제출 (법 제26조 |  | -사고 발생 사실 통보(법 제41조 제3항) | -사업소마다 허 가를 받아야 함 |


| $\begin{aligned} & \mathrm{F}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text { 值 }}{0} \text { 叶 } \\ & \text { of o } \\ & \text { तन } \end{aligned}$ |  |  |
|  | $\begin{aligned} & \frac{7}{100} \\ & \frac{1}{\sqrt{10}}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玔 } \\ & \text { 陌 } \end{aligned}$ |  | $\sim$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통 상 자 원 부 장 } \\ & \text { 관의(변경)승인 } \\ & \text { (도시가 스사 업 } \\ & \text { 자인 천연가스 } \\ & \text { 수출입업자 만 } \\ & \text { 해당함)(법 제 } \\ & 10 \text { 조의 } 5 \text { 제 } 1 \text { 항) } \end{aligned}$ |  |  |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허가• 등록 • <br> 신고 유형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석유정제업 (법 제5조) | 등 록 <br> (법 제5조 제1항 전단) |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 | 산 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begin{aligned} & \text {-등록사항 변경 } \\ & \text { 등록(법 제5조 } \\ & \text { 제1항 후단) } \end{aligned}$ | -석유제품 판 매가격 보고 (법 제38조 |  | -사업에 관한 보 고를 명하거나/ 사무소 또는 사 | $\begin{aligned} & \text {-등록제항 사유 불 } \\ & \text { 명확시행령 제9 } \\ & \text { 조제2항제4호) } \end{aligned}$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등록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 •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br> (윤활유 등 대 통 령 령 으로 정하 는 제품의 경우, 법 제 5 조 제 2 항 전단) | 윤활유 등 대 통 령 령으 로 정하는 제품의 석 유 정 제 업 을 하려는 자 |  | -사업 개시 - 휴 업 • 폐업신고 (법 제12조제2항) <br> -신고사항 변경 신고(법 제5조 제2항 후단) -사업 개시•휴 업 - 폐 업신 고 (법 제12조제2항) | 의 2 제 1 항) |  | 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 시 설 등 물건 검사, 시료 채취(법 제 38조제1항) |  |
| 2 | 석유수출입업 (법 제9조) | 등 록 <br> (법 제9조 <br> 제 1 항) | 석유수출입업 을 하려는 자 | 산 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등록사항 변경 등록(법 제9조 제2항) <br> -사업 개시 - 휴 업 • 폐 업 신고 (법 제12조제2항) | " |  | " | -천연가스수출입 업 제외함 -등록제한 사유 불명확(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제 4 호) |
| 3 | 석유판매업 <br> (법 제10조) | 등 록 <br> (법 제 10 조 <br> 제1항 본문) |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 | $\begin{array}{\|l} \text { 시 • 도 지 사 } \\ \text { 또는 시장 - } \\ \text { 군수 • 구청장 } \end{array}$ | -등록사항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법 제10조 | " |  | " |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록 <br> (법 제 10 조 제 1 항 단서) | 부산물인 석유 제품을 생산 하여 석유판 매업을 하려 는 자 | 산 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제3항) <br> -사업개시•휴업• 폐업신고(법 제 12조제2항) |  |  |  | $\begin{aligned} & \text { 시 - 도지사 또는 } \\ & \text { 시장 } \cdot \text { 군수 } \cdot \text { 구 } \\ & \text { 청장에게 신고 } \\ & \text { (법 제 } 10 \text { 조제 } 2 \text { 항) } \\ & \text {-등록제한 사유 } \\ & \text { 불명확(시행령 제 } \\ & 15 \text { 조제 } 2 \text { 항제 } 4 \text { 호) } \end{aligned}$ |
| 4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법 제32조) | 등 록 <br> (법 제32조 제1항 본문) | 석 유 대체 연 료 제조•수 출입업을 하 려는 자 | 산업통 상 자 원부장관 |  |  |  | " |  |
| 5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br> (법 제33조) | 등 록 <br> (법 제33조 제 1 항 전단) | 석 유 대체 연 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 | $\begin{aligned} & \text { 시 } \cdot \text { 도 지 사 } \\ & \text { 또는 시장 } \\ & \text { 군수 } \text { •구청장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등록사항 변경 } \\ & \text { 등로(법 제33조 } \\ & \text { 제1항 후단) } \end{aligned}$ |  |  | " |  |


| $\begin{aligned} & A \\ & =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stackrel{1}{0} \\ &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ra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玔 } \\ & \text { 何 }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응 • 보급 촉진법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등록 •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신•재생에너지 <br> 설비 <br> 설치전문기업 <br> (법 제22조) | 신 고 <br> (법 제 22 조 <br> 제 1 항) | 신•재생에너 지 설비의 설 치를 전문으 로 하려는 자 | 산 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  |  |  | -지원을 위한 신 고임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left\|\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 제 3 조) | 허 가 (법 제3조 제 1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을 하려는 자 | 특 별시 장 광 역 시 장 • 도지사 또는 특 별 자 치 도 지사 <br> (서울특 별시 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 우에는 해당 시장) | -중요사항 변경 허가(법 제3조 제3항 본문) -경미사항 변경 신고(법 제3조 제 3 항 단서) -사업개시 - 휴 업 - 폐업 • 재 개 업 신 고 (법 제7조) -안전관리자 선 임 - 해입 - 퇴직 신고(법 제16조 제2항) | -사업시작시 안전관리규정 제출(법 제 12조제1항) -판매가격 보고 (법 제38조의 2제1항) -사고발생 통보 (법 제39조제 1항) | - 안 전 교육 <br> (법 제28 <br> 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보고. 서류 제출/ 사업 소•공장 - 사업 장이나 창고 등 조사(법 제 38 조 제1항) | $\begin{array}{\|l\|} \hline \text {-사업소마다 허가 } \\ \text {-2천만원 이하의 } \\ \text { 과징 } \end{array}$ |
| 2 | 액화석유가스 용품제조사업 (법 제 3 조) | 허 가 (법 제3조 제 1 항) | 액화석유가스 용품 제조사업 을 하려는 자 | 특 별시 장 광역시 장 . 도지사 또는 | " | -사업시작시 안 전 관리 규 정 제출(법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宿吹 <br> of 和立交 <br> 变口盟 <br> 넞영 |  | ＝ |
| $\begin{aligned} & \stackrel{y}{0} \\ &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of of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स } \\ & \text { (1) } \end{aligned}$ |  | m |

702
ㅍ．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F }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15}{o} \text { 叶 } \\ & \text { of } \\ & \text { FA } \end{aligned}$ |  | $=$ |  |
|  |  |  <br>  <br>  <br>  |  |
|  |  |  | स० व丁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灿 } \\ & \text { 陙 } \end{aligned}$ |  | ＋ | n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玔 } \\ & \text { (H) } \end{aligned}$ |  | $\bigcirc$ |

10．에너지이응 합리화법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br>  <br>  <br>  <br>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dot{x}}{K} \\ & \stackrel{H}{\prime} \\ & \dot{\bar{x}} \end{aligned}$ |
|  |  |  |
|  |  |  |
|  |  |  |
|  | － | $\sim$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H \\ & H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br>  <br>  <br>  <br>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灿 } \\ & \text { 陙 } \end{aligned}$ |  |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엔지니어링사업 <br> (법 제21조) | 신 고 <br> (법 제21조 제 1 항) | 엔지 니어 링 활동을 영업 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 | 산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21조 제2항) -휴업•폐업신고 (법 제21조제2항) |  |  |  | -휴업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고를 말소하는 것은 과다한 제 재임(법 제 24 조 제2항) <br>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또는 영업정 지사유 중의 하나 인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는 불명 확한 사유일 수 있음(법 제24조제 1항제6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영업정지처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F } \\ & \text { II }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1-1}{0} \\ & \text { of } \\ & \text { of } \\ & \text { NA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开 } \\ & k \mid ⿲ 二 丨 匕 刂 \end{aligned}$ |  |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특정물질 제조업 <br> (법 제4조) | 허 가 (법 제4조 제 1항) | 특 정 물 질 의 제조업을 영 위하려는 자 | 산 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허가사항 변경 허가(법 제4조 제1항 본문) -경미사항 변경 신고(법 제4조 제1항 단서) -휴업 • 폐업 • 재개업신고(법 제8조) <br> -특정물질 수량 허가(법 제9조 제1항) <br> -특정물질 수량 신고(법 제9조 제2항) <br> -특정물질 제조 수량 증량 허가 (법 제10조제1항) |  |  |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법 제25조제1항) -사무소•공장, 그 밖의 사업소 검 사(검사 대상 사 유를 열거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판매 업은 별도로 규 제하지 아니하나, 제조하거나 수입 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음(법 제13조) -제조•수입 부담금 부과(법 제24조의2)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 - 허가- <br> 등록 - 신고 <br>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 •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2 | 특정물질 수입업 (법 제11조) | 허 가 <br> (법 제11조 제 1 항 전단) | 특 정 물 질 을 수입하려는 자 | 산 업 통 상 자 원부장관 | -허가사항 변경 허가(법 제11조 제1항 후단) |  |  | " |  |
|  | 특정물질 <br> 사용업 <br> (법 제16조) |  |  |  |  |  |  | " | -특정물질 사용업 은 별도로 규제 하지 아니하나, 특정물질의 배출 을 억제하고 특 정물질을 합리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 무를 부과함(법 제16조) |

13. 유통산업발전법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법 제8조) | 등 록 <br> (법 제8조 제1항 전단) | 대규모(준 대 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 특 별 시 장 시장 - 군수 구청장 | -등록사항 변경 등록(법 제8조 제 1 항 후단) -휴업 • 폐업신고 (법 제 13 조의 2 ) | -영업 시작 30 일 전까지 개 설계획 예고 (법 제8조의 2 ) |  |  |  |

## 1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할응 촉진에 관한 법률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 유형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이러닝사업 <br> (법 제20조의4) | 신 고 <br> (법 제20조 의 4 제 1 항) | 이러닝사업자 (임의신고) |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  |  |  |  | -지원을 위한 기술 인력 - 사업수행 실적 등 신고임 |

15. 전기공사업법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rray}{\|l\|} \hline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전기공사업 <br> (법 제4조) |  |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기술능력 • 자본 금 등 등록기준 신고(법 제4조 |  |  | -공사업 관련 정 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 -등록제한사유 불 명확(시행령 제6조 제2항제 3 호) |

712

| $\begin{aligned} & H \\ & = \end{aligned}$ |  <br>  <br>  N <br>  |
| :---: | :---: |
| 湤吹 <br> of 誛交 <br> 少唯员 <br> 震岳 |  |
| $\begin{aligned} & \frac{15}{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n } \\ & \text { 뎍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玪 } \\ & \text { 仿 } \end{aligned}$ |  |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 $\left\lvert\,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gathered}\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전기 <br> 사업 <br> (법 <br> 제7조) | 발전 사업 |  | 발 전사업 을 하려는 자 | 산업통 상 자 원부장관 | -허가사항 변경 <br> 허가(법 제7조 <br> 제1항 후단) <br> -사 업 개시신고 <br> (법 제9조제4항) <br> -전기안전관리자 <br> 선임 • 해임(변 <br> 경)신고(법 제 <br> 73 조의 2 제 1 항) | -중대사고 발 생 통보(법 제 96 조의 3 제 1항) | -안 전 관리 교육(사업 자가 아니 라 전기 안 전 관리 자만 해 당 함) (법 제 73 조의 4제1항) |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확인 조사, 자료 등 제출/ 장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조사(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 24 조제 1 항) |
|  |  | $\begin{aligned} & \text { 송전 } \\ & \text { 사업 } \end{aligned}$ | " | 송 전사 업을 하려는 자 | " | -허가사항 변경 허가(법 제7조 제 1 항 후단) -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 -전기시설 이용 요금 등 인가 | " |  | " |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등록 •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15조제1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변 경)신고(법 제 73조의 2 제 1 항) |  |  |  |  |
|  | 배전 사업 | " | 배 전사업을 하려는 자 | " | -허가사항 변경 허가(법 제7조 제 1 항 후단) -사업 개시신고 <br> (법 제9조제4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변 경)신고(법 제 73조의 2 제 1 항) -전기시설 이용 요금 등 인가 (법 제15조제1항) | " |  | " | " |
|  |  | " | 전기판매사업 <br> 을 하려는 자 | " | -허가사항 변경 허가(법 제7조 |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1-1}{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㔻㔄研 |  |
| $\begin{aligned} & \text { 刑 } \\ & \text { ( } \mid=1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H \\ & I \end{aligned}$ |  |  |
| :---: | :---: | :---: |
|  |  |  <br>  <br>  <br>  <br>  <br>  |
| $\begin{aligned} & \frac{15}{0} \text { 叶 } \\ & \text {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im$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mathrm{F}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F } \\ & \text { र } \end{aligned}$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등ㄱ․․位눌을 <br>  <br> 戸号昆品 裸品吉 <br>  <br>  <br>  를纪展 아으울 릉을 正埌昆总 60昆最品 品相 <br>  <br> 「位 릉눌을 110 <br>  <br>  | 晶）롳（ 位百品 <br>  <br>  읎놏 릉울핑前 융릋＇븐운 <br>  |  |  |  |  | 小x星けとしx辰 |  | 右웅 lyex <br> 昆誛 <br> Ľer <br> LyE <br> 昆誛 <br> 直立 <br> 以尼 <br> 艮斯 <br> 导ly <br> lye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_{\text {a }}$ | 十狠•問空 <br>  그잉 릉눌ㄹㄹ•凸1と | $\begin{gathered} \frac{1}{\square} 10 \\ \frac{1}{7} 10 \frac{1}{8} \mathbb{2} \mathbb{2} \end{gathered}$ |  | 올 눌올•딴 극옥근 16 올 따 눌을•－ㄴㄴ응．To |  |  |  |  |  | 同 |

․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1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응촉진에 관한 법률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mathrm{F}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밍ㅇㄱㄱ글ㅂㅂ긍 <br>  운‘壬㒸と 1 石告和S 和り品 를断 <br>  <br>  <br>  <br>  <br>  <br>  다응ํㅇ공 프른ㄴ <br>  （욜 （Kモ天SI <br> 居台屏て H0 胥 <br>  | 奴昆 飞部 石指工 カ艺トと・年 <br> 这昆比 后㘿 工 れ戸䒜けと・テ昆 <br>  <br>  <br>  |  |  | 唱）正民（艮角） <br>  <br> （은난 テレI以晶）でき <br>  <br> 昆）区埌昆比比一 <br>  <br>  | 民兆高居比早刍昆㸚 |  |  | 昆ty <br> ととれ1t <br> 舌艮 <br> 以な <br> 曼多 <br> 居ty <br> fo九保気就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_{\text {a }}$ | 十尼•問空首 론날란•化百 모잉 릉눌라•픈 |  |  | 올 눌올•땂 극윽 16 을 따 <br>  |  |  |  |  |  | 瓦 곷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left\lvert\,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관청에서 가 지고 있는 서류임 (시행규칙 제 15 조 제2호 및 제3호) |

2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 등록 • 신고 유형 | 인•허가•등록 <br> - 신고 <br> 의무자 | 인•허가•등록 <br> -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신 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기 <br> 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해외자원개발 사업 (법 제5조) | 신 고 <br> (법 제5조 제1항 전단) | 해외자원개발 <br> 사업을 하려 는 자 | 산 업통 상 자 원부장관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5조 제1항 후단) |  |  | -필요하다고 인정 <br> 할 때 사업에 <br> 관한 보고, 서류 <br> 제출(법 제19조 <br> 제1항) <br> -사무소에서 장부 | -목적 외 사업을 한 자를 곧바로 벌칙규정에서 제 <br> 재(법 제 24 조의 2 <br> 제2호) <br> -법률의 수권 근거 |


| $\begin{aligned} & A \\ & F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0 \\ & \text { of } \\ & \text { of or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玉 } \\ & \text { ( } \mid=1 \end{aligned}$ |  |

III．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Nन } \\ & \text { ion }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做 } \\ & \overline{\mathbb{R}} \end{aligned}$ | $\begin{aligned} & \frac{4-r}{0} \text { 叶 } \\ & \text { of or } \\ & \text { rat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6 T \\ & \hline 00 \end{aligned}$ |  |  |
|  |  |  |
| $\begin{array}{ll} \text { 出 } & \bar{\delta} \\ \text { 初 } \\ \pi & \frac{\pi}{\pi} \end{array}$ |  |  |
|  |  |  |
|  |  |  |
| $\cdots$ |  |  |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何 }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인•허가•등록 <br> - 신고 <br> 의무자 | 인•허가•등록 -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신 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기 <br> 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중위생영업 (숙박업/목욕장업/ 이용업/미용업/ 세탁업/위생관리 용역업) (법 제3조) | 신 고 <br> (법 제3조 제1항 전단) | 공중위생영업 을 하고자 하 는 자 | 시장 - 군수 구청장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3조 제1항 후단) -폐업신고(법 제 3조제2항) |  | - 위 생교육 (매년, 영 업신고의 경우 미리 또는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는 기한 안)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 보고/ 영업소 - 사무 소 - 공중이용시 설등 출입 검사, 서류 열람(법 제 9조제1항)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의 2제1항) -과징금 분납 금지 (시행령 제7조의 3제5항) <br> -법률의 근거 없 이 세탁업자단체 에 분쟁조정 노력 의무를 부과(시 행령 제 10 조) -위생교육단체 허 가 투명화 필요 (법 제17조제4항, 시행규칙 제 23 조 |

III．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H I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0 \\ & \text { 마 } \\ & \text { of of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א } \end{aligned}$ |  |

3．모자보건법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end{aligned}$ <br> 신고 유형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산후조리업 <br> （법 제15조） | 신 고 （법 제 15 조 제1항 전단）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 특 별자 치 도 지사 또는 시 장－군 수－구청장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15조 제1항 후단） －폐업•휴업• 재개업신고（법 제 15 조의 10 ） |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정기 적，신고의 경우 미리， 일정한 경 |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보고／출입 검사•서류 열 람（법 제 15 조의 7 제1항） | $\begin{aligned} & \text {-영업정지처분에 } \\ & \text { 갈음하여 } 3 \text { 천만 } \\ & \text { 원 이하의 과징 } \\ & \text { 금 부과 (법 제 } 15 \\ & \text { 조의 } 11 \text { 제 } 1 \text { 항) } \\ & \text {-과징금 분납 금지 } \end{aligned}$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FA } \\ & T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  <br>  <br>  <br> （홍9｜ㄴ <br>  <br>  <br>  <br> 相倞 릉品品 글加 断昆 10 気五晶 10 比热 工－ |  |  |  | （エ\＆S\｜ <br>  <br> －昆 组•昆皆 <br>  <br> 唱）区防品角 <br> 으난 극 그안 <br> 둥울 을 울 比一 <br> （옹댄 <br>  <br>  | tyly五•ly |  |  | （天IS比晶）昆운 $10-1 \times$ 곤븐옹 | I |
| :---: | :---: | :---: | :---: | :---: | :---: | :---: | :---: | :---: | :---: |
| 区 1 日 |  | $\begin{gathered} \frac{1}{\square} t_{0} \\ \frac{1}{y}[0 \text { 뇽 } \pi \end{gathered}$ |  |  |  |  |  | $\begin{aligned} & \text { (곰耳) } \\ & \text { 品昆品 } \end{aligned}$ | 纱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 •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치과기공물 <br> 제작업 <br> (법 제11조의2) | (개설)등록 <br> (법 제11조 <br> 의 2 제 3 항) | 치 과 기 공 소 를 개설하려 는 자 | 특 별자 치 도 지사 또는 시 장 - 군수 구청장 |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제13조) -폐업신고(법 제 13조) |  | -업무에 종 사하는 의 료기사 등 보수교육 | - 지 도 • 감 독 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업무 상황, 시설 등 검사 (법 제15조제1항) | -의료기사등 면허 와 영업등록 결 부(법 제22조제1 항제3호 검토) -시행령 제 13 조는 품 위손상행 위로 보기 어려움(의료 법 시행령 제32조 참조) |
| 2 | 안경판매업 <br> (법 제12조) | (개설)등록 <br> (법 제12조 <br> 제 3 항) | 안 경 업 소를 개 설 하 려 는 사람 | " | " |  | -업무에 종 사하는 의 료기사 등 보수교육 | " |  |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1-1}{0} \\ & \text { 叫 } \\ & \text { of of o } \\ & \text { rat } \end{aligned}$ | 啡卟京志可如可可可京 <br>  <br>  <br>  |
|  |  <br>  <br>  <br>  |
|  |  <br>  <br>  <br>  |
|  |  |
|  |  |
|  |  |
|  |  |
| ¢० |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 } ⿲ 二 丨 匕 刂 \end{aligned}$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 :--- | :--- | :--- | :--- | :--- | :--- | :--- | :--- |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제 } 1 \text { 항, 제 } \\ & 33 \text { 조제 } 3 \text { 항) } \end{aligned}$ | 골사, 침사, 구 사)(법 제81조 제1항 및 제 2항) |  |  |  |  |  |  |
| 3 | $\begin{gathered} \text { 안마업 } \\ \text { (법 제82조) } \end{gathered}$ | 신 고 <br> (법 제82조 <br> 제 3 항, 제 33조제3항) | 안 마 업 무를 <br> 하려는 자(법 <br> 제 82 조제 3 항, <br> 제33조제3항) | 시장 - 군수 $\cdot$ 구청장 |  |  |  |  |  |
| 4 | 외국인환자유치업 <br> (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 등 록 <br> (법 제 27 조 <br> 의 2 제 2 항) | 외국인환자를 유 치하 고자 하는 자 | 보건 복지 부 장관 | -사업실적 보고 <br> (법 제 27 조의 2 <br> 제3항) |  |  |  |  |
| 5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br> (법 제 16 조) | 신 고 <br> (법 제 16 조 <br> 제1항) |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 물을 처리하 려는 자 | $\begin{aligned} & \text { 시장 - 군수 • } \\ & \text { 구청장 } \end{aligned}$ |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료기 관 세탁물 관리규 칙 제7조제3항) -휴업•재개업• 폐업신고(같은 규칙 제7조제5항) |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서 제 출 (같 은 규칙 제9조) | - 세 탁 물 처리업무 에 종사 하는 자 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 실시 의 무 (같 | -세탁물을 위생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지 도•점검(같은 규 칙 제11조) | -변경신고의 근 거 법률화 필요 -휴업 - 재개업 폐업신고 근거 법률화 필요 -교육 관련 규정 법률화 필요 -지도•감독 규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 - 허가 -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허가. <br> 등록•신고 <br>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규칙 제 8 조 제 1항) |  | 정 법률화 필요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장례식장영업 <br> (법 제29조) |  |  |  |  | -장례식장 관 리 - 운영상황 보고(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장례식장 출입 서류-물건 검사/보고(법 제 37조제 1 항) | -영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장 - 군수 - 구청 장에게 사업자등 록 현황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 |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br>  <br>  <br>  <br>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낭 } \\ & \text { 마 } \\ & \text { of of ot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玉 } \\ & \text { ( })=1 \end{aligned}$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등록 •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2 | 장례지도사 <br> 교육업 <br> (법 제29조의3) | 신 고 <br> (법 제29조 의 3 제 1 항) | 장례지도사 교 육기관을 설 치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신고사항 변경 신고(시행규칙 제 20조의6제 1 항) -휴업 • 폐업신고 (시행규칙 제 20 조의6제2항) |  |  |  | -변경신고/휴업 폐업신고의 법률 적 근거 없음 |

IV．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IV．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stackrel{y}{\circ} \\ & \text { 叫 } \\ & \text { off } \\ & \text { of } \end{aligned}$ |  <br>  <br>  <br>  |
|  |  |
|  |  |
|  |  |
|  |  |
|  |  |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text { st }}{0} \text { 叶 } \\ & \text { of of or } \\ & \text { raf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 } 1 ;-1 \end{aligned}$ | $\sim$ | m | $\checkmark$ | in |

IV．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mathrm{H} \\ & \boldsymbol{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  <br>  |
|  |  |
|  | $\bigcirc$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left\lvert\,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br>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광진응법

| 순 번 |  |  |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관광 <br> 사업 <br> (법 <br> 제 3 조) | $\begin{aligned} & \text { 여행업 } \\ & \text { (법 } \\ & \text { 제4조) } \end{aligned}$ |  | 여행업을 경 영하려는 자 | 특별자치도지 <br> 사 또는 시 <br> 장 - 군수 • <br> 구청장 | -중요사항 변경 등록(법 제4조 제4항) <br> -휴업•폐업통보 (법 제8조제7항) |  |  |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면 사업에 관한 보 고, 서류 제출/ 사무소-사업장 영업소 등에 출 | -여행업은 다시 일반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여행 업으로 구분됨(영 제2조 제1항 제1호) -휴업 • 폐업통보 기간,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법 |

IV．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stackrel{\text { st }}{0}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of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門 } \\ & \text { ( } \end{aligned}$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쌍 } \\ &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ra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吅 맚 } \\ & \text { 和 } \end{aligned}$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H } \\ & \text { I } \end{aligned}$ |  | 市知何耻夜 <br>  <br>  <br>  |
| :---: | :---: | :---: |
|  | $=$ | ＝ |
|  |  |  |
|  |  |  |
|  | $=\square$ | ＝ |
|  | ＝ | ＝ |
|  |  |  |
|  | ＝ | ＝ |
|  |  | 衣研 |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似 } \end{aligned}$ |  |  |

## 745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허가 •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 •허가 • } \\ & \text { 등록 • 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카지 } \\ & \text { 노업 } \\ & \text { (법 } \\ & \text { 제5조 } \\ & \text { 제1항) } \end{aligned}$ | 허 가 <br> (법 제5조 <br> 제1항) | $\begin{aligned} & \text { 카지노업을 경 } \\ & \text { 영하려는 자 } \end{aligned}$ | 문 화 체 육 관 광부장관 | -중요사항 변경 허가(법 제5조 제 3 항 본문) -경미사항 변경 신고(법 제5조 제4항 단서) -휴업•폐업통보 (법 제8조제7항) -카지노업의 영 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 금 (변경)신고(법 제26조제2항) |  |  | " | -검사합경증명서 훼손 또는 제거 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과 다함(법 제83조 제6호) <br> *관광표지 부착 상호 사용 금지 의무 위반은 100 만원 이하의 과 태료로 제재하고 있음(법 제86조 제1항제2호 참조) -영업준칙 위반을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하 는 것은 과소함 (법 제86조제 1 항 제4호) |
|  | 유원 시설업 | -허 가 <br> (대통령령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 특별자치도지 <br> 사 또는 시 | -중요사항 변경 허가, 경미사항 |  |  | " | $\begin{array}{\|l\|l\|} \hline \text {-유원시설업은 다 } \\ \text { 시 종합유원시 } \end{array}$ |



| $\begin{aligned} & \text { F } \\ & \text { I } \end{aligned}$ |  <br>  <br>  <br>  <br>  <br>  | 如永 <br>  <br>  <br>  <br>  <br>  |
| :---: | :---: | :---: |
|  |  | ＝ |
|  |  |  |
|  |  |  |
|  |  |  |
|  | 愔 <br> 形 $\frac{1}{x_{0}}$ 和 衣o it |  |
|  |  |  |
|  |  |  |
| स० |  |  |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left\lvert\, \begin{array}{\|l\|}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펜션업/ 관 광궤도업/ 한옥체 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구분됨(영 제2조 제1항 제6호) |

3. 뉴스통신 진훙에 관한 법률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뉴스통신사업 <br> (법 제8조) | $\begin{aligned} & \text { 등 록 } \\ & \text { (법 제8조 } \\ & \text { 제1항 전단) } \end{aligned}$ | 뉴스통신사업 을 하려는 자 | 문 화 체 육 귄 광부장관 | $\begin{array}{\|l\|} \hline \text {-등ㄹㅗㅗ사항 } \\ \text { 등록(경 } \\ \text { 제1항 훈단) } 8 \text { 조 } \\ \hline \end{array}$ |  |  |  |  |

IV．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4．신문 등의 진훙에 관한 법률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stackrel{v}{0} \\ & \text { 叫 } \\ & \text { of } \\ & \text { of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dot{x}}{K} \\ & \stackrel{H}{L} \\ & \dot{\bar{x}}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 } ⿲ 二 丨 匕 刂 \end{aligned}$ | － | $\sim$ | m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순 번 | 영업명(조문) |  | $\left\lvert\,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인•허가. <br> 등록•신고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 | $\begin{array}{r} \text { 영호 } \\ \text { (영화자 } \\ \text { 수입업/ } \\ \text { 상영업, 밥 } \end{array}$ | 화업 <br> 제작업/ <br> 배급업/ <br> 제26조) |  | 영 화업자가 되려는 자 | 시장 - 군수 구청장 | $\begin{aligned} & \text {-신고사항 변경 } \\ & \text { 신고(법 제26조 } \\ & \text { 제1항 후단) } \end{aligned}$ |  |  |  |  |
| 2 | 영화상 (법 제 | 병관업 |  | 영 화 상 영 관 을 설치•경 영하려는 자 | " | $\begin{aligned} & \text {-등록사항 변경 } \\ & \text { 등록(법 제36조 } \\ & \text { 제1항 후단) } \\ & \text {-영화상영(변경, } \\ & \text { 중지, 재개, 단 } \\ & \text { 축, 연장)신고(법 } \\ & \text { 제41조제1항) } \end{aligned}$ |  |  |  |  |
| 3 | 비디오 <br> 물영업 | 비디오 <br> 물제작 <br> 업/비디 <br> 오물배 | (법 제57조 제1항) | 비디오물제작 업/비디오물 배급업을 하 려는 자 | "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61조 제1항) <br> -폐업신고(법 제 |  |  |  |  |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begin{array}{\|c} \text { 인 •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인•허가- <br> 등록 - 신고 <br>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업(법 <br> 제57조 |  |  |  | 64조제 1 항) |  |  |  |  |
|  | 비디오 <br> 물시청 <br> 제공업 <br> (법 <br> 제58조) |  |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을 영 위하고자 하 는 자 | " | -중요사항 변경 등록(법 제61조 제1항) <br> -폐업신고(법 제 64조제 1 항) |  |  |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 금 부과(법 제68 조제1항)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end{aligned}$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음반영상물 } \\ \text { 배븝볍 } \\ \text { ((ㅓㅂ 제16조제1항) } \end{gathered}$ | 제1항 본문) | 음반 - 음악영 <br> 상물 배급업 <br> 을 영위하고 <br> 자 하는 자 |  | 제1항) <br> -폐업신고(법 제 24조제 1 항) |  |  |  |  |
| 2 |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법 제16조제 2 항) | 신 고 <br> (법 제 16 조 제항 본문) | 온라인음악서 비스제공업을 영 위 하 고자 하는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3 | 노래연습장업 (법 제18조) | 등 록 <br> (법 제18조 제 1항) | 노래연습장업 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 | 시장 - 군수 구청장 | " |  |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 경 사항 등 교육 (법 제 11 조제 1항) |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 천만 원 이하의 과징 금 부과(법 제28 조제1항) <br>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 의 사용 중지 또 는 압류시 청문 (법 제30조) -타인에게 교육을 |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인 - 허가 등록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 -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신 받도록 하 기 위한 근거 법 률화 필요(시행 령 제5조제 2 항) |

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begin{aligned} & \text { 인쇄사업 } \\ & \text { (법 제12조) } \end{aligned}$ | 신 고 <br> (법 제12조 <br> 제1항 전단)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 2 조 에 따른 간행 물을 발행하 기 위하여 인쇄 사를 경영하 고자 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 <br> 사 또는 시 <br> 장 - 군 수 • <br> 구청장 | -신고사항 변경 신고(법 제12조 제 1 항) |  |  |  | -영업폐지시 신고 대신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함 (법 제 13 조제 1 항)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倞 <br>  <br> 㘳哭 <br> $\frac{\text { H }}{\mathrm{K}}$ 島 |  |  |
| $\begin{aligned} & \stackrel{y}{0} \\ & \text { 叫 } \\ & \text { off } \\ & \text { of } \end{aligned}$ |  |  |
|  |  |  |
|  |  |  |
|  | $\begin{aligned} & \dot{\bar{x}} \\ & \bar{K} \\ & \vec{H} \\ & \dot{\bar{x}}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现 } \\ & \text { 代 } \end{aligned}$ |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인 - 허가 -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br> 신고 •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임 <br> 영업을 한 것도 아 <br> 닌데 형벌을 과하 <br> 는 것은 과다함 |
|  | 신고 <br> 체육 <br> 시설업 <br> (법 <br> 제 10 조 <br> 제1항 <br> 제2호) | 신 고 <br> (법 제 20 조 전단) | 신고 체육시설 업을 하려는 자 | 특별자치도지 <br> 사 또는 시 <br> 장 - 군 수 - <br> 구청장 | -신고사항 변경 신고(법 제20조 후단) -휴업 - 폐업통보 (법 제29조제1항) |  |  |  |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 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 업, 종합 체육시설 업, 수영장업, 체 육도장업, 골프 연 습장업, 체력단련 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 원업, 무도장업) |


| $\begin{aligned} & \text { 거 } \\ & \text { 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퍼 } \\ & \text { 断 } \end{aligned}$ | － |

V .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V.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A \\ & I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 \\ &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of } \\ & \text { ra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玔 } \\ & \text { 代 } \end{aligned}$ | $\sim$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 <br> 등록 • <br>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상 근거 없 음(법 제45조)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서 사용하는 기술요원의 정의 불분명, 변경신 고의무이행 어려 움(시행령 제 18 조 제2항제3호) |
| 3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법 제34조) | 등 록 <br> (법 제34조 <br> 제 1 항) | 처 리시 설 의 설계•시공업 을 하고자 하 는 자(법 제 34조제1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등록사항 변경 등록/변경신고 (법 제34조제2항) -휴업•폐업신고 (법 제40조) |  | " |  |  |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관리 <br>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건설폐기물 처리업 (수집 - 운반업) 중간처리업, 법 제21조) | 허 가 <br> (법 제 21 조 <br> 제 3 항) | 건 설 폐 기 물 처리업을 하 려는 자 | 시 - 도지사 | -중요사항 변경 허가(법 제22조 제1항) -경미사항 변경 신고(법 제22조 제2항) <br> -휴업 • 폐업 • 재개업신고(법 제 33 조제 1 항) - 중간 처리 업 자 용역 이 행 능 력 평가를 위한 자본금 등 신 고(법 제14조 제3항) |  | - 중 간 처리 업에 종 사 하 는 기술인 력 교 육 ( 법 제 56 조의 2제1항)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관 계인 보고, 자료 제출/ 사무소 또 는 사업장 등 출입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 검사(법 제34조 제1항) <br> -검사 3 일 전까지 검사일시 등 통지 (법 제34조제2항) | -허가 전 사업계 획서 제출•검토 -사업계획 통보받 은 후 허가신청 및 연장기간 법 률화 검토 필요 (시행규칙 제 12 조 제3항 및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 3 항 및 제 4항 참조 <br> -영업정지를 갈음 하여 1억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 (법 제26조제1항) |


| $\begin{aligned} & \text { F } \\ & \text { 省 }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k-1}{0} \\ & \text { of } \\ & \text { of } \\ & \text { 有 } \end{aligned}$ |  |
|  |  |
|  | स० स <br> 페 $\stackrel{\infty}{\mathbb{K}} \underset{j}{\infty}$ <br>  <br> of 맫 夜 <br> No Ho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페 } \\ & \text { 泚 } \end{aligned}$ | － |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rray}{\|l\|} \hline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 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먹는샘물등 <br> (먹는샘물 • <br> 먹는염지하수) <br> 제조업 <br> (법 제21조) | 허 가 <br> (법 제21조 제 1 항 전단) | 먹는 샘 물 등 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중요사항 변경 허가(법 제21조 제1항 후단) -휴업 - 재개업 • 폐업 - 경 미사 항 변경신고(법 제21조제7항) | - 자동계측기 <br> 측정결과 제 <br> 출(법 제22조 <br> 제1항, 2013. <br> 9.23.시행) | - 품 질 관리 교육(품질 관리인을 두지 아니 한 영업자 및 품질 관 리 인, 2013.9.23. 시행) | $\begin{aligned} & \text { - 환 경 보 전 이 나 } \\ & \text { 국민보건에 중 } \\ & \text { 대한 위해를 끼 } \\ & \text { 치거나 끼칠 우 } \\ & \text { 려가 있는 경우 } \\ & \text { 지도. 명 령 (법 } \\ & \text { 제45조제 } 1 \text { 항) } \end{aligned}$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법 제 31조제1항) <br> -업무정지 또는 영 업정지를 갈음하 여 5 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 (법 제51조제1항) |
| 2 | 수처리제 제조업 (법 제21조) |  | 수처리제 제조 업을 히려는 자 | " | -중요사항 변경 등록(법 제21조 제2항 후단) -휴업 - 재개업 폐업 • 경미사 항 변경신고(법 제 21 조제 7 항) |  | " |  | -업무정지 또는 영 업정지를 갈음하 여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 (법 제51조제1항)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 신고 의무자 | 인•허가. 등록. 신고권자 | 인•허가•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3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법 제21조) | 등 록 <br> (법 제21조 제 항 전단)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 " | -중요사항 변경 등록(법 제21조 제3항 후단) -휴업•재개업 폐업 - 경미사 항 변경신고(법 제21조제7항) |  |  |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법 제 31조제1항) -업무정지 또는 영 업정지를 갈음하 여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 (법 제51조제1항) |
| 4 |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법 제21조) | 신 고 (법 제21조 제4항전단) | 먹는샘물등의 유 통 전 문 판 매업을 하려 는 자 | "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21조 제4항 후단) -휴업•재개업• 폐업 • 경미사 항 변경신고(법 제21조제7항) |  |  |  | -업무정지 또는 영 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51조제1항) |
| 5 | 정수기 <br> 제조업 - 수입 <br> 판매업 <br> (법 제21조) | 신 고 <br> (법 제 21 조 제5항 전단) | 정수기의 제조 업 또는 수입 판매업을 하 려는 자 | "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21조 제5항 후단) -휴업•재개업 폐업 • 경미사 |  | - 품 질 관리 교육(품질 관리인을 두지 아 니한 영업 |  | -업무정지 또는 영 업정지를 갈음하 여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 (법 제51조제1항)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변경신고(법 제21조제7항) |  | 자 및 품 질관리인, 2013.9.23. 시행) |  |  |

5. 물의 재잉ㅇㅇ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허가 -등록 • 신고 유형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 등록 -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하 - 폐수처리 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법 제18조) | 등 록 <br> (법 제 18 조 제1항 전단) | 하 - 폐수처리 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 을 하려는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등록사항 변경 등록(경미사항 제외, 법 제 18 조제1항 후단) |  |  | -준수사항 이행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자료 제출/ 시설 등에 출입 관련 서류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br> -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 장비 등 검사(법 제24조 제 1 항제 5 호) |  |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인 - 허가 <br> - 등록 <br> 신고 유형 | 인 - 허가 - 등 록 - 신고 의무자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등 } \\ \text { 록•신고권자 } \end{gathered}$ | 인 - 허가 - 등록 -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검사대행업 (법 제41조) | 등 록 <br> (법 제41조 <br> 제1항 전단) | 운행차의 개 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 려는 자 | 특별자치도지 <br> 사 또는 시 <br> 장 - 군 수 • <br> 구청장 | -중요사항 변경 등록(법 제41조 제 1 항) |  |  | - 환 경 부 령 으로 정하는 경우 보 고, 자료제출/ 배 출허 용기 준 규제기준 준수 를 확인하기 위 하여 소음과 진 동 검사, 관계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등 } \\ & \text { 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등 <br> 록 - 신고권자 | 인 - 허가 •등록• <br> 신고 등에 부수하는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서류•시설 또는 } \\ & \text { ㅏㅏㅇㅂㅣ 등 검사 } \\ & \text { (법 제 } 47 \text { 조제 } 1 \text { 항 }) \end{aligned}$ |  |

7. 수도법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begin{array}{\|c\|} \hline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end{aligned}$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저수조청소업 (법 제34조) |  | 저수조의 위 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을 경영하려 는 자 | 특 별자치 시 장 - 특 별 자 치 도지사 시 장 - 군 수 - 구청장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34조 제1항 후단) -폐업•휴업신고 (법 제34조제2항) |  | -수도시설 의 관리에 관한 교육 (저수조청 소업자 및 저수조청 소 업 에 직접 종 |  |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또 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 쇄명령 사유로 함 (법 제 35 조제 1 항 제3호)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 하 는 } \\ & \text { 종 업 원, } \\ & \text { 법 제36조 } \\ & \text { 제1항 및 } \\ & \text { 제2항) } \end{aligned}$ |  | -법률에서는 저수 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을 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시행 령에서는 현장에 서 직접 지도하는 자를 교육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법 률에 반함(시행령 제52조제 2 항)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순 번 | 영업명 (조문) | $\left\|\begin{array}{\|c\|} \text { 인 •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 - 허가 - 등록 -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폐수처리업 <br> (법 제62조) |  | 폐수의 수탁 처리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자 하는 자 | 환경부장관 | $\begin{aligned} & \text {-중요사항 변경 } \\ & \text { 등록(법 제62조 } \\ & \text { 제1항 후단) } \end{aligned}$ |  | - 폐수처리 업에 종사 하는 기술 요 원 에 대한 교육 (법 제67조 제 1 항) |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1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 입 방류수 수질 기준, 배출허용 기준,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준수, 측정기기 의 정상운영, 준 수사항 준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 염물질을 채취하 거나 관계 서 류 - 시설 - 장비 등 검사(법 제68 | -영업정지처 분에 갈음하여 2 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66조제 1항) 영업정지 처 분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는 과징금으로 갈음 하면 안 될 것임 (사실상 과징금 부 과 대상 없음) -법률에 대한 예외 를 시행규칙으로 규 정(법 제92조제2항) -양벌규정 미개정 (법 제81조) |

V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begin{aligned} & \text { F }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何 } \\ & \frac{n}{\mathbb{K}} \\ & \frac{100}{} \\ & \bar{K} \\ & \mathbb{N} \end{aligned}$ |
| $\begin{aligned} & \frac{k-1}{0} \\ & \text { of 마 } \\ & \text { of } \\ & \text { FAF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㖄 } \\ & \text { 湖 } \end{aligned}$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인 • 허가 • 등록 • } \\ \text { 신고 등에 } \\ \text { 부수하는 } \\ \text { 신고•등록 등 } \end{gathered}$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유독물영업 (유독물 <br> 제조업／판매업／ 보관 • 저장업／ 운반업／사용업， 법 제20조） | 등 록 <br> （법 제 20 조 <br> 제1항 본문） | 유독물영업을 하려는 자 | 시－도지사 | －변경등록／변경 신고（법 제20조 제2항） －폐업 • 휴업신고 （법 제26조제1항） | －서류•기록 보존（법 제 46 조 제 1 항 제5호） | －유독물 관 리자 교육 （법 제52 조제1항） |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br> (조문) | $\begin{array}{\|c\|} \hline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인•허가•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취급제한•금지 <br> 물질영업 <br> (취급제한물질 <br> 제조업 또는 <br> 수입업/판매업/ <br> 보관•저장업/ <br> 운반업(사용업, <br> 법 제34조) |  | 취급제한•금 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 | 환경부장관 | -변경허가/변경 신고(법 제34 조제 3 항) -폐업 - 휴업신고 (법 제36조제6항 및 제26조제1항) | $\begin{aligned} & \text {-서류•기록 } \\ & \text { 보존 } \\ & \text { (법 제 } 46 \text { 조 } \\ & \text { 제 } 1 \text { 항제 } 8 \text { 호) } \end{aligned}$ | -취급제한 금 지 물 질 관리자 교 육(법 제52 조제 1 항) |  |  |


|  | （요닌玉LE断晶）－Y 昆 을 latix－良ly <br> 这昆切 九干昆 <br>  플と＇正百 tyllo <br>  <br>  |  | （흐ㄴㅢㅜㅊ <br>  <br>  <br> （오야난 <br> 天IE《K 唱）应展妾面以 －140 tix 융 <br>  롬 比应做十 ：奴昆웅릉ㄴㄴ <br>  <br> （응Z｜는 <br> 戸しを断 晶）比正百せ呍 웅릉느․以泾：炏昆 <br>  | （马吕 <br> 长届 으어눌ㄹ을 한ㅈㅇ 둘를 <br>  |  | 把늘 <br>  <br>  <br>  |  | （天てE断晶）昆융 <br>  <br>  <br>  | I |
| :---: | :---: | :---: | :---: | :---: | :---: | :---: | :---: | :---: | :---: |
| を ${ }^{\text {¢ }}$ | 十又最•問空前 롳나펼ㄴ•飞面 <br>  | $\begin{gathered} \frac{1}{\square} 10 \\ \frac{1}{y} 10 \text { 낭 } \end{gathered}$ |  |  | トと屋な民 눌올 $\cdot-1<10 \cdot 10$ |  |  | $\begin{aligned} & \text { (곰干) } \\ & \text { 品最品 } \end{aligned}$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br> -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 • 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2 | 폐가스류 <br> 처리업 <br> (법 제32조의2) | 등 록 <br> (법 제32조 <br> 의 2 제 1 항) | 폐가스처리업 을 하려는 자 | 환경부장관 | -중요사항 변경 등록/그 외의 등 록사항 변경신 고(법 제 32 조의 2 제2항) | -기 후 • 생 태 계변화 유발 물질의 분기 별 재활용과 처리실적(법 제 3 조제 4 항) -장부의 기록• 보존(법 제36 조제5호) |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 에서 보고, 자료 제출/ 시설•사 업소나 사업장 출입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 검사(법 제37조 제 1 항) |  |


| $\begin{aligned} & \text { H } \\ & \text { I }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k-1}{0} \\ & \text { 마 } \\ & \text { of } \\ & \text { Nㅏㄱ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灿 } \\ & \text { 相 } \end{aligned}$ | － |


| 순 번 | 영업명 （조문） | $\left\|\begin{array}{\|c\|} \text { 인•허가 } \\ \text { •등록• } \\ \text { 신고 유형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신고 } \\ & \text { 의무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관리 <br>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폐기물처리업 <br> （폐기물 <br>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법 제25조） |  | 폐기물의 수 집－운반，재 활용 또는 처 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 | 지정폐기물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 기물 ：시• 도지사 | －중요사항 변경 허가（법 제25조 제11항） <br>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사 항 변경신고（법 제 25 조제 11 항） －휴업 • 폐업 • 재개업신고（법 제37조제1항） －폐기물 발생• 처리 보고서 제출（법 제38조 제 1 항제 4 호） | －폐기물의 발 생－배출 • 처리상황 등 기록 보존 （법 제36조 제 1 항제 4 호） | －폐기물처 리 업 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교 육（ 법 제 35 조제 1항）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자료제출／ 사무소，사업장，「관세법」제 154 조 에 따른 보세구 역 등 출입 관계 서류나 시설 또 는 장비 등 검사 （법 제39조제 1 항） | －허가신청 전 사업 계획서 제출（법 제25조제 1 항） －영업정지를 갈음 하여 1억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 （법 제28조제1항） －교육 관련 협조 의무 법률화 검토 （시행규칙 제 50 조 제6항） |

V .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인 - 허가 <br> - 등록 • <br> 신고 유형 | 인•허가. 등록 • 신고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과 기술진 단 대행업의 경우 (변경)등록 수수료 를 부과하지 아니 함(법 제70조) 환 경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 률 제30조제1항제 5호 비교) |
| 2 | 기술진단 대행업 <br> (법 제20조의2) | $\begin{aligned} & \text { 등 록 } \\ & \text { (법 제 } 20 \text { 조 } \\ & \text { 의 } 2 \text { 제 } 2 \text { 항 }) \end{aligned}$ | 기술진단전문 <br> 기관으로 등 <br> 록하려는 자 | 환경부장관 | $\begin{aligned} & \text {-중요사항 변경 } \\ & \text { 신고(법 제 } 20 \text { 조 } \\ & \text { 의 } 2 \text { 제 } 3 \text { 항) } \end{aligned}$ |  |  |  |  |
| 3 | 분뇨수집 - 운반업 (법 제45조) | 허 가 <br> (법 제45조 <br> 제1항) |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영업 을 하려는 자 | 특 별자치 도 <br> 지 사 - 시 <br> 장 - 군수 - <br> 구청장 | -중요사항 변경 신고(법 제45조 제1항) -휴업•폐업•재 개업허가(법 제 56조) |  | -기 술인력 교육 (법 제 67 조제 2항) -장부 비치, 분뇨의 수 | - 오수 • 분뇨 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유려가 있는 경 우 등에 보고, | -허가신청 전 사업 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 천만 원 이하의 과징 |


|  | （흔）｜나으이난 <br>  을 latix •灵ly －昔比 比展 比 으잉롳 나을 iㅏ <br> 燺断 프라 ‘正百 16 을 $\quad \frac{1}{\circ} \mathrm{O}$ <br>  <br> 届 $\quad$ 人比㐾品す <br>  <br>  | ＂ |  | （天95比 <br> 晶）正民品比伙 <br> －昆细•昆㗉 <br> （곰굼 응낪 <br>  <br>  | ＂ |  | （곰굴 잉닌玉IS（比晶） 눌 을 | （天IS断晶）昆운 1 y <br>  <br>  | $\dagger$ |
| :---: | :---: | :---: | :---: | :---: | :---: | :---: | :---: | :---: | :---: |
| （요で断云 $0 ¢$（比昆）せ立 믄 | （호탮 은比立6S（1x 晶）tr <br>  ly．를トy 非佼 <br>  <br>  <br>  | （ㅇㅡㄴㅄㅍ 85（遂晶）굴百•눌 $<$强时化至 －揭最古 －テ昆昆 |  |  |  |  |  |  |  |
| 区 ${ }_{\text {® }}$ |  | $\begin{gathered} \frac{1}{\square} 10 \\ \frac{1}{y} 10 \frac{5}{8} \mathbb{2} \end{gathered}$ |  |  | トと居正民 눌옥 <br>  |  |  | $\begin{aligned} & \text { (곰干) } \\ & \text { 啡品器 } \end{aligned}$ | 郖 곷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영업명 (조문)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 유형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 신고 의무자 | $\begin{aligned} &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 & \text { 신고권자 } \end{aligned}$ | 인•허가•등록•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5 | 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 (법 제52조) | $\begin{aligned} & \text { 등 록 } \\ & \text { (법 제52조 } \\ & \text { 제1항) } \end{aligned}$ |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제조 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 | -변경등록/변경 <br> 신고(법 제52조 <br> 제1항) <br> -휴업•폐업• 재개업신고(법 제56조) |  | " | - 오수 - 분 뇨 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 할 유려가 있는 경우 등에 보 고, 자료 제출\| 시설 또는 사업 장 등에 출입하 여 관계 서류• 시설•장비 등 검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
| 6 |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업 (법 제53조) | 등 록 <br> (법 제53조 제 1 항) |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관리 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 | -변경신고(법 제 53 조제 1 항) -휴업 • 폐업 • 재개업신고(법 제56조) |  | " | - 오수 - 분 뇨 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 할 유려가 있는 경우 등에 보 고, 자료 제출/ |  |


| $\begin{aligned} & \text { F } \\ & =1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k-1}{0} \text { 叫 } \\ & \text { of } \begin{array}{l} \text { or } \\ \text { RA } \end{array}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环 } \\ & \text { 陑 } \end{aligned}$ |  |

《부 록》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순 번 | $\begin{aligned} & \text { 영업명 } \\ & \text { (조문) } \end{aligned}$ | 인 - 허가 <br> - 등록 <br> 신고 유형 | $\begin{gathered} \text { 인•허가 • } \\ \text { 등록 • 신고 } \\ \text { 의무자 } \end{gathered}$ | 인•허가• <br> 등록 <br> 신고권자 | 인 - 허가 - 등록 • <br> 신고 등에 <br> 부수하는 <br> 신고•등록 등 | 영업 관련 <br> 자료•서류 <br> 제출•보고 <br> 기록 • 관리 등 | 교육 이수 의무 | 지도•감독을 위한 <br>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 • 검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대행업 <br> (법 제16조) | 등 록 <br> (법 제17조 제 1 항 전단) |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간 오 염 물 질, 악취, 수질오 염물질, 소읍진동 또는 인 공조명에 의 한 빛공해의 측 정 업 무를 대행하는 영업 을 하려는 자 | 시 - 도지사 | -중요사항 변경 등록(법 제16조 제 1 항 후단) | -측정분석 결 과 기록•보 <br> 존(법 제18 조제1항) | - 측 정 대 행 업무 담당 기 술인 력 전 문 교육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 -관련 업무 처리 현황 보고/ 조사, 질문(법 제1항) 제 28 조 | -교육 사유 불명확 (시행규칙 제 25 조 제2항제2호) 기술 인력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 나 명령하고 있 지 아니함 <br> -의무위반자는 고 용자인데, 교육은 기술인력이 받아 야 하는 문제 발 생 우려 |

15. 환경영향평가법


[^0]: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 두 7503 판결.
    59) 김남진 • 김연태, 앞의 책, 237쪽.
    60) 이하의 내용은 강현철-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31, 31쪽 이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61) 홍정선, 앞의 책 197 쪽.
    62) 천병태•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101 쪽.
    63) 김중권, 앞의 논문, 26쪽.
    6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 다 $57419 \cdot 57426$ 판결.
    65) 김명길, 신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2, 470쪽.
    66)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

[^1]:    사실을 신고하여 관할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 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 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 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 두 455 판결;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탑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 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 야 하나, 위와 같은 시설들은 신고한 납골탑을 실제로 설치•관리함에 있어 마련해 야 하는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이 납골탑 설치신고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이를 일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 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 두 4031 판결.
    67) 조성규, 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 고시연구 2005. 1, 243쪽 참조.
    68) 김재규, 신고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검토, 법제처, 2001, 124-125쪽.

[^2]:    신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이면 국토 이용관리법 제 21 조의 8 , 제 21 조의 14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도록 알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토 지거래신고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94) 홍정선, 앞의 책, 193 쪽.
    95) "의료법 시행규칙 제 22 조 제 3 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96) 홍정선, 앞의 책, 194쪽.

[^3]:    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 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 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 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57426 판결
    106) 김중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VIII, 박영사, 2013, 80-90쪽 참조.

[^4]:    112) 타법에서 인허가권자를 정하는 경우 개수 산정에서 제외함.
[^5]:    119）타법에서 인허가권자를 정하는 경우 개수 산정에서 제외함．

[^6]:    131）그 밖에「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 1 항 제 6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7]:    제1항 제2호）．

[^8]:    132）국회법제실，입법이론과 법제실무，2008，965쪽 참조．

[^9]:    입장에서 법령상 '필요한 경우’ 등 자의적인 사유/내역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2012 규제개혁백서, 708쪽 참조.

